



기술창업실무



본 교재는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시험을 위한 표준교재이며
표준교재와 관련한 내용으로 시험문제를 출제할 수 있음

CONTENTS

- 
- I. 사업계획수립과 비즈니스모델
 - II. 창업기업의 설립절차
 - III. 기술창업 운영관리
 - IV. 지식재산권 관리
 - V. 제품인증
- 

I. 사업계획수립과 비즈니스모델

1. 기술창업 구상
2. 비즈니스 모델
3. 비즈니스 모델 Tool
4. 사업계획 수립
5. 기술사업화 및 기술평가

가. 창업기회의 발견

1) 창업의 의도, 창업기회의 평가, 자기진단방법

○ 창업의 의도 파악: 창업의도 기술서 작성

- 본인이 창업하고자 하는 목적, 창업 분야나 관련 기술, 최종 소비자, 최종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가치, 창업 일정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가능한 글로 자세히 적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 필요

〈창업의도 기술서〉

창업의 배경	
창업의 최종 목표	
창업 관련 기술	
예상 최종 소비자	
소비자 가치와 혜택	

○ 창업 기회의 평가

- 외부적 환경 요인: 정치/제도적 변화,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트렌드, 기술적 진화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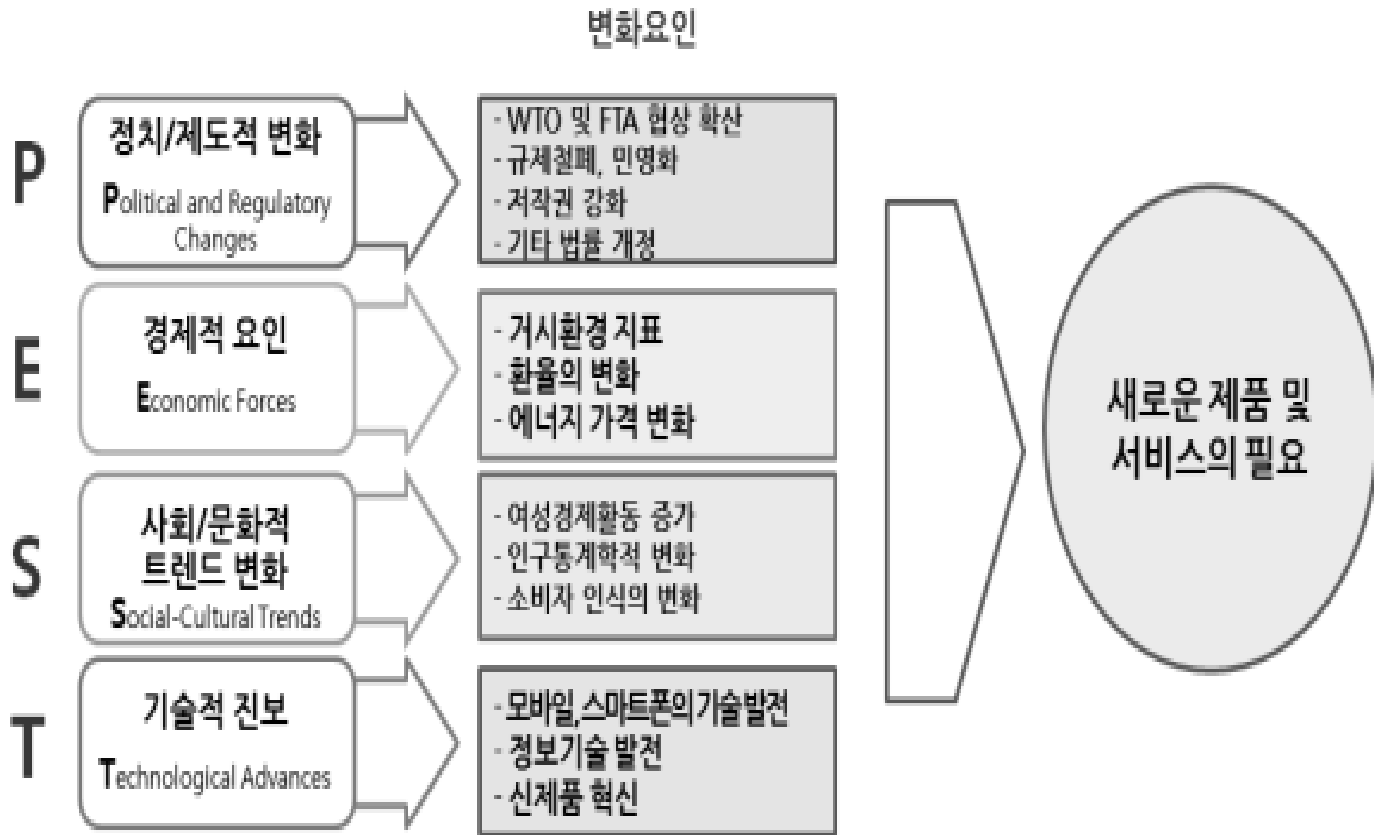
○ 창업의 자기진단 방법

- 적성 및 자질: 모험심, 가능성에 대한 집념, 성격 및 스타일, 리더십, 인내력, 기타 창업가적인 소질 등
- 경험 및 지식: 관련분야의 경험, 학문과 지식, 인간관계, 사회적 지위 등
- 업무수행능력: 창업유지능력, 인력관리능력, 경영판단 능력 등

가. 창업기회의 발견

2) 창업기회의 발견 방법

- PEST 분석 기법: 환경적 요인을 통한 창업기회 발견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분석 기법 중의 하나.



가. 창업기회의 발견

2) 창업기회의 발견 방법

○ PEST 분석 기법

① 정치/제도적 변화(Political and Regulatory Changes)

정부의 정치/제도적 변화는 기업, 개별 그리고 정부 유관기관이 법을 준수함으로써 창업가에게 새로운 창업기회를 제공한다.

대표적인 예로써 WTO, FTA 협상 등을 통한 국제규범의 급속한 확산, 규제철폐를 통한 경기 활성화, 공기업의 민영화, 온라인상의 저작권 강화, 기타 법률 개정 등이다.

② 경제적 요인(Economic Forces)

국가의 경제적 환경 변화와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많은 비즈니스의 기회와 위협이 다가올 수 있으므로, 창업자에게도 이와 같은 경제적 환경변화를 이용한 창업기회가 존재할 수 있다.

일례로 저가생활용품 제품의 대명사인 '다이소'는 경제위기와 불황으로 어려운 소비자들에게 주목하고 창업하여 성공을 거둔 경우이다.

③ 사회적 요인(Social-Cultural Trends)

인구통계학적 변화나, 여성들의 사회진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결혼 기피현상 등 사회구조의 변화는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는 물론 다양한 소비계층으로의 세분화와 욕구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이와 같이 소비자들의 기호를 변화시켜 새롭게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창업기회가 발생한다.

④ 기술적 진보(Technological Advances)

기술적 진보는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기회를 창출하기도 한다. 스마트폰의 기술적 진보로 인해 경제적 생산성 향상, 새로운 일자리 창출, 스마트워크로 인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기여, 원격근무로 인한 저탄소 녹색성장 등 경제적/사회적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기술적 진보에 따라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변화를 잘 예측하고 분석한다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나. 창업 아이디어: 기술중심이 아니라 고객의 관점에서 아이디어 발굴

1) 창업자가 빠질 수 있는 아이디어의 함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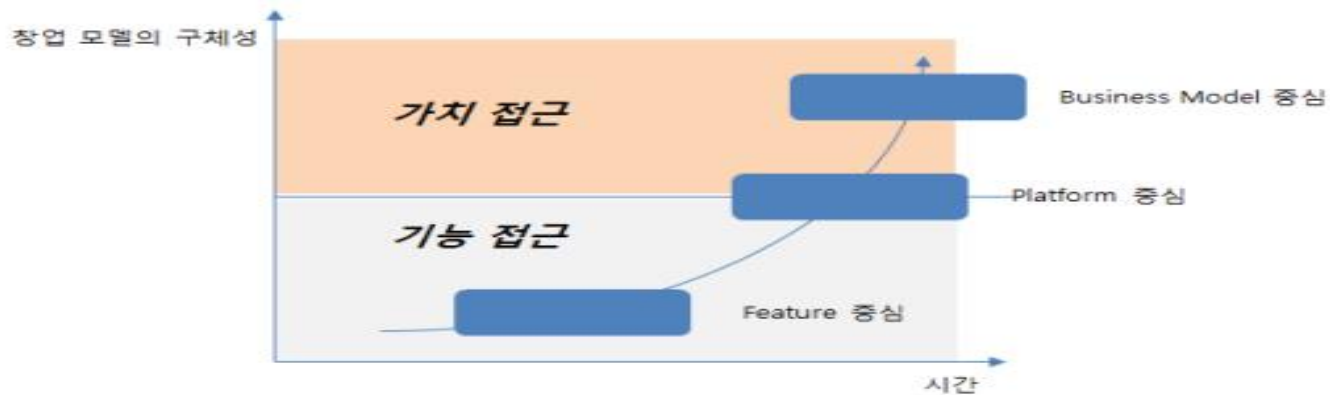
- 혜택이 부족한 아이디어:
 - 창업에 관련된 아이디어라면 그 아이디어를 사용할 만한 고객과 그 고객이 느낄 수 있는 혜택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함.
 - 창업 아이디어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고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치와 혜택을 찾아내는 일
- 기술 만을 중시하는 아이디어:
 - 더 좋은 기술을 만든다면 다른 어떤 경쟁상대도 없고 잘 팔릴 것이라고 생각함.
- 수익 창출만을 위한 아이디어:
 - 창업의 최종 목적은 수익 창출은 기본이고 그 외에 고객 창출, 사회의 기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여러 가지가 있음

나. 창업 아이디어: 기술중심이 아니라 고객의 관점에서 아이디어 발굴

2) 창업자가 빠질 수 있는 아이디어의 오류

○ 기능접근 VS 가치접근

- 사람들은 기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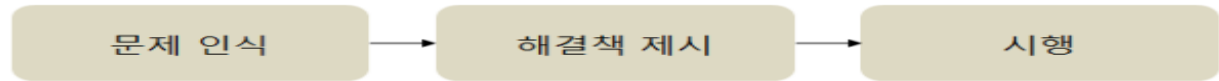


○ 책상위의 아이디어 VS 현장 중심의 아이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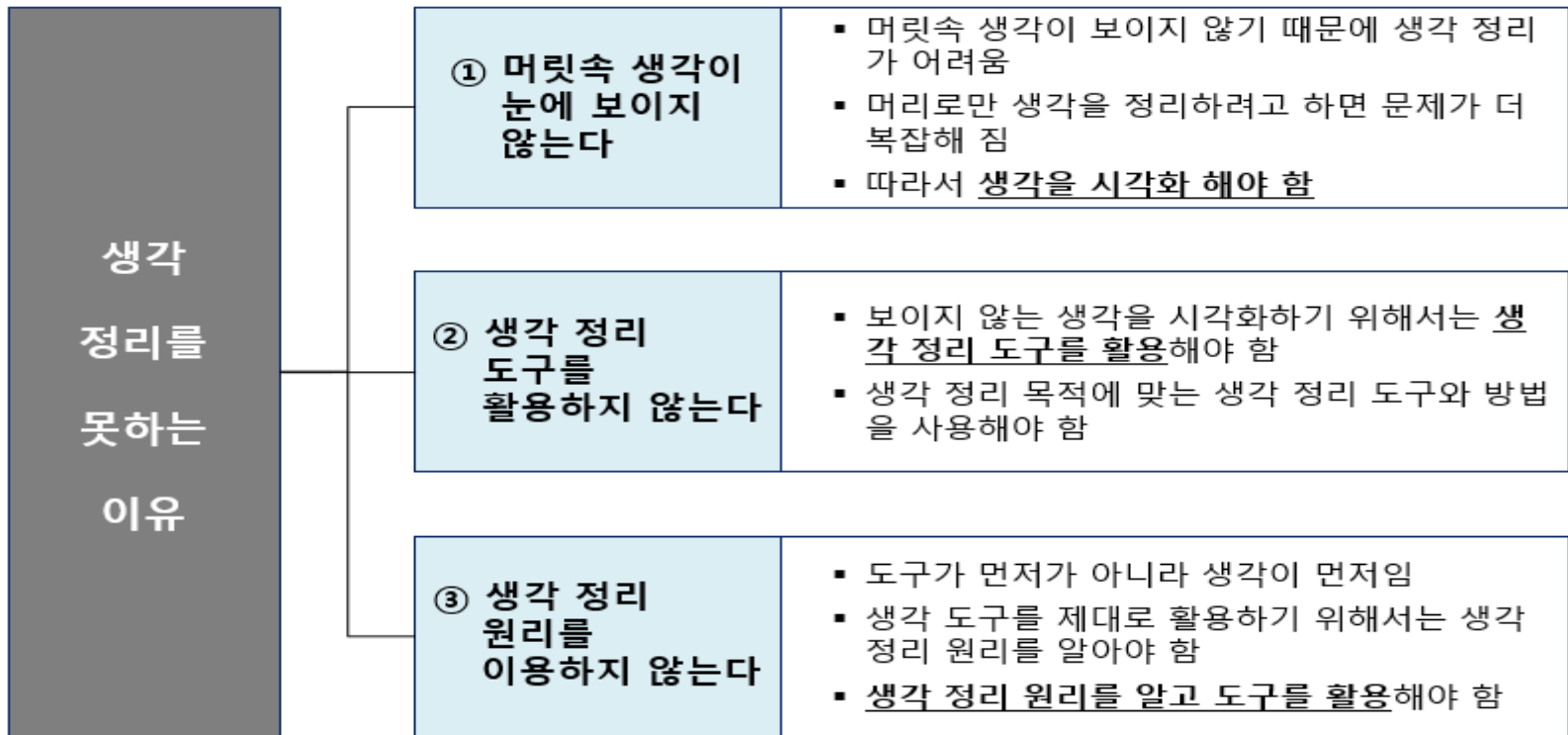
- 검증되지 않은 가설은 창업에 있어 매우 위험한 존재이므로 반드시 검증의 절차를 거쳐야 함.

다. 아이디어 개발 프로세스

1) 아이디어 개발 프로세스



- 문제를 인식하기 위하여 근본 질문을 아이디어 컨셉 도출이 가능하도록 질문을 구체적으로 세분화 하여 시각화 하는 것이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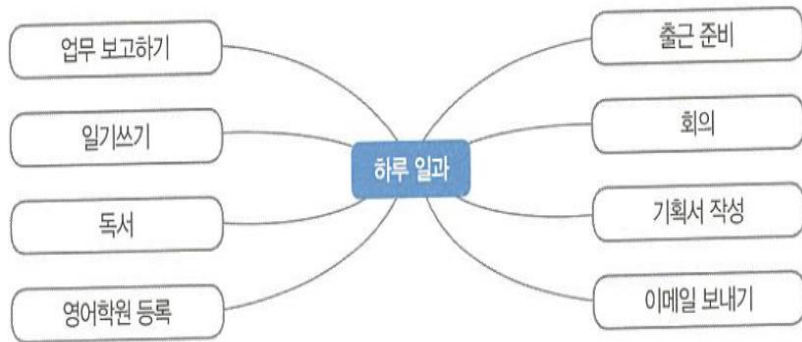


다. 아이디어 개발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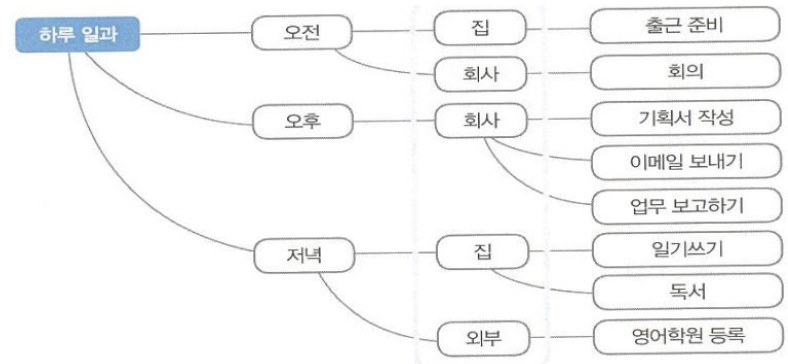
1) 아이디어 개발 프로세스

○ 생각 시각화의 원리: 나열(생각을 끄집어 내는 것) → 분류(기준에 따라 유형화) → 배열(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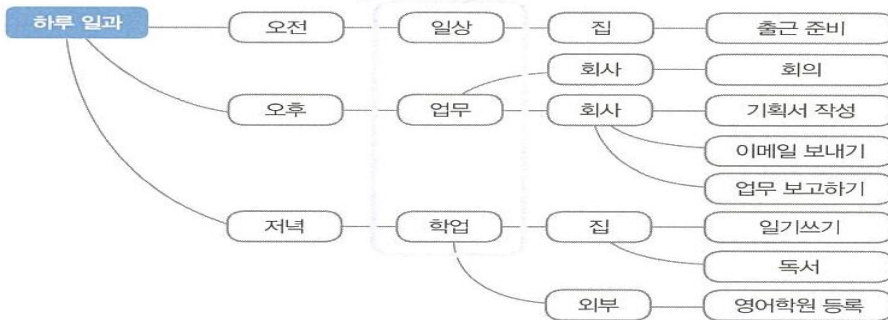
〈나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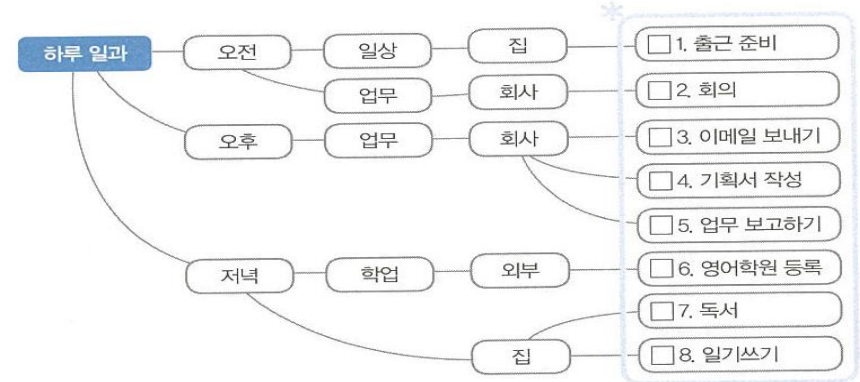
〈분류1〉



〈분류2〉



〈배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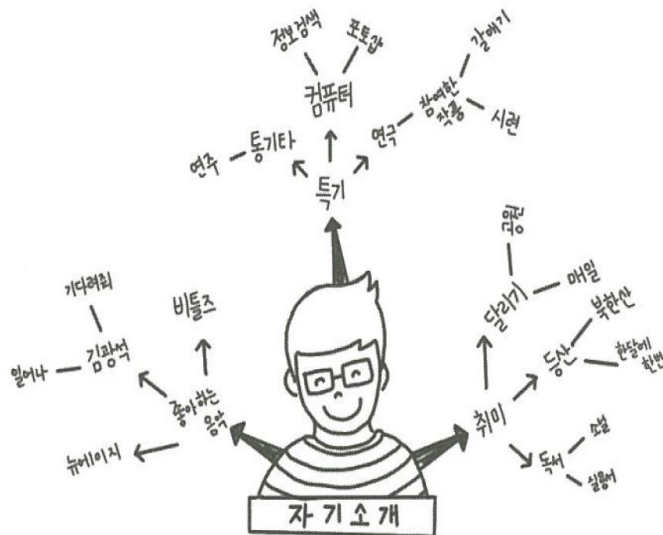


다. 아이디어 개발 프로세스

2) 아이디어 개발의 방법

○ 마인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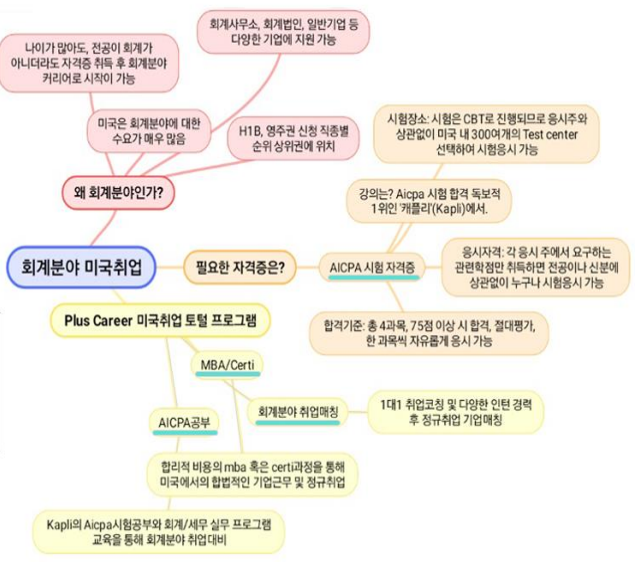
- 마인드맵은 '생각의 지도(Mind Map)'라는 뜻, 1970년 영국의 토니 부잔(Tony Buzan)이 개발한 사고 기법임
- 두뇌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해주는 '사고력 중심의 두뇌개발 프로그램' 및 '생각을 정리하는 기법'으로 불리기도 함
- 방사형 구조로 표현하고, 약도를 그리듯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 중심토픽, 주요토픽, 하위토픽으로 구성



34세. [마케팅팀 근무]

Needs.

- ① 미국에서 정착하고 싶음
- ② 내 커리어를 발전시키면서도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음
- ③ 아이를 보다 나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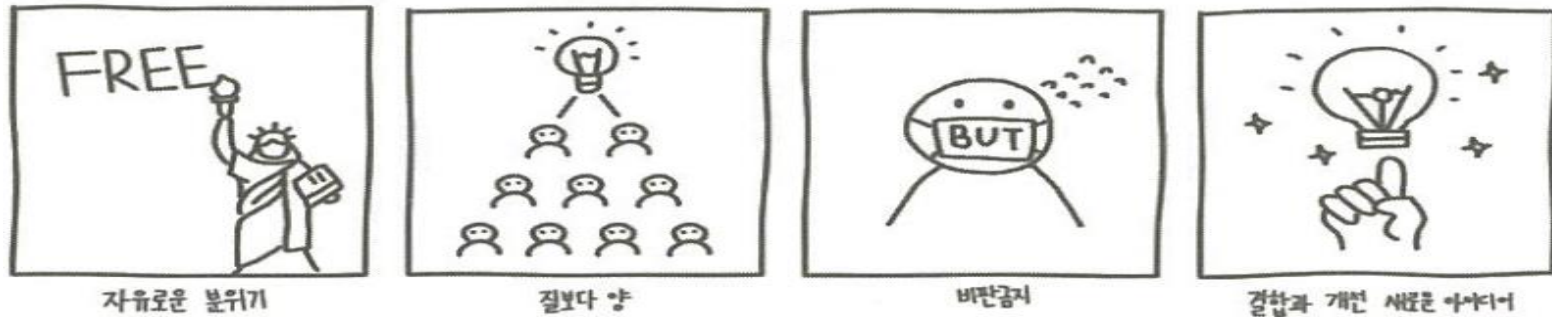


다. 아이디어 개발 프로세스

2) 아이디어 개발의 방법

- 브레인스토밍 (Brainstorming) : 알렉스 오스본(Alex F. Osborn)에 의해 개발
 -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일체의 판단이나 비판을 배제하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머리 속에 떠오르는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쏟아 냄으로써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기법

〈브레인스토밍의 4대 원칙〉



비판금지(Support)	어떠한 아이디어라도 비판이나 평가는 하지 않도록 한다.
자유분방(Silly)	자유분방하게 아이디어를 내놓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질보다 양(Speed)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결합과 개선(Synergy)	이미 제안된 아이디어들을 결합해 개선된 아이디어를 창출해낸다.

다. 아이디어 개발 프로세스

2) 아이디어 개발의 방법

○ 브레인라이팅(Brain Writing)

- 브레인스토밍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바텔연구소에서 만들어진 창의적 사고 기법. 말 대신 글로 기록하여 교환하여 검토함.
- 참가자 개인의 사고력과 특징을 충분히 살릴 수 있고, 타인 앞에서의 표현을 부담스러워 하는 참가자의 사고력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으며, 무임승차 효과를 제거하여 전 참가자의 진지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
- 다만, 브레인스토밍보다 대화의 결핍으로 인해 아이디어의 양이 적을 수 있고, 참가자 간에 서로를 자극하는 동반상승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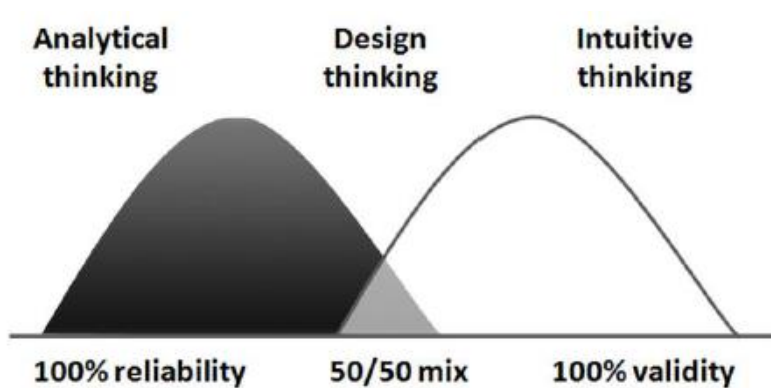
주제 <어떻게 하면 지각을 하지 않을까?>			
	A	B	C
1	일찍 일어난다.	벌금을 걷는다.	수면 음악을 듣는다.
2	모닝콜을 해준다.	벌칙을 만든다.	상당을 받는다.
3	벌칙을 만든다.	교육을 듣는다.	모닝콜을 해준다.
해결책	서로 모닝콜을 해주고 지각한 자에게는 벌칙을 준다.		

다. 아이디어 개발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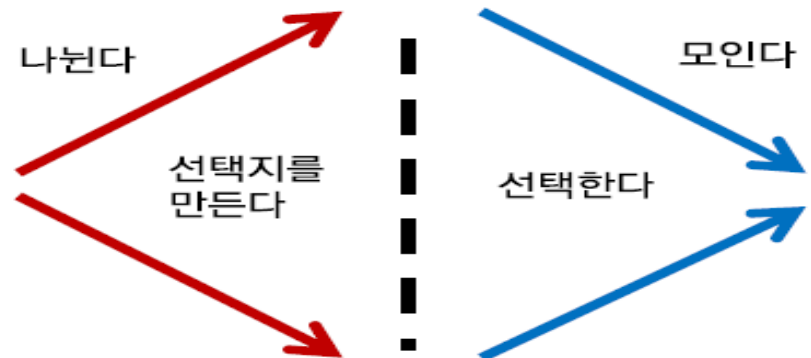
2) 아이디어 개발의 방법

-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 혁신적인 디자인회사인 IDEO에서 쓰기 시작한 용어로 문제에 대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해결법
- 디자인씽킹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사용자의 니즈(needs)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내기 위해 공감적 태도(mindset)를 활용하는 일종의 복잡한 문제 해결에 대한 논리추론적 접근법.
- 이는 제품, 서비스부터 비즈니스 모델과 프로세스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혁신 프로세스.

〈디자인씽킹의 특징〉



출처 : Design Thinking, 이준환, 김동환 서울대학교 연합전공 정보문화학, 2015 창의연구 실습



출처 : Tim Brown, 기획에서 마케팅까지 디자인에 집중하라 : IDEO처럼 생각하고 IDEO처럼 경영하라, 김영사, 2010.

다. 아이디어 개발 프로세스

2) 아이디어 개발의 방법

〈디자인씽킹의 5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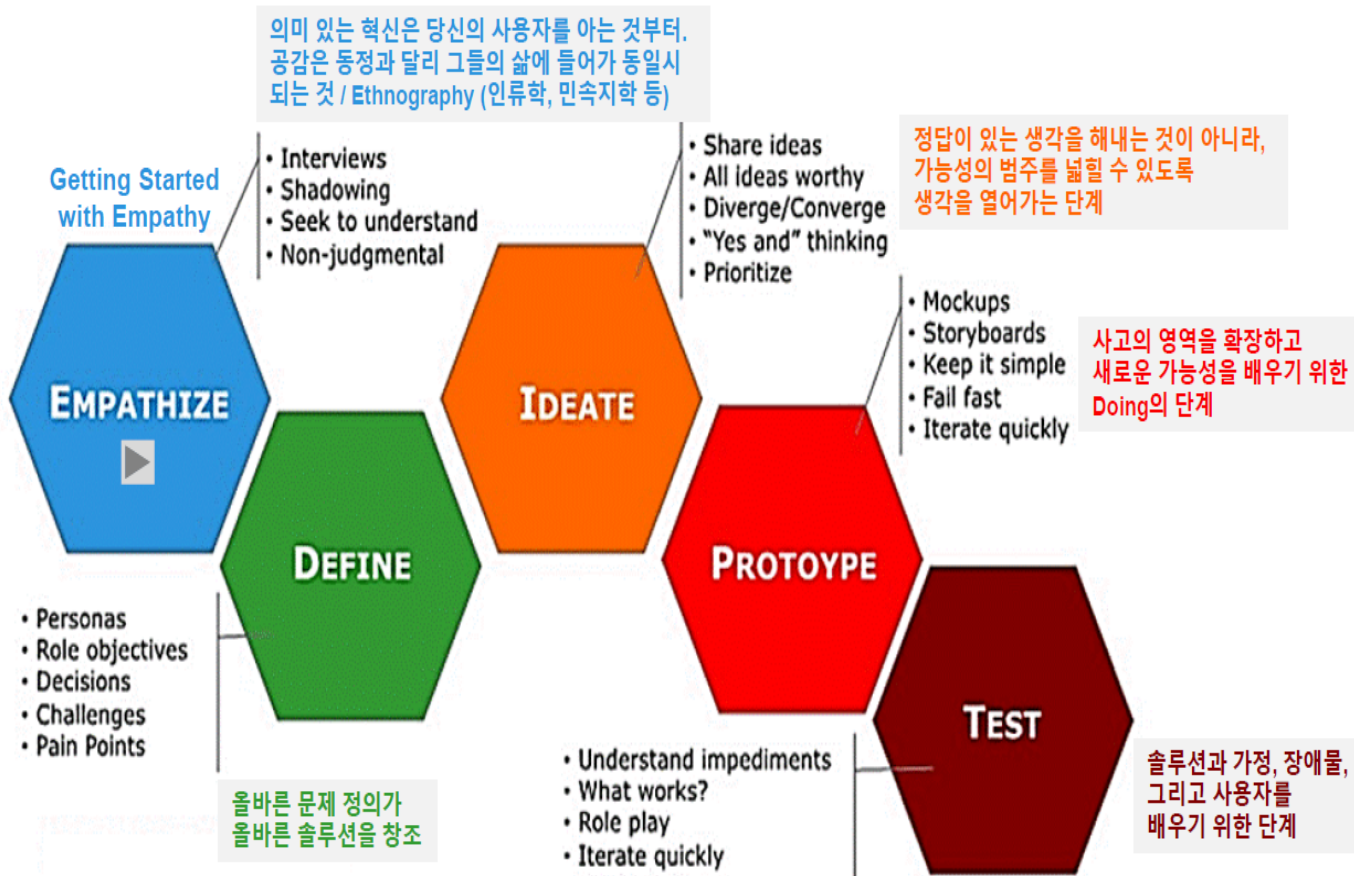
디자인씽킹의 단계는 공감하기, 문제정의하기, 아이디어 찾기, 시제품 만들기, 테스트하기의 5단계로 분류

1. 공감하기(Empathize) :사용자가 놓여진 상황, 문화적 환경 등을 전범위적으로 함께 느끼고 공감하는 단계임. 이 단계에서는 관찰과 인터뷰 등이 진행되고, 이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문화기술적 분석(ethnographic analysis)을 포함한 사용자-중심 연구 기법을 활용한다
2. 문제 정의하기 (Define): 공감하기 단계에서 얻은 다양한 의견들 속에서 리얼하고, 가치 있고, 영감을 주는 문제를 찾아 내는 단계
3. 아이디어 도출(Ideating): 찾아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단계. 다양한 아이디어 도출 방법과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의 정렬방법(스케치하기(Sketching),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마인드 매핑(mind-mapping), 스텝퍼(SCAMPER) 방법 등) 중 우리 팀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방법을 선택하여 아이디어를 도출함.
4. 시제품(Prototype) 만들기: 디자인 컨셉을 제대로 평가하기위해 디자인 결과물이 동작하게 될 환경과 동일한 상황에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단계. 프로토타입은 잘 구현되거나 일부만 구현될 수도 있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경험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함.
5. 테스트(Test) 하기: 완성된 프로토타입을 기반으로 실제 동작을 하는지, 본인의 아이디어가 구현 가능한지를 테스트해보는 단계. 실제로 일반 기업에서는 시제품에 가까운 목업(mockup)을 제작한 후 Usability Test(사용성 평가)를 진행하기도 함.

다. 아이디어 개발 프로세스

2) 아이디어 개발의 방법

〈디자인씽킹의 5단계〉



가. 비즈니스 모델의 정의

-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 :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느 시장에서,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과 방법을 정의한 것. 즉 돈을 버는 메커니즘의 핵심을 기술

폴 티머스 (Paul Timmers)

첫째, 제품/서비스 및 정보의 흐름에 대한 청사진(여러 비즈니스 주체들 및 각 개체의 역할 정의)이다.

둘째, 다양한 비즈니스 주체들에 대한 잠재적 효익 정의이다.

셋째, 수익출처 정의 즉, 비즈니스 모델에는 누가 사업에 참여하고 이들에게 주어지는 대가는 무엇이며 또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의미

마이클 라파 (Michael Rappa)

기업이 수익을 내며 지속적으로 생존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 기업이 가치사슬상에서 어느 위치에 속하는가를 명시함으로써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는 것.

헨리 체스브로 (Henry Chesbrough)

아이디어 및 기술과 경제적 성과를 연결하는 프레임워크

알렉산더 오스터왈더 (Alexander Osterwalder)와 예스 피그뉴어(Yves Pigneur)

“어떻게 조직이 가치를 창출하고, 전달하고, 획득하는 지 논리적으로 전달한 것”

- 비즈니스모델 VS 사업계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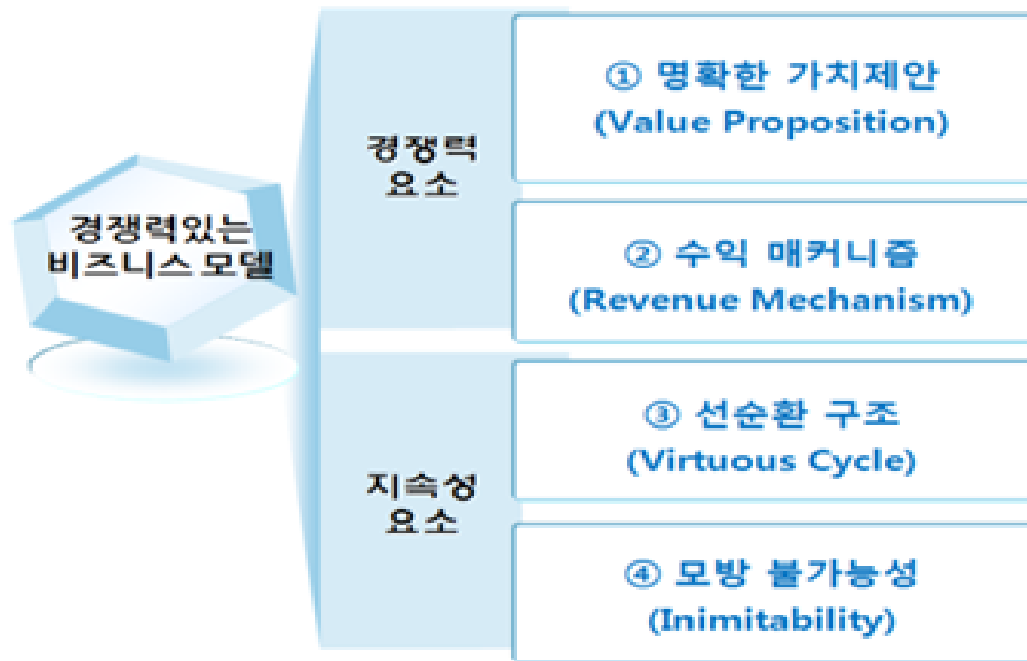
비즈니스 모델은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설계: “What is the profit model?”

사업계획서는 비즈니스 모델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 “How to execute the business model?”

다. 비즈니스 모델 구성요소

〈비즈니스 모델의 4가지 성공 요소〉

경쟁력 요소	1) 명확한 가치제안(Value Proposition)
	2) 수익 메커니즘(Revenue Mechanism)
지속성 요소	3) 선순환 구조(Virtuous Cycle)
	4) 모방 불가능성(Inimitability)



다. 비즈니스 모델 구성요소

1) 명확한 가치제안(Value Proposition)

고객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공한다는 의미

명확한 가치제안을 위한 3가지의 요소

- ① 목표 고객 또는 고객층
- ② 고객에게 주어지는 가치 혹은 혜택
- ③ 기업이 고객가치가 담긴 제품 혹은 서비스를 동종 산업의 경쟁사들보다 더 탁월하게 제공할 수 있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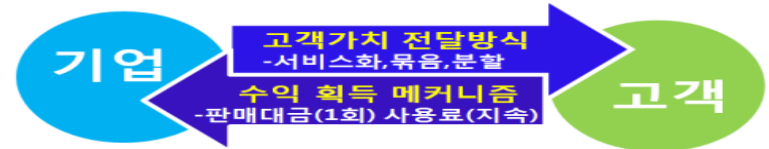
Key Question

- 1. 어떤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할 것인가?
- 2. 우리가 제공하는 가치가 고객이 처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가?

- | | |
|------------------------------------|---------------------------------------|
| • 기존제품/서비스에 비해 우수한 성능(Performance) | • 특정고객을 위한 제품/서비스의 개인화(Customization) |
| • 기존제품/서비스를 뛰어넘는 혁신(Innovation) | • 기존제품/서비스와 구분되는 탁월한 디자인(Design) |
| • 기존제품/서비스와 구분될 만큼싼 가격(Price) | • 기존제품/서비스가 제공하지 못한 편의성(Convenience) |
| • 기존 고객에게 비용절감의 기회(Cost Reduction) | • 기존 고객에게 위험 회피의 기회(Risk Avoidance) |
| • 높은 브랜드 지위(Brand) | • 무언가를 되게 만드는 것 |
| • 기존제품/서비스로 접근이 어려웠던 제품/서비스 제공 | |

2) 수익 메커니즘(Revenue Mechanism)

고객가치가 창출되었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수익과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비즈니스 모델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한 제품 판매를 통해 대금을 회수하는 도식적 구도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방식의 수익 획득을 위한 메커니즘이 필요



· 수익 획득 메커니즘의 다변화가 중요

유형	내용	사례
상품의 서비스화	상품의 주요 핵심기능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여 사용량을 기반으로 과금(pay-per-use)하여 지속적인 수익 획득 흐름을 창출한다.	힐티(건설용 공구), GE 에어크래프트엔진 (비행기 엔진)
면도기-면도날	하나의 제품을 완성하기 위해 2가지 형태의 결합되었을 때 완성품이 되는 제품을 만들어 주력제품의 가격은 낮게 책정해 매출 규모를 늘리고, 부속 소모품의 가격은 높게 책정해 수익을 획득한다.	질레트(면도기), HP(프린트-잉크카트리지)
역 면도기-면도날	마진율이 높은 제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해 수익률을 높이고, 사용가치를 높이는 부가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은 낮게 유지한다.	애플 (아이팟-아이튠스)
프리미엄 (Freemium)	기존의 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하여 다수의 고객을 확보하고 업그레이드에 대한 비용을 추가 부과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스카이프(VoIP), 어도비(S/W)
분할 (Fractionalization)	묶음으로 제공하던 기능과 서비스를 나눠 제공하면서 별도 과금하거나, 한 제품에 대한 이용시간을 분할하여 다수의 사람의 이용률을 높여 사용료를 분담한다.	젯스타(서비스 분할), 넷젯츠(비행기 분할소유)
양면시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이용료를 요구하지 않고, 광고주 등 제3자로부터 수익을 창출한다.	구글 등

3) 선순환 구조(Virtuous Cycle)

다양한 활동의 상승작용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

고객들의 니즈는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고객의 가치도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 기업은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내부 가치사슬 활동과 외부기업을 포함하는 가치 네트워크의 효과적인 설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4) 모방 불가능성(Inimitability)

사업운영 방식이나 경영 방식 등에서 자신만의 핵심 자원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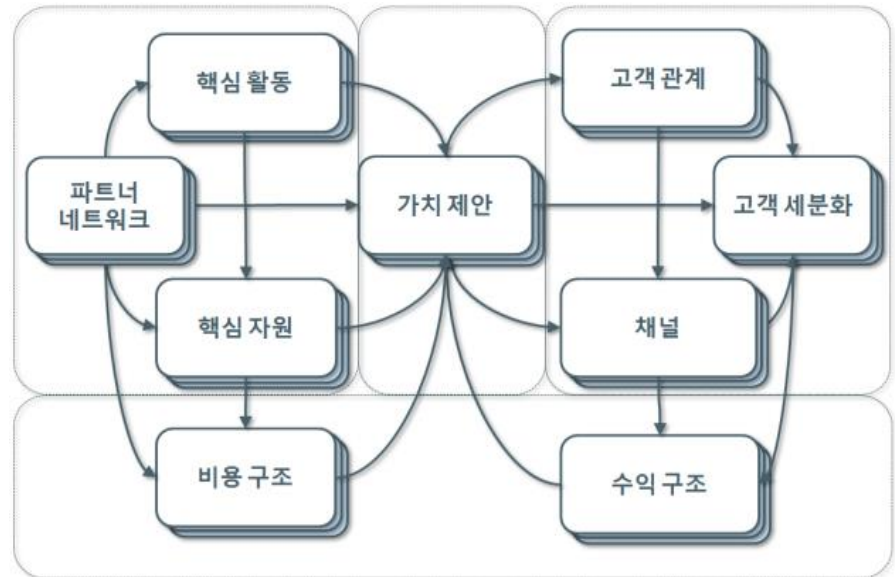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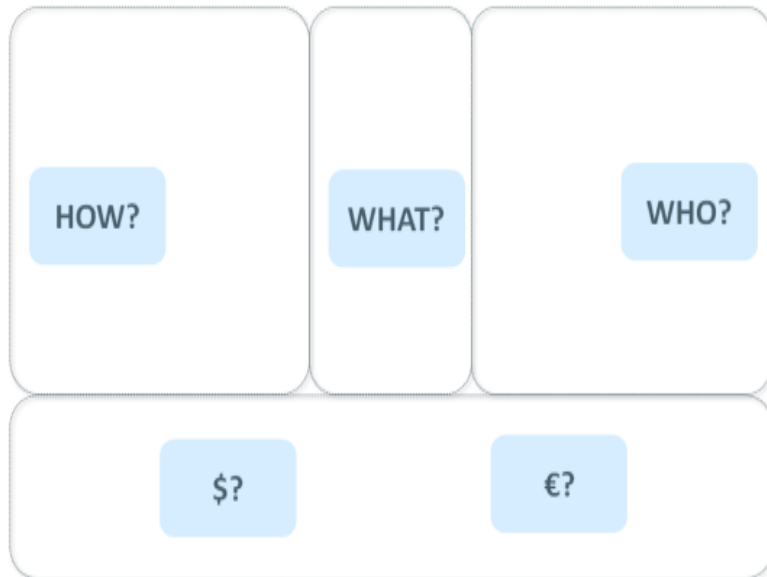
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우위를 갖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쟁기업이나 신규진입기업이 모방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진입장벽의 구축이 필요함.

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Business Model Canvas)

■ 알렉산더 오스터왈더(Alexander Osterwalder)와 예스 피그누어(Yves Pigneur)가 2010년 "Business Model Generation"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제안한 것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BM방법론 중의 하나임.

■ 4가지영역과9가지의빌딩블록으로구성

- 4가지 영역은 제품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무엇을’, 타깃 고객을 선정하기 위한 ‘누구에게’, 제품의 필요자원, 전략 등을 포함하는 ‘어떻게’, 그리고 예상비용을 산정하고 수익을 측정하는 ‘얼마나’로 구성



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Business Model Canvas)

1) 고객 세분화 (Customer Segmentation)

■ Defin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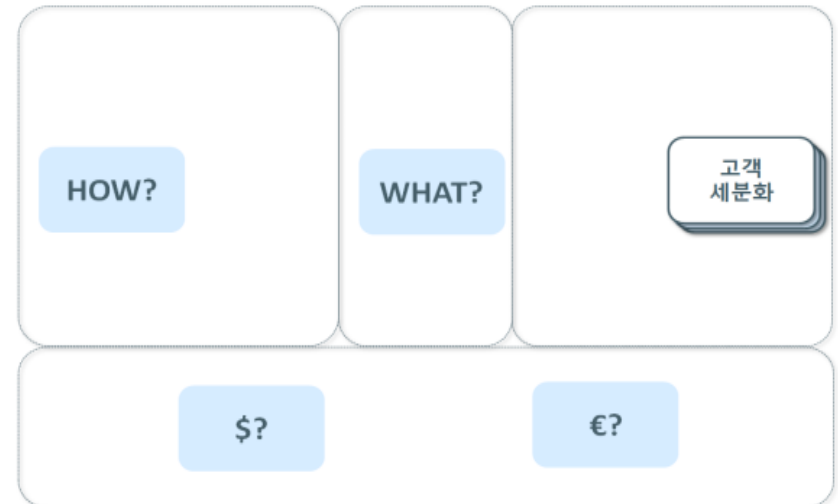
- 각 고객층의 성향과 특성에 대해서 파악, 인구통계학적, 심리유형적, 구매패턴적, 가치추구적인 분류를 통해서 고객을 세분화

■ Key Question

- 누구를 위해 가치를 창조해야 하는가? 누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고객인가?

■ 유형

- 매스마켓 : 대부분의 고객을 포함하는 시장
- 틈새시장 : 기존에 형성된 큰 시장과 시장 간의 틈새에 형성된 시장으로 일반적으로 기존 기업들의 관심 범위가 아니므로 창업기업이 목표로 하는 고객으로 가장 적합
- 멀티사이드 시장 : 2개 이상의 개별적인 타겟그룹으로 형성된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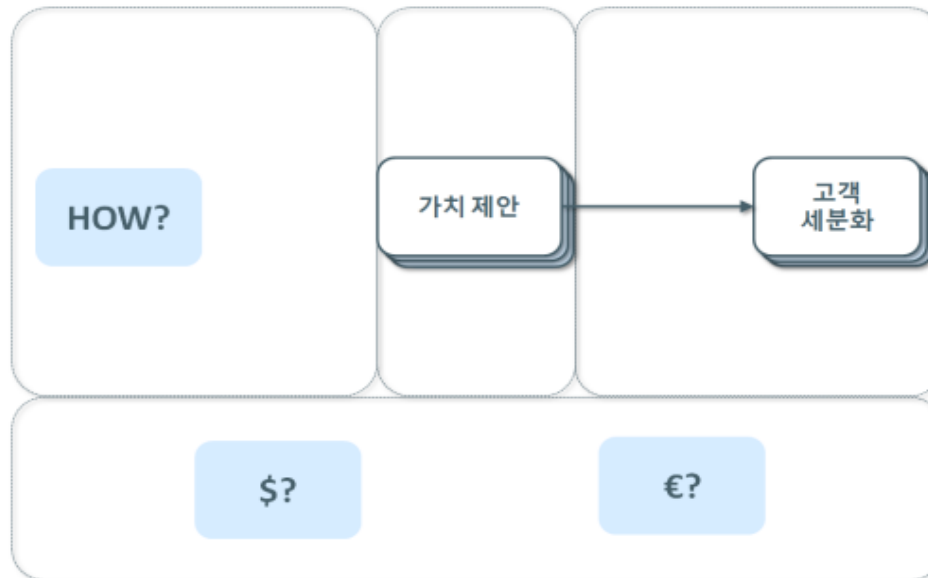
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Business Model Canvas)

2) 가치제안 (Value Proposition)

고객 세분화가 결정되면, 가치제안을 하게 되는데 고객의 문제와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이라 표현할 수 있음.

가치제안에는 양적인 것(가격, 서비스의 속도 등)과 질적인 것(디자인, 사용자 경험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참신성, 성능, 맞춤가능성, 디자인, 브랜드, 가격, 편리성, 위험감소 등이 흔히 고려가 되는 요소임.

고객은 “제품, 서비스”의 기능 그 자체를 원하기보다는 고객이 겪고 있는 문제와 요구사항을 해결하는데 관심이 있음



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Business Model Canvas)

3) 채널 (Channel)

■ Defin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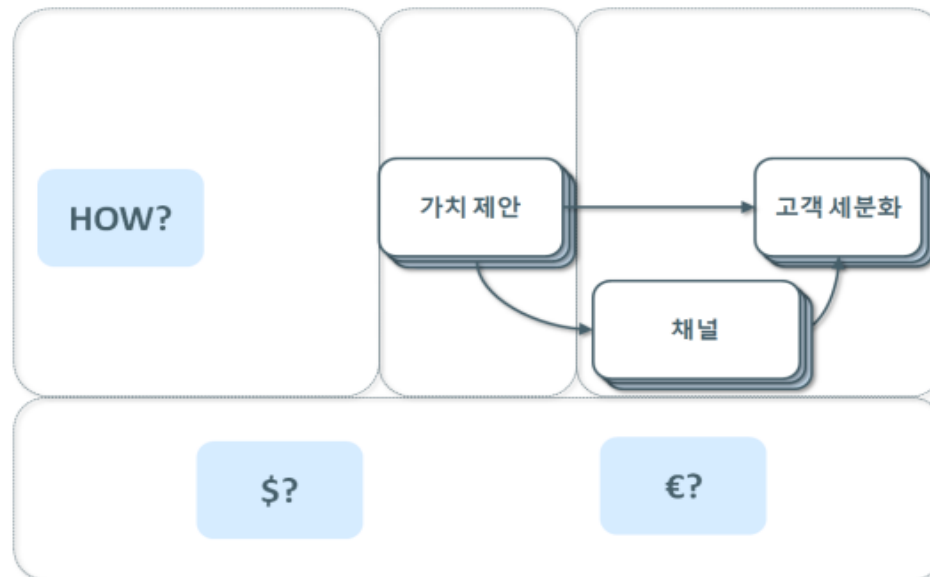
- 기업이 고객 세그먼트에게 가치를 제안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법

■ Key Question

- 각각의 고객들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 가치가 전달되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가?
- 어느 채널이 가장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적인가?

■ 유형

- 직접적인 채널 : 영업 팀과 웹사이트 운영. /간접적인 채널 : 직영 매장, 파트너 매장, 도매 등



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Business Model Canvas)

4) 고객관계 (Customer Relationship)

■ Defin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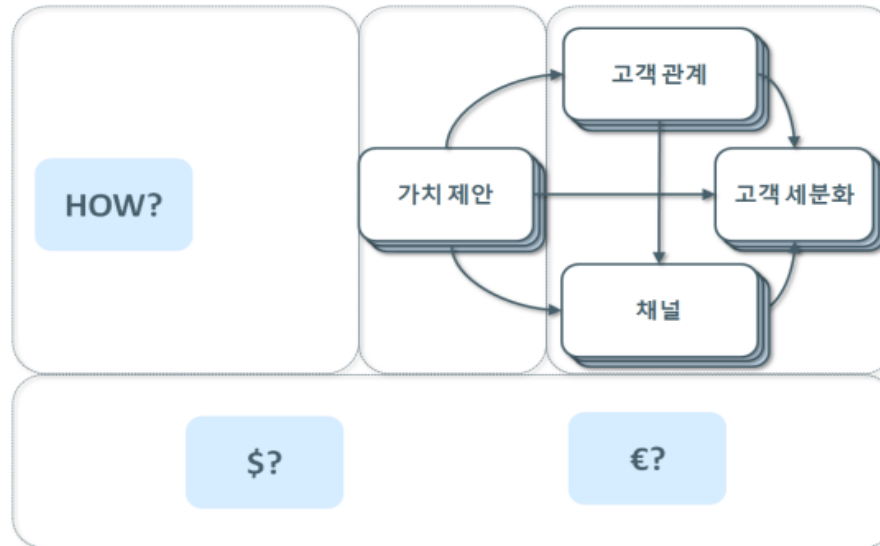
- 특정 고객 세분화와 기업이 맺는 관계의 유형을 의미.
- 신규고객 확보(Customer acquisition), ② 기존고객 유지(Customer retention) ③ 판매의 확대(Boosting sales)

■ Key Question

- 각각의 고객들은 어떤 방식의 고객관계가 만들어지고, 유지되기를 원하는가?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 유형

- 별 어시스트, 매우 헌신적인 개별 어시스트 / 셀프서비스, 자동화서비스 / 커뮤니티, 코-크리에이션



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Business Model Canvas)

5) 수익구조 (Revenue Stream)

■ Definition

- 각각의 고객 세분화에서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을 의미. 각각의 고객 세분화들이 어떠한 경우에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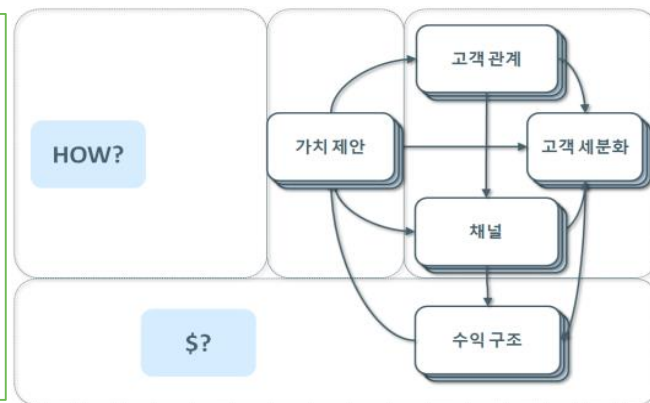
■ Key Question

- 고객들은 어떤 가치를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가? 현재 무엇을 위해 돈을 지불하고 있으며, 어떻게 지불하고 있는가? 고객들은 어떻게 지불하고 싶어 하는가?

■ 유형

- 한번에 지불하는 유형과 지속적인 지불이 일어나는 유형으로 구분됨

- **물품 판매:** 제품의 직접적인 판매를 통해 얻게 되는 수익원
- **이용료:**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원 (정액이용료등)
- **가입비:**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이용권한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원 (연간가입비등)
- **대여료/임대료:** 특정한 자산을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
- **라이선싱:** 특허/저작권사용에 대한 사용료
- **중개수수료:** 중개자와 중개의뢰인간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매개역할에 대한 수수료
- **광고:**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 브랜드 광고비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원



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Business Model Canv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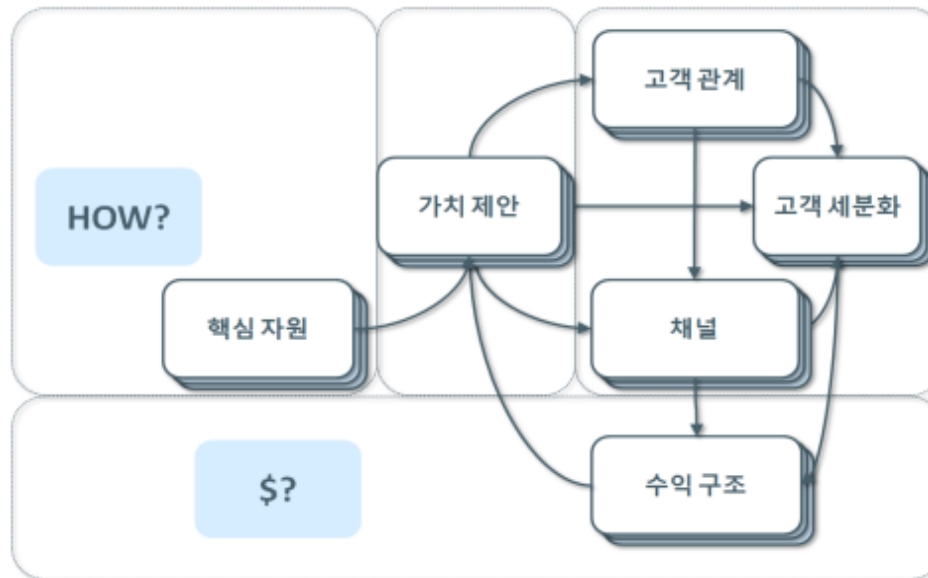
6) 핵심자원 (Key Resources)

■ Definition

- 비즈니스 모델이 동작하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비즈니스모델에 따라 다름(기술, 인력, 자본 등)

■ 유형

- 물적자원: 공장, 공장설비, 자동차, 기계, 시스템, 물류네트워크등
- 인적자원: 생산적인재능·기술·지식을 갖춘 인력을 말하며, 마케터, 소프트웨어개발자, 웹사이트관리자등
- 지적자산: 브랜드, 독점적지식, 특허나 저작권, 파트너십, 고객데이터베이스등
- 재무적자원: 현금이나 신용한도, 스톡옵션등을 활용하는 경우



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Business Model Canv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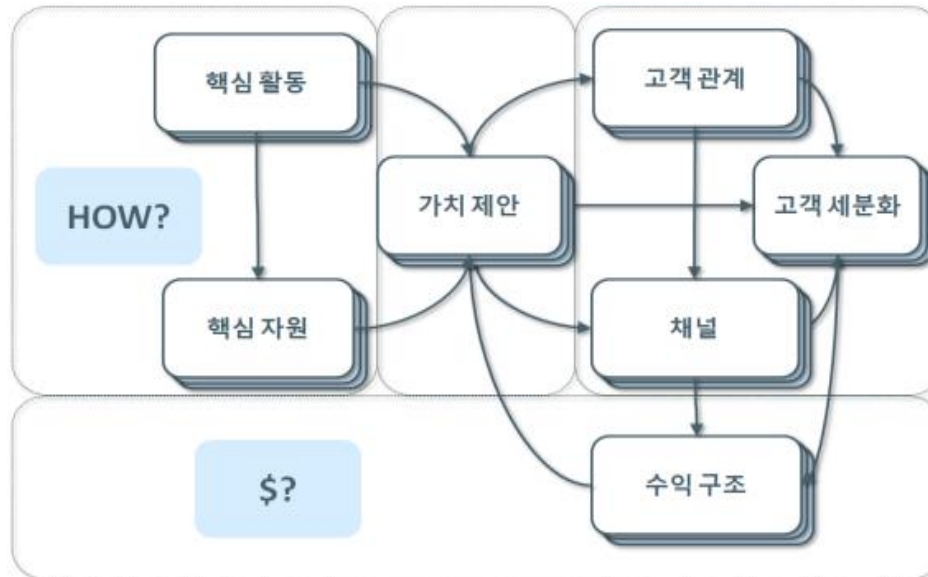
7) 핵심활동 (Key Activities)

■ Definition

- 비즈니스 모델을 동작시키기 위해 회사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일들을 의미함

■ 유형

- 생산: 제품을 설계, 제작, 운송하는 것
- 문제해결: 고객이 처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
- 플랫폼/네트워크: 플랫폼을 핵심자원으로 설계된 비즈니스모델은 플랫폼이나 네트워크와 관련된 핵심활동에 의해 지배됨



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Business Model Canv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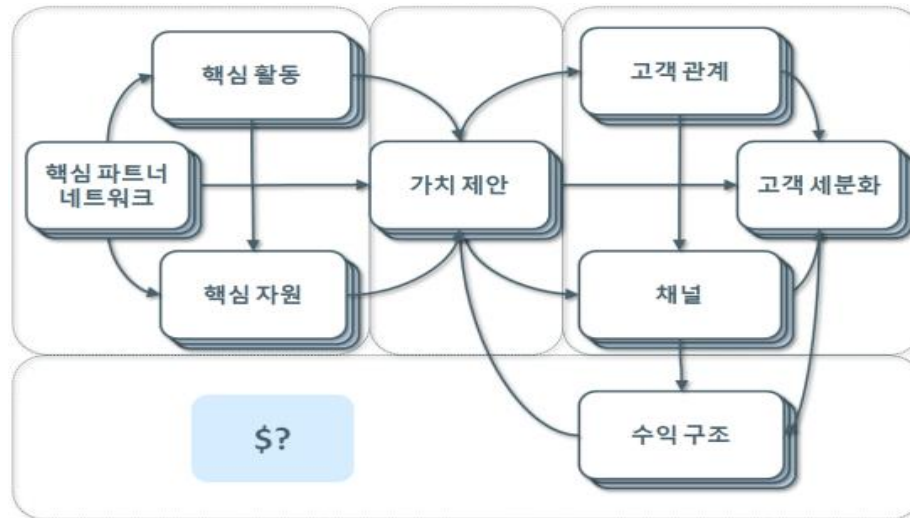
8) 핵심 파트너 (Key Partners)

■ *Definition*

- 비즈니스 모델을 동작시키는데 필요한 협력대상. 비즈니스 모델을 최적화하고, 위험을 감소시키며, 없었던 자원을 획득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유형*

- 비경쟁자들과 전략적 제휴 (Strategic alliances)
- 경쟁자들과 전략적 파트너십 (Competition)
-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조인트 벤처 (Joint ventures)
- 신뢰성 있는 공급을 위한 구매-공급관계 (Buyer-supplier relationships)



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Business Model Canv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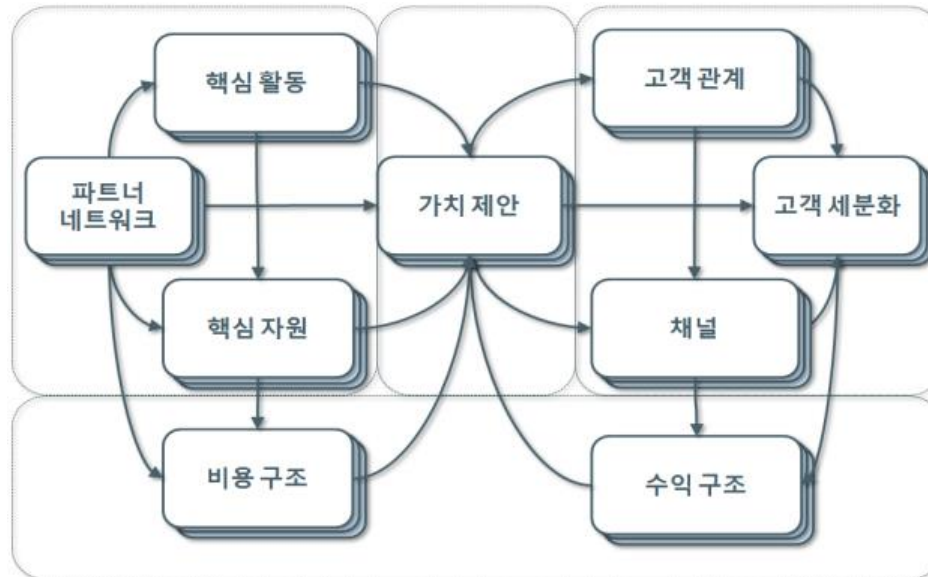
9) 비용구조 (Cost Structure)

■ *Definition*

- 가치를 창조하고 전달하고, 고객관계를 유지하고, 매출을 발생시키는 데에는 비용이 발생. 핵심자원, 핵심활동, 핵심 파트너들이 명확해지면 쉽게 계산이 가능함

■ *유형*

- 고정비: 매출액의 크기가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고 발생하는 비용으로 고정비의 성격을 갖는 비용, 인건비(정규직원), 월세, 화재보험료, 광고선전비, 감가상각비 등
- 변동비: 매출액이 변할 때 매출액 크기와 일정비율을 유지하면서 같이 변하는 비용, 원재료비, 인건비(파트타임), 광고선전비(비정기적광고) 등



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Business Model Canvas)

<p>⑧ 핵심 파트너십 (Key Partners)</p> <p>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원활히 작동시켜줄 수 있는 “공급자-파트너”간의 네트워크를 의미</p> <p>① 누가 핵심 파트너인가? ② 핵심 공급자는 누구인가? ③ 파트너로부터 어떤 핵심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가? ④ 파트너가 어떤 핵심활동을 수행하는가?</p>	<p>⑦ 핵심활동 (Key Activities)</p> <p>기업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중요한 일들을 의미</p> <p>① 우리의 가치제안은 어떤 핵심활동을 필요로 하는가? ② 공급 채널을 위해선 어떤 활동이 필요한가? ③ 고객관계와 수익원을 위해 어떤 활동이 필요한가?</p> <p>⑥ 핵심자원 (Key Resources)</p> <p>비즈니스를 하는데 가장 필요한 중요 자산을 의미</p> <p>① 우리의 가치제안은 어떤 핵심자원을 필요로 하는가? ② 공급 채널을 위해선 어떤 자원이 필요한가? ③ 고객관계와 수익원을 위해 어떤 자원이 필요한가?</p>	<p>② 가치제안 (Value Proposition)</p> <p>특정 고객 세그먼트가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조합</p> <p>①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할 것인가? ② 우리가 제공하는 가치가 고객이 처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가?</p>	<p>④ 고객관계 (Customer Relationships)</p> <p>특정한 고객 세그먼트와 어떤 형태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의미</p> <p>① 어떤 방식의 고객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기를 원하는가? ②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③ 다른 요소들과는 어떻게 통합되는가?</p> <p>③ 채널(Channels)</p> <p>고객에게 가치 제안을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법</p> <p>① 어떤 채널을 통해서 가치가 전달되기를 원하는가? ②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가? ③ 어느 채널이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적인가?</p>	<p>① 고객 세그먼트 (Customer Segments)</p> <p>고객 세그먼트는 기업이 제각기 얼마나 상이한 유형의 사람들 혹은 조직을 겨냥하는지를 규정</p> <p>① 누구를 위해 가치를 창조해야 하는가? ② 누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고객인가?</p>
<p>⑨ 비용구조 (Cost Structure)</p> <p>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의미</p> <p>①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 안고 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비용은 무엇인가? ② 어떤 핵심자원 / 핵심활동에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가?</p>		<p>⑤ 수익원 (Revenue Streams)</p> <p>기업이 각 고객 세그먼트로부터 창출하는 현금을 의미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한 것이 수익)</p> <p>① 고객들은 어떤 가치를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가? ② 현재 무엇을 위해 돈을 지불하고 있으며, 어떻게 지불하고 있는가? ③ 고객들은 어떻게 지불하고 싶어 하는가?</p>		

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Business Model Canvas)

[daum 카카오의 비즈니스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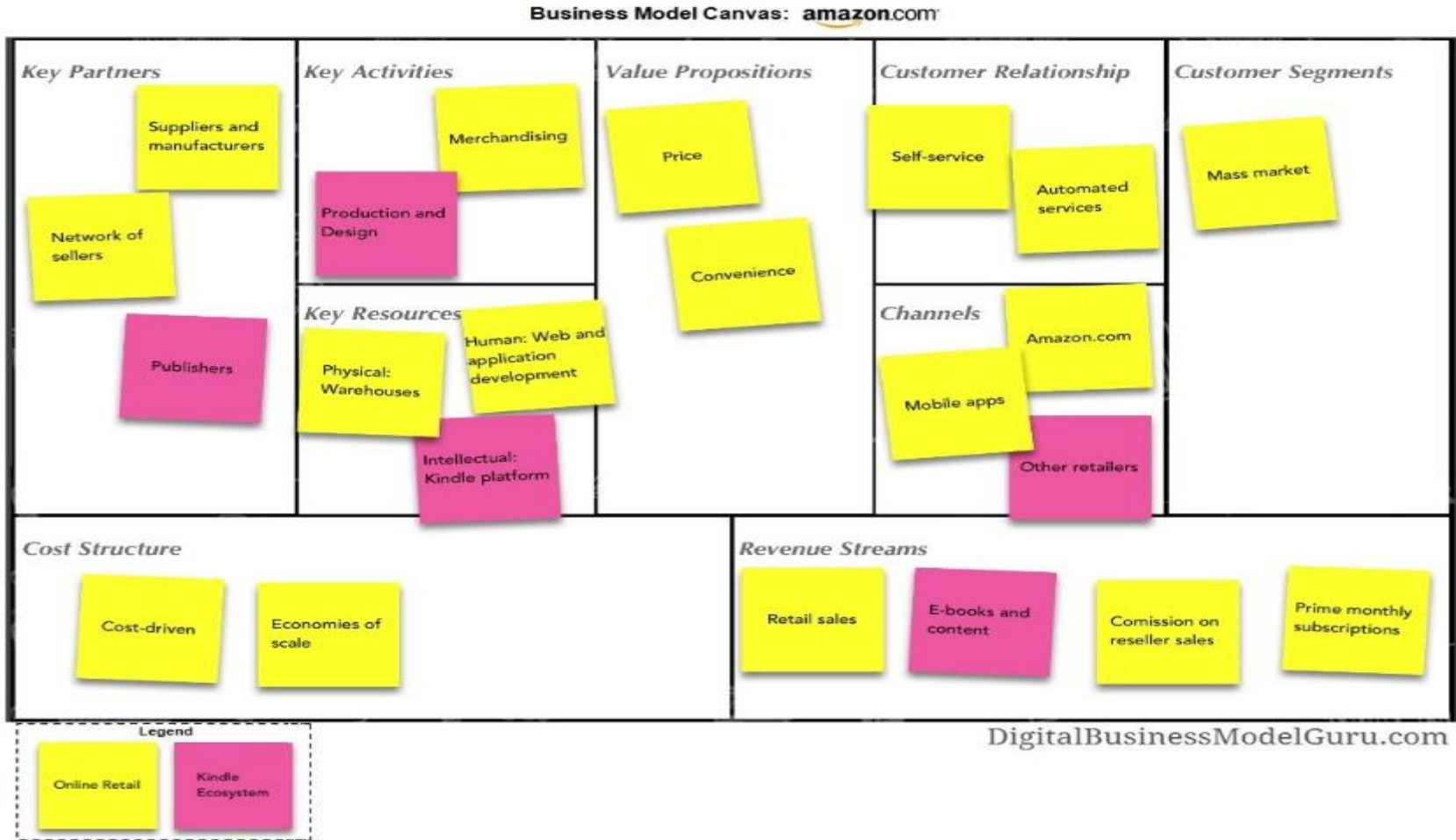
핵심파트너(KP)	핵심활동(KA)	가치제안(VP)	고객관계(CR)	고객(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메이드(게임) • 통신사 • 포도트리 (카카오페이지) • 투자자 • 콘텐츠개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 •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메신저 서비스 • 사진공유서비스 (카카오스토리) • 모바일 플랫폼 (스토리, 게임, 디지털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er - 커뮤니티 • 기업/개발자 - 플랫폼 제공, 마케팅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 사용자 • 플러스 친구 제휴 업체 • 스마트폰 게임 개발자(업체) • 광고주
	핵심자원(KR)		유통채널(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카오 플랫폼 • 플랫폼을 통한 사용자 그룹 (거대회원수) • 브랜드네임/캐릭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앱(마켓) • 웹(PC) 	
비용구조(C\$)		가치창출(V\$)	수익원(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센터 유지관리 (하루 메시지 건수 26억건) • 광고비 •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 제공 - 서드파티 개발환경 제공, 파트너 업체들과 공유 수익모델 • 콘텐츠 통합을 통한 콘텐츠 보급과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사용자 무료 • 판매수수료 (기프트콘, 플러스 친구, 유료 이모티콘, 카카오게임, 카카오페이지) • 광고 	

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Business Model Canvas)

[배달의 민족 비즈니스 모델]

핵심파트너(KP)	핵심활동(KA)	가치제안(VP)	고객관계(CR)	고객(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달음식점 • 통신사 • 투자자 (알토스벤처스, 골드만삭스) • 앱 스토어 • 구글 스토어 • 네이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응용 • 프로그램 서비스 • 이벤트 • 정보수집 • 배달업체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플랫폼 (채널, 정보) • 배달 음식점 (평가/리뷰) • CRM (고객관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er : 커뮤니티, 이벤트, 니즈충족 • 기업/개발자 : 마케팅관리, 로컬비즈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 사용자 • 20대 초반~ 30대 초중반 • 배달 음식점
	핵심자원(KR)		유통채널(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 GPS • 다양한 온라인 전단지 • 자동이체(CMS) • 바로결제 • 폰트 (한나체, 주아체, 도현체) • 플랫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앱(마켓) • 웹(PC) • 스마트 TV 	
비용구조(C\$)		가치창출(V\$)	수익원(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버비용 • 데이터 유지관리 (음식점 메뉴와 소개 및 평가/리뷰) • 인건비 • 이벤트 경품비 • 복지비 • 앱 개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통합을 통한 콘텐츠 보급과 확산 • 폐기 되는 전단지의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사용자 무료 • 배달 음식점과 소비자의 직거래 연결 수수료 • 투자자 • 월 사용료(파워콜, 울트라콜) 	

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Business Model Canv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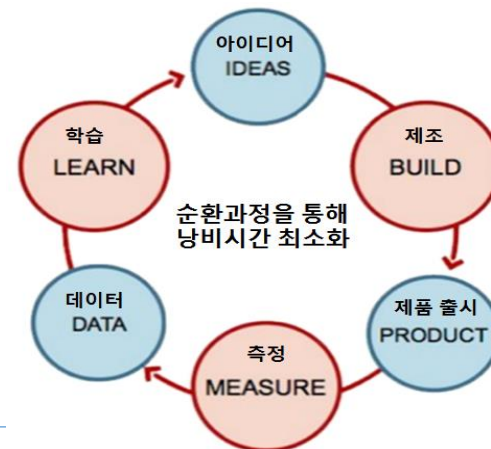


<https://bunibus.blogspot.com/2020/09/business-model-canvas-beispiel-amazon.html>

나) Lean Canvas

○ 창업기업에 적용가능한 모델

- 창업기업의 경우 인적, 물적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가정(market assumption)을 테스트하기 위해 빠른 프로토타입(rapid prototype)을 만들도록 권하면서 고객 개발론을 사용하여 실제 고객과 접촉하는 빈도를 높여서 낭비를 줄여 시장에 대한 잘못된 가정을 최대한 빨리 검증하고 실패 위험을 회피하고자 함.
- Lean Startup은 에릭 리스(Eric Ries)가 자신의 창업의 실패와 성공 경험을 통해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고안한 경영전략
- Lean Startup의 프로세스는 아이디어의 발굴을 통해 최소 기능 제품(MVP, Minimum Viable Product)을 빠르게 만들고 (Build) 구축된 제품 혹은 서비스를 통해 시장에서의 반응을 측정(Measure)한 후 그 고객의 측정 평가 결과(Data)를 통해 부족한 점을 배워서(Learn) 반복적으로 보완하거나 혹은 사업의 방향을 조기에 전환(Pivot)함으로써 실패의 부담을 낮출 수 있음.
- Lean Canvas란 애시 모리아가 알렉산더 오스터 왈더가 창안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와 에릭 리스의 Lean Startup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에 적합한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만든 것.
-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경우는 창업기업과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이며 Lean Canvas의 경우는 오직 창업기업에게만 적용 가능하도록 구성.



나) Lean Canvas

〈Lean Canvas의 구성〉

린 캔버스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9개 블록 중 4개 블록을 초기 스타트업에 더 필요한 블록으로 변경했다.

- Key Partners → Problem : Customer Segment가 겪고 있는 진짜 문제와 기존 대안 정의
- Key Activities → Solution : 정의한 Problem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기능/혜택
- Key Resources → Key Metrics : 우리의 핵심 활동에서 측정하고 관리해야 할 핵심 지표
- Customer Relationships → Unfair Advantage : 우리의 진정한 경쟁우위 정의



<http://www.leancanvas.com>

나) Lean Canvas

〈Lean Canvas의 작성 순서〉

- ① 문제 (Problem) : 고객들이 해결해 주길 바라는 가장 중요한 3가지 문제점들을 기재한다.
- ② 고객군(Customer Segment) : 연령, 소득, 지역, 취미 등을 기준으로 가급적이면 타겟 고객을 세분화 한다.
- ③ 고유의 가치 제안(Unique Value Proposition) :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 이유와 다른 제품과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알기 쉽고 설득력 있는 단일 메시지이다.
- ④ 솔루션 (Solution) :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능이다.
- ⑤ 채널 (Channels) : 고객과 만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채널이며 고객 도달경로이다.
- ⑥ 수익원 (Revenue Streams) : 매출 모델, 생애가치, 매출, 매출 총이익이다.
- ⑦ 비용구조 (Cost Structure) : 고객 획득비용, 유통비용, 호스팅비용, 인건비 등이다.
- ⑧ 핵심지표 (Key Metrics) : 측정해야 하는 핵심 활동으로 비즈니스의 진행사항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5단계 이다. Acquisition(사용자 유치), Activation(사용자 활성화), Retention(사용자 유지), Revenue(매출), Referral(추천)
- ⑨ 경쟁우위(Unfair Advantage) : 다른 제품이 쉽게 흉내 낼 수 없는 특징

문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문제	해결책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능	고유의 가치제안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 이유와 다른 제품과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알기 쉽고 설득력있는 메시지	일방적 경쟁우위 다른 제품이 쉽게 흉내 낼 수 없는 특징	고객군 (목표고객)
1	4	3	9	2
	핵심지표 (측정해야 할 활동)		채널 (고객 도달경로)	
	8		5	
비용구조 (고객획득비용, 유통비용, 호스팅, 인건비 등)		수익원 (매출모델, 생애가치, 매출, 매출 총 이익)		
7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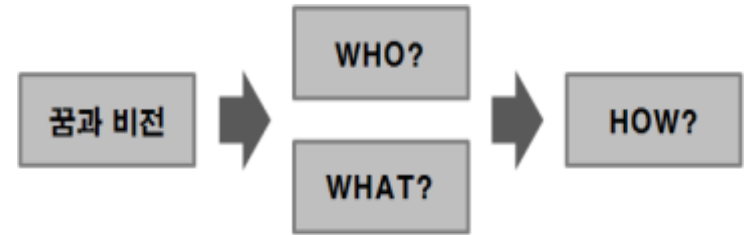
<http://www.leancanvas.com>

가) 사업계획서의 의의 및 유용성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사업계획(Business Plan)의 수립은 경영순환과정의 출발점이다.

경영과정을 Plan(계획), Do(실행), See(평가 및 피드백)의 순환과정으로 보았을 때 Plan이 기업경영 프로세스의 출발점

“사업계획은 기업가가 자신의 꿈이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고객(시장)을 대상으로 자신의 역량을 조직화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상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이다”



나) 사업계획서 용도

〈사업계획의 주요 이용자와 관심사항〉

주요 이용자	주요 관심정보	사업계획서상 해당 부분
경영자, 조직 구성원 등 내부 이해관계자	사업목표, 전략, 사업성과, 보상계획	사업계획서 전반, 사업목표, 사업전략, 인건비 예산
벤처투자자	미래 성장성, 수익성, 현금흐름, 기업가치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중장기 사업계획서, 사업타당성 분석표, 경제성분석
금융기관(자금대여)	안전성(담보능력), 대여금회수 가능성, 현금흐름	현금흐름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자보상비율
엔젤 투자자	창업자개인의 능력 및 신뢰성, 수익성, 성장성, 회수가능성	손익계산서, 내부수익률 계산표, 조직구성원, 장기사업계획서
M&A 고려 기업	장기성장성, 기술적 특이성, 시너지, 비즈니스모델	장기사업계획서, R&D 계획, 보유 특허 인적자원 수급계획, 신제품개발계획
시민사회 단체	사회적 책임, 친환경경영, 인권, 다양성	환경관련투자, 사회적 책임활동(CSR) 예산, 장애인고용, 다양성

다) 사업계획서 수립원칙

사업계획서에서는 사업목표의 진실성과 실행 가능성이 간결하고 설득력 있게 담겨있어야 한다.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원칙들을 다음과 같다.

- ① 목표 중심적인 접근이 되어야 한다.
- ② 자신에 대한 진실성이 담겨 있어야 한다. 사실과 의견을 잘 구분해야 한다.
- ③ 형식이나 구조 및 내용에 있어서 업종에 따른 차별적인 접근이 되어야 한다.
- ④ 주요 일정 별 실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 기간별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과정이 측정 가능해야 한다.
- ⑥ 위험요인 분석, 평가 및 대응방안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와 검증〉



다) 사업계획서 수립원칙

1) Where am I now? (환경분석: 내부환경, 외부환경)

- ① **꿈, 비전, 철학** : 추진하는 사업이 자신이 추구하는 개인적인 가치관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질 수 있나?
- ② **핵심역량** :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역량은 무엇이며 이들 역량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 ③ **경험** : 사업자가 그 동안 축적한 경험 및 사업에 참여할 구성원들의 경력, 이력사항들은 무엇이며 이것들이 사업에 어떻게 활용될까?
- ④ **자원** : 사업자 자신이 보유한 물적, 인적자원은 무엇이며 사업자가 외부로부터 동원해야 할 물적, 인적자원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들 자원이 사업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 ⑤ **거시경제상황** : 환율변동 추이, 국제 에너지가격 동향, 이자율변동, 자본시장상황, 물가변동 등 거시경제 요인들의 움직임과 이들 요인들이 사업에 미칠 영향의 정도를 예측한다.
- ⑥ **산업동향** : 추진하는 사업이 속하는 산업부문에 대한 전망 및 추이에 대한 질문으로서 산업의 수명주기, 정부정책, 진입장벽, 국제동향 등에 관한 사항과 추진하는 사업에 주는 시사점 등이다.
- ⑦ **경쟁상황** : 현재 및 잠재적인 시장참여자들에 대한 정보와 시장에서 위치 및 강점과 약점에 대한 질문이 포함된다.

다) 사업계획서 수립원칙

2) Where to go?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 사업목표는 열정과 확신을 불러일으키는 동인
 - 사업계획에서는 매출액, 시장점유율, 영업이익 등 정량적(quantitative)인 수치를 중심으로 사업목표가 설정되는데 이보다 먼저 정성적(qualitative)인 목표가 전체되는 것이 옳다.
- ①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일 경우에 필요한 질문
 - 신제품 출시가 사업에 필수적인지의 여부를 자문한다.
 - 기존의 제품라인을 늘리거나 새로운 Brand를 추가해야 할지의 여부를 자문한다.
 - 기존 시장에 추가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지를 자문한다.
 - 기존의 고객층에 추가하여 새로운 고객그룹의 확보가 필요한지를 자문한다
 - 사업목표달성을 위하여 전략적인 M&A가 필요할지의 여부를 자문한다.
 - 사업의 성장을 위해서 해외진출의 방안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자문한다.
 - 인적자원을 보강하기 위하여 리더십역량의 확보를 도모해야 하는지 자문한다.
 - 원가목표 달성을 위해서 생산성 향상의 방안이 필요한 지를 자문한다.
 - ② 창업일 경우 필요한 질문
 - 주요 표적 고객그룹이 누구인지를 확인한다.
 - 경쟁사와 비교하여 뚜렷이 구분되는 제품과 서비스의 차별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본다.
 - 사업을 시작하면서 시장에 침투하는 깊이와 넓이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검토한다.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의 규모는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자문한다.
 - 경쟁사와 비교하여 시장에서의 확보하고자 하는 위치를 기간별로 어떻게 설정할지를 자문한다.

위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조직 내부에서 공유한 후에는 아래와 같이 정성적인 구체적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다.

- ① 시장에서의 위치(순위)를 기간별 예상 성적은?
- ② 신제품개발의 품목과 개발 일정은?
- ③ 신시장 개척을 위한 표적시장과 일정은?
- ④ 새로운 브랜드의 품목과 개발일정 그리고 새 브랜드의 역할은?
- ⑤ 식품서비스 사업일 경우 신 메뉴개발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 ⑥ 고객만족의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업그레이드할 것인가?
- ⑦ 생산성 향상의 필요성과 그 수준은?
- ⑧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과 범위는?
- ⑨ 조직문화의 유지 또는 발전의 필요성과 방안은?

다) 사업계획서 수립원칙

3) How to get there?(실행 전략)

‘How to get there’ 은 사업전략수립에 관한 질문으로서, 조직에서 공유하고 동의한 사업목표를 어떤 방식으로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도출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조건이 유사한 경쟁기업들 사이에 승패를 가르는 것은 얼마나 효과적이며 실행 가능한 전략을 구사했느냐에 따라 판가를 난다.

- ① 제품구성(Product Portfolio)에 대한 아이디어 및 범위에 대한 예상은?
- ② 어떤 가격정책을 펼칠 것인가?
- ③ 어떠한 유통전략을 선택할 것인가?
- ④ 광고 및 판매촉진전략에 대하여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가?
- ⑤ 고객관계 관리에 대한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 ⑥ 차별화를 위한 제품 & 서비스의 핵심 포지셔닝은 무엇인가?
- ⑦ 브랜드구축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
- ⑧ 전략적 제휴가 필요할 것인가? 필요하다면 어떠한 시너지를 희망하는가?
- ⑨ 주요 차별화전략은 무엇인가?
- ⑩ 인적자원의 역량은 충분 한가 ? 새로운 인재수혈이 필요할 것인가?
- ⑪ 보유하고 있는 재무자원은 충분한가? 재무자원의 주공급원은 누구일까?

라) 사업계획서 구조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정해진 양식은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음의 내용들은 들어가는 것이 좋다.

1. 요약문
2. 기업소개 : 창업자 현황, 회사의 일반현황, 비전과 미션
3. 아이템/아이디어 : 개발동기, 필요성, 제품이 제공해주는 효용
4. 시장환경분석: 동종업계현황, 시장의 규모와 전망, 경쟁자 분석, SWOT분석
5. 마케팅계획 : STP전략, 4P(Price, Product, Place, Promotion)
6. 생산계획 : 생산전략, 기자재, 원재료 조달계획
7. 인력 및 조직구성: 핵심 창업인력, 조직도
8. 자금조달 계획: 자기자본과 차입에 대한 내용
9.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손익분기점 계산
10. 위기 분석 및 대응계획
11. 향후 추진 일정

라) 사업계획서 구조

공식적인 사업계획서 외에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백업용 또는 예비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자료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준비되어야 한다.

- ① 수익모델(Revenue Model)
- ② 사업타당성분석(Feasibility Study)
- ③ 가치사슬분석(Value Chain Analysis)
- ④ 각종 비율분석(Ratio Analysis)
- ⑤ 사업매력도분석(5 Forces Model)
- ⑥ 제품/브랜드 포트폴리오 매트릭스(Product/Brand Portfolio Matrix)
- ⑦ 마케팅계획(Marketing Plan)
- ⑧ 환경문제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응계획(CSR Plan)

특히 잠재적 투자자, 용자를 고려하는 금융기관, M&A 등 전략적 제휴를 탐색하는 상대방들은 공식적인 사업계획서 외에 경제성분석이나 마케팅계획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가. 기술이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기술이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出願)된 특허, 실용신안(實用新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기술평가”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기술”이란 기술의 소유권·실시권 또는 이용권 등이 공공연구기관에 귀속된 기술을 말한다.

가. 기술이전

〈그림 58〉 대학의 연도별 기술이전·사업화 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건)



〈그림 68〉 전체대학의 연도별 연구개발투자 회수율 현황

(단위: %)



- 연구개발투자 회수율 = {(전체대학 기술이전 기술료) / (전체대학 과학기술분야 연구비)} x 100

〈연도별 대학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지식재산권 수	101,427	109,844	120,974	135,786	145,764
기술이전건수	4,767	4,310	4,717	4,818	5,258
기술이전 비율(%)	4.70	3.92	3.90	3.55	3.61
기술이전금액(백만원)	76,079	77,216	86,960	101,794	100,266

- 출처: 2020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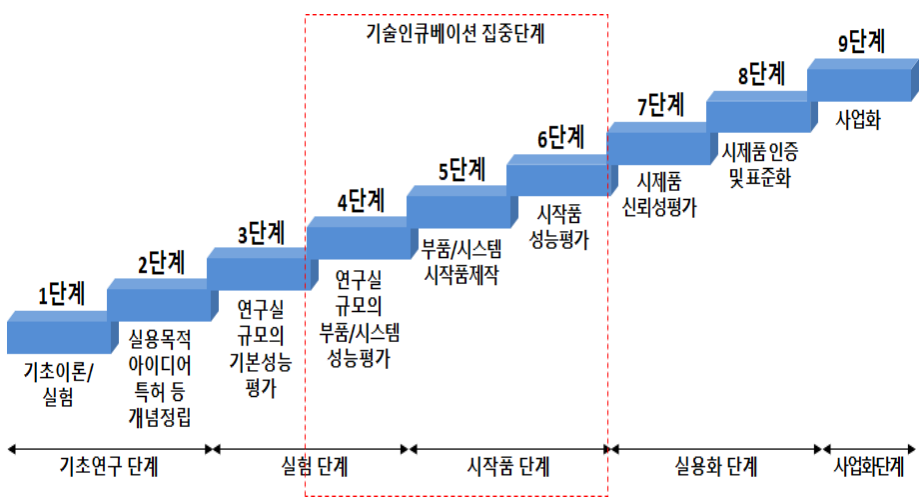
나. 기술사업화

-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기술인큐베이션 개념 도입 필요성 증대

- 기술인큐베이션은 “개발된 기술에 대한 다각적 관리로 기술사업화의 성공률을 증대시키기 위한 지원 체계”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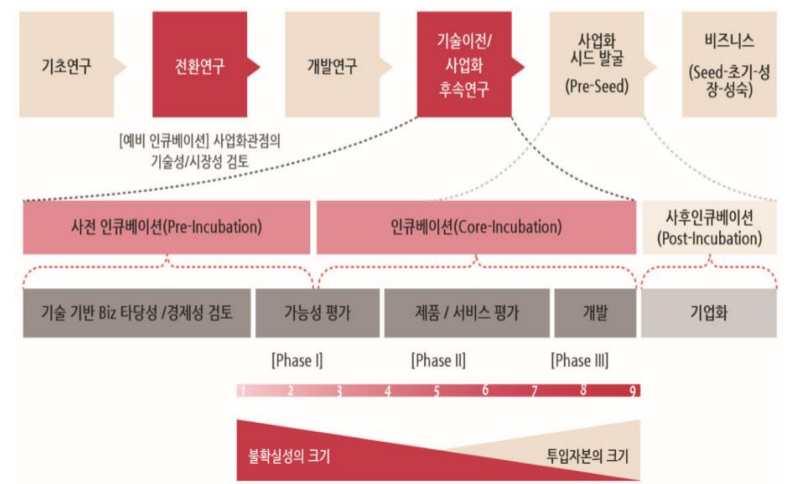
<기술인큐베이션 집중 단계 - TRL 기준>



기술인큐베이션의 단계 및 범위

- 실제 제품 및 서비스로 출시하기 위한 시제품 제작, 검토, 수정 등의 과정이 반복되는 활동이 인큐베이션의 핵심 활동

<기술인큐베이션 단계 및 범위>



-출처: 포스코경영연구원(2016); 딜로이트(2015)

다. 기술평가

기술평가는 기술사업화와 기술거래의 전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기술평가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항목	내용
기술평가 종류	기업기술력 평가, 기술사업성 평가, 기술가치평가, 기술영향평가, 기술력 등급평가, R&D 경제성 평가
기술평가 대상	기술, 지식재산
기술평가 목적	이전·거래, 현물출자, 금융, 전략, 세무, 소송, 청산 등
기술평가 방법	수익접근법, 시장접근법, 원가접근법, 로열티공제법
기술평가 일반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사항의 특정 - 평가 계약 - 평가계획 수립 2. 대상기술의 확인 - 자료수집 및 정리 - 현장실사 3. 평가요인 분석 - 중간보고 - 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4. 평가결과의 결정 및 표시 - 사후관리

	방법	절차
가치평가 방법 및 절차	수익접근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비평가 - 사업타당성 평가 2. 분야별 분석(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3. 변수 추정 (경제적 수명, 매출, 재무 비율, 할인율) 4. 현금흐름 추정-사업가치 추정-기술가치 추정
	시장접근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일 또는 유사기술 등 비교 가능한 기술거래사례 조사 2. 공정한 거래에 의한 실제 기술거래 여부 확인 및 신뢰성 검증 3. 비교 대상 분석항목, 비교분석방법 적용 4. 비교 대상기술과 평가 대상기술의 거래 조건 비교 5. 기술가치 추정
	원가접근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가 분석(역사적 원가, 재생산원가, 대체원가) 2. 감가상각 반영(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3. 기술가치 추정
	로열티공제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의 경제적 가치 보유 여부 분석 2. 대상기술과 유사한 기술거래 사례(계약) 조사 3. 업계현황, 관련 시장의 현황, 향후 시장의 전망 등 평가 4. 기술의 경제적 내용연수, 매출, 로열티율 등 추정 5. 할인율 추정 및 최종 기술가치금액 산정
재무제표 종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제조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	
재무비율	유동성 비율, 자산관리 비율, 부채관리 비율, 수익성 비율, 시장가치 비율	

라. 기술거래

- 기술거래 대가는 통상적으로 기술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기술수요자는 기술공급자에게 기술사용에 대한 대가로 **기술료를 지불**
- 기술료는 지불하는 시기와 방법 등에 따라 선급기술료, 경상기술료, 고정기술료, 최저기술료, 최대기술료 등으로 분류

검토항목		주요내용
기술료 지불방식	선급기술료 (Initial Payment)	계약 기간 중에 발생이 예상되는 기술료에 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 발효와 동시에 또는 계약에서 정하는 지불기간의 초기에 지불하는 것
	경상기술료 (Running Royalty)	라이선싱 대상기술이 판매와 직결된 경우에 정해진 산정기준에 의하여 매출액 또는 순이익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것
	고정기술료 (Fixed Royalty)	계약기술이 판매와 직결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계약제품의 판매액 등에 관계없이 기술에 대한 대가를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것
	최저기술료 (Minimum Royalty)	계약기간의 전 기간(全 其間) 또는 소정의 기간에 대하여 지불되어야 할 기술료의 최저금액을 정하는 것
	최대기술료 (Maximum Royalty)	기술료의 최고상한액을 설정하여 아무리 많은 양의 계약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도 실제로 발생하는 매출과 관련 없이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지불하는 방식

라. 기술거래

기술도입방식과 특징

- 회사가 필요한 기술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도입을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기술도입방식	내용	특징 및 장단점
라이선싱	기술 및 산업재산권의 실시(사용)권 획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기간 중 사용권만 허락 - 기술제휴의 일반적 방식, 보편적 사용추세 - 기술양수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 -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고 리스크가 적음
기술양수도	기술의 매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이전 - 대가가 높은 편임 - 절차는 간단하나 리스크 요인이 큼
합작투자	기술, 자본, 경영 등의 포괄적 협력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필요경영자원의 일괄 도입 - 대규모의 비용수반 및 절차 복잡 - 비교적 대규모사업에 적합 - 기존의 사업기반이 없어도 가능
M&A	기술자산의 인수 및 합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한 기술자산 전부를 한꺼번에 획득 - 수면주기가 짧은 하이테크 산업분야에 유리 - 대규모의 비용소요 - 절차가 복잡하고 리스크 상존
해외기술도입	해외에서 개발/획득한 기술을 들여오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현지에서 R&D수행 - 해외진출에 유리 - 대규모의 비용소요 및 절차 복잡 - 비교적 대규모사업에 적합
기술자 초청 및 고용	사람에 의한 기술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 기술문제 해결에 유리 - 기술자의 능력과 의지가 관건

라. 기술거래

기술거래 절차



기술공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판매 필요성 분석 · 판매기술의 우선순위 · 이전의 상대방 · 기술의 가치,요구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인터넷 · 기술전시회,설명회 · 비밀유지 · 기술장점부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도입자의 권리능력/행위능력 · 기술관련자료의 제공 · 기술권리이전 서류 교부 · 기술료 관리 · 매출액 확인
기술도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도입 필요성 분석 · 도입기술의 우선순위 · 경쟁력 있는 기술은? · 기술도입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보유자 탐색 · 기술의 산업재산권 여부 · 즉시 상품화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공급자의 권리능력/행위능력 · 기술료 지급 · 기타 조건 이행 · 기타 보고사항 의무이행

라. 기술거래

- 기술거래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중개·알선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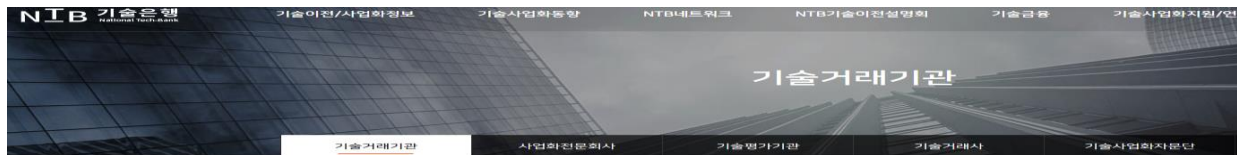
제10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취소 및 지원)

-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거래를 위한 전담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를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이하 "기술거래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 수요 조사, 분석 및 평가
 2.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3.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4.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공공 기술이전 전담조직: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에 설치된 기술이전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조직

제11조(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연구기관에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이하 "국립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국가기술은행(<https://www.ntb.kr/>):정부의 연구개발(R&D) 성과물과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을 등록하고 관리해 기술이전과 거래를 중개·촉진하는 플랫폼



<https://www.ntb.kr/tba/selectTechApprOrganList.do>

라. 기술거래

〈법령에서의 기술거래사 업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기술거래사의 등록·육성 및 지원)

①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은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 업무 및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제2조(용어의 정의)

3. "기술거래사"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해 다음 각 목의 전문적인 업무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상담·자문·지도업무

나. 기술이전의 중개·알선업무

다. 기술의 조사·분석업무

라. 공급기술 및 기술수요 탐색·발굴업무

마. 기술시장의 조사·분석업무

바. 위 각호의 사후관리 업무

사.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와 이에 따른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증명 및 대행(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행위를 포함)등의 제반업무 지원

〈기술거래사 등록현황〉

연도	2006~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누계
등록(명)	1,491	665	390	406	-	353	458	439	347	454	333	360	416	6,112

(<https://www.ntb.kr/tba/selectTechTradeInfoView.do>)

라. 기술거래

〈기술거래사의 자격기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기술거래사의 자격 등)

제21조(기술거래사의 자격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거래의 경력 및 자격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기술이전·사업화 분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일 것
3.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4.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정책·기획·평가 또는 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을 것
5. 기술거래기관 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연구원 또는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기술거래 또는 기술평가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6. 해외 또는 민간 분야에서의 기술거래 관련 경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할 것

〈기술거래사 등록 절차〉



(<https://www.ntb.kr/tba/selectTechTradeInfoView.do>)

Ⅱ. 창업기업의 설립절차

1. 법인설립
2. 사업자등록
3.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4.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한 법인설립
5. 사업의 인허가

가. 기업과 기업형태

1)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 기업이란 인적, 물적 자원 결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 기업은 설립주체(또는 소유형태)에 따라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개인기업은 자연인인 개인이 기업의 소유주가 되고 기업활동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는 형태이다. 개인기업은 설립이 용이하고 기업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대규모의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확장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 법인기업은 자연인인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인격을 부여 받아 기업활동의 주체가 되는 조직형태이다. 개인기업에 비해 설립이 복잡하지만 기업에 참여하는 사람 수에 따라 대규모의 자금을 모아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법인기업은 기업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책임범위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로 구분될 수 있다.
 - 이중 합명회사, 합자회사는 기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참여인원이 제한될 수 있고 대규모의 자금을 모으기도 쉽지 않다.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기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책임은 가볍지만 참여인원의 제한과 의사결정구조가 엄격하여 사업의 확장에는 제약이 있다. 주식회사는 기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책임이 가볍고 참여 인원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자금을 모으는 데에 유리하여 오늘날 대부분의 법인기업은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2)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비중

·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0년 기준 총사업자는 약865만에 이르고, 이 중 법인사업자는 약100만 정도이며 나머지는 개인사업자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사업자 현황

	총사업자			법인사업자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			단위:천명
	총계	신규	폐업	총계	신규	폐업	총계	신규	폐업	총계	신규	폐업	총계	신규	폐업	
2015	6,702	1,191	790	798	122	50	3,517	609	433	1,699	329	233	687	129	71	
2016	6,886	1,226	909	835	125	69	3,698	644	504	1,630	324	252	721	131	82	
2017	7,226	1,285	908	884	125	70	3,945	691	501	1,610	316	254	787	152	82	
2018	7,674	1,373	901	939	130	70	4,176	683	507	1,616	314	237	943	246	87	
2019	8,046	1,316	922	1,003	138	70	4,366	661	526	1,632	329	242	1,045	189	84	
2020	8,651	1,519	895	1,086	153	67	4,608	687	490	1,712	369	232	1,244	309	105	

출처: 국세청 (내부자료)

주석:

* 확정 통계수치

* 2006년 이후부터는 연도말 가동사업자 기준이며 2005년 이전은 각 연도 부가가치세 2기 확정 신고한 사업자 수임

* 신규 및 폐업은 과세기간 중에 신규 등록 또는 폐업한 사업자 수임

* 지점법인을 포함한 법인수 임

2021.12.30 e-나라지표 확인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25)

3) 법인기업의 유형별 비중

2020년도 기준 법인세 신고 법인수는 총 838,008개이며, 유형별로는 주식회사가 796,582개로 약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한회사가 37,434개로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 합자회사와 합명회사는 합하여 약 0.5%로 아주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구분	법인세 신고법인 수	비율
법인종류별	838,008	100%
주식회사	796,582	95.1%
유한회사	37,434	4.5%
합자회사	3,080	0.4%
합명회사	912	0.1%

자료 : 2021 국세통계연보 [TASIS 국세통계포털 \(nts.go.kr\)](https://nts.go.kr) 2021.12.30 검색

4) 주권상장법인, 영리법인, 중소기업법인의 비중

2020년 기준 법인기업 중 거래소 주권상장법인은 820개, 코스닥 상장법인은 1,386개이며, 나머지 835,802개(99.74%)는 비상장 법인이다. 또한 법인기업 중 800,925개(95.57%)는 영리목적 법인이며, 나머지 37,083개는 비영리법인이다. 한편, 기업의 규모에 따라 법인기업을 구분하면, 일반법인이 75,694개(9.03%)이며 나머지 762,314개(90.97%)는 중소기업법인으로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장 · 비상장별	838,008	
주권상장법인	820	0.10%
코스닥상장법인	1,386	0.17%
비상장 법인	835,802	99.74%
영리 · 비영리별	838,008	
영리법인	800,925	95.57%
비영리법인	37,083	4.43%
법인규모별	838,008	
일반법인	75,694	9.03%
중소기업법인	762,314	90.97%

자료 : 2021 국세통계연보 [TASIS 국세통계포털 \(nts.go.kr\)](https://www.nts.go.kr) 2021.12.30 검색

5) 주식회사의 특징

- 주식회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기 때문에 오늘날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기업형태가 되고 있다.
- 유한책임: 기업의 소유자인 주주가 투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여 책임이 무겁지 않다.
- 소액단위: 1주의 금액 100원 이상으로, 소액자본가도 참여하기가 쉽고, 참여자가 많아지면 거액의 자본을 모을 수 있다.
- 의결권행사: 주식수에 비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 자신이 투자한 금액 만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
- 양도가능: 보유 중에 주주의 권한을 언제나 자유롭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특히,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경우에는 훨씬 쉽게 주식매매를 통해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 전문경영인 활용 : 많은 소액의 주주들은 기업경영에 전문성을 갖지 않아도 경영의 전문가를 유치하여 기업경영을 맡길 수 있다. 이를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고 한다.

나.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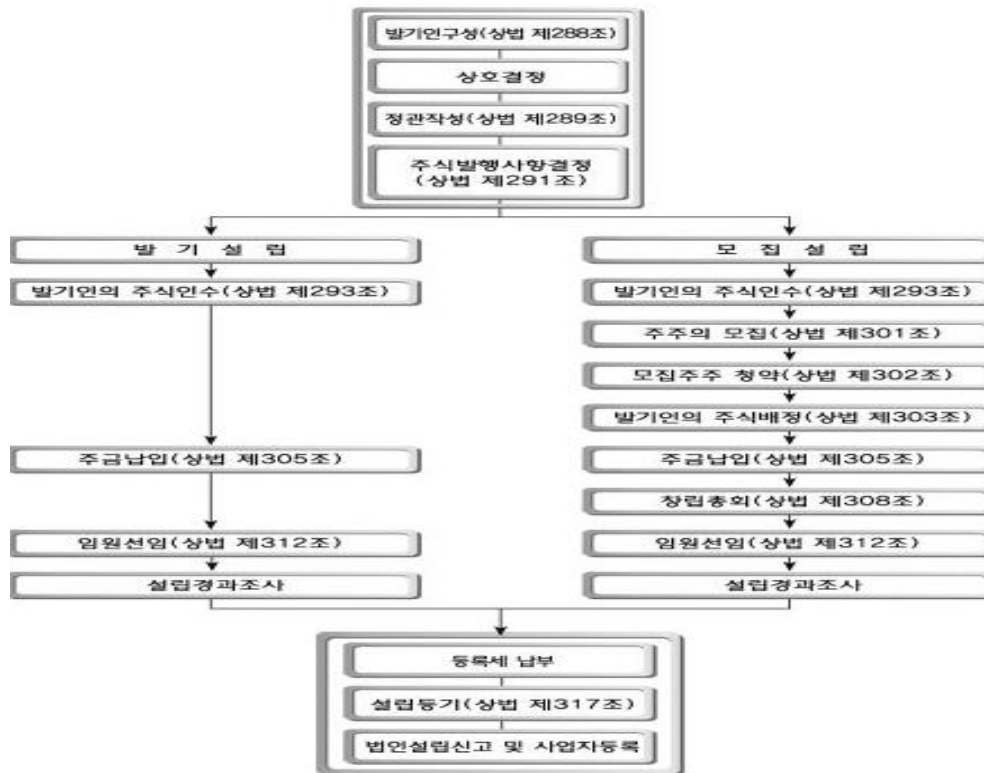
- 개인기업의 설립은 국세청 사업자 등록(인허가 여부 확인과 함께)을 마치면 되기 때문에 법인형태의 기업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또한 법인 형태의 대표적인 유형이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설립절차를 설명한다.

1) 설립전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세부내용
법인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형태를 취할 수 있음. · 대부분 법인 기업은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음.
목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주된 사업내용을 우선하여 작성하되 향후 요구되는 연관사업 범위까지 검토하여 정관에 포함여부를 결정
인허가 여부(등록 및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업종에서 특별한 규제나 제한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 일부업종은 사업개시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쳐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
자본금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자본금 제한 없음(이론상 100원 이상이면 가능) · 제한업종: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1억 원) △국제물류창고업(3억 원)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5천만 원) 등
발기인 및 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기인: 회사의 설립을 위해서는 이를 기획하고 필요한 사무를 집행하는 자 · 이사의 인원 수 : 제383조 ①항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 감사의 인원 수 : 제409조 ④항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호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상호를 검색해 보고 관할 등기소 등기관에게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 받는 절차가 필요
본점소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소재지의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2) 주식회사 설립절차

- 주식회사의 설립은 아래 그림과 같이 ① 발기인을 구성, ② 회사상호와 사업목적을 결정, ③ 정관을 작성, ④ 주식발행사항 결정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 이행 ⑥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의 절차를 통해 완료



〈출처: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주식회사 설립절차」, 2면 참조〉

가) 발기인 구성

- 주체: 법인 또는 자연인(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 동의 시 가능)
- 조건: 최소 1인 이상, 발기인은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
- 방식: 발기설립, 모집설립
 - (발기설립) 발기인이 모든 주식 인수.
 - (모집설립) 발기인이 일부 인수하고 나머지(1주 이상)는 주식청약(연고모집,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

나) 설립목적 및 상호결정

- 설립목적 : 회사의 존재이유(또는 수행하려는 사업)에 관한 것으로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할 때 정한다([「상법」 제289조제1항제1호](#)).
- 상호결정 : 주식회사의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의 상호에는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상법」 제18조](#) 및 [제19조](#) 참조).

※ 상호 결정시 유의사항

- 상호를 결정할 때 동일한 영업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하며,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에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한다([「상법」 제21조](#)).
-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誤認)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상법」 제23조제1항](#)).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상법」 제28조](#)).
-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은 부정경쟁행위로 본다. 이러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며,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제4조](#) 그리고 [제5조](#) 및 [제18조제3항제1호](#)).

다) 정관 작성

○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기재한 것이며,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절대적 기재사항(8가지)

1. 목적: 구체적으로, 제조업, 서비스업은 안됨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총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100원 이상
5.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6. 본점의 소재지 : 최소행정구역만 표기하는 것이 나중 주소지 변경에 정관을 변경하는 번거로움이 없음.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관보 또는 일간신문
8.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상대적 기재사항(변태설립사항, 기타 상대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

- 상대적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은 주식회사의 본질, 법의 강행규정,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운영에 대한 사항(예: 이사·감사의 수, 총회의 소집시기, 영업연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등을 임의로 정관에 기재한 것이며 정관기재로 효력이 발생함.

○ 상대적 기재사항(변태설립사항)

- 주식회사 설립 당시에 발기인에 의해 남용되어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발생([「상법」 제290조](#)).
-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 상대적 기재사항(기타상대적 기재사항)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상법」 제340조의2](#)제1항),
- 종류주식발행([「상법」 제344조](#)제2항),
- 전환주식의 발행([「상법」 제346조](#)제1항),
- 서면투표의 채택([「상법」 제368조의3](#)제1항),
- 감사위원회 등 이사회 내부위원회의 설치([「상법」 제393조의2](#) 및 [제415조의2](#)),
- 이사임기의 총회종결까지의 연장([「상법」 제383조](#)제3항),
-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상법」 제389조](#)제1항 단서),
- 이사회 소집기간의 단축([「상법」 제390조](#)제3항 단서) 등

○ 정관의 공증:

-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 발생([「상법」 제292조](#) 본문). 단,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을 필요 없이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 발생([「상법」 제292조](#) 단서).

라) 주식발행 사항의 결정

다음의 사항에 대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결정(「상법」 제289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291조).

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마) 발기설립 : 주식인수 및 출자이행, 임원선임 및 설립경과조사

바) 모집설립 : 발기인주식인수, 주주모집 및 주식인수청약, 출자이행, 창립총회소집 및 임원선임, 설립경과조사

사) 등록면허세 납부: 자본금 X 0.4%(2,800만원 이내 동일) / 창업중소기업 중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면제

1.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
2. 창업 중에 벤처기업을 확인 받은 경우 확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법인설립등기
3. 창업 후 4년 이내 자본금증자를 위한 등기와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변경 등기

아) 법인설립등기

- 1) 등기시점: 설립경과 조사 종료일 또는 창립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 신청 완료
- 2) 신청장소 및 신청자
- 3) 등기신청 시 첨부서류
- 4) 등기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www.iros.go.kr)에 접속)



열람하기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 등가식:

* 법인구분:

* 등기부상태:
 * 본지검구분:

* 일련번호:

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
- 2)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성립

가. 사업자 등록 개요

- 개인기업이나 법인기업 모두 신규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업종 등을 등록하는 것을 의미함.
-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의무는 없지만,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사업자가 등록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를 거쳐 직접 등록시킬 수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음.
 -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 가산세 부과(「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함)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

나. 개인사업자 등록

○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 ① 인·허가 및 신고 업종 여부 검토
- ② 시군구 등 관련기관에 인·허가 및 신고 이행
 -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제출
- ③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신고인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1~5는 공통)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 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이상 국외체류시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 기타 유의사항

① 다음의 사유는 붙임 서류를 추가로 작성

-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명세서
- 종업원을 1명 이상 고용한 경우 종업원 현황
-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 받으려는 경우 서류를 송달 받을 장소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사업장 명세서

②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③ 2인 이상의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

다. 법인사업자 등록

-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는 법인설립 등기를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

○ 법인사업자 등록절차

- ① 법인설립 등기 완료
- ② 인·허가 및 신고업종 여부 검토
- ③ 시군구 등 관련기관에 인·허가 및 신고 이행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제출

- ④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신고인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제출서류(영리법인 본점 기준)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4.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5.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6.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7.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한 경우)

(참고) 4대 사회보험 가입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 4대 사회보험은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신고기한	사업장 가입자 취득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사업장에 해당되는 날부터 14일 이내,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날부터 14일 이내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제8조)	자격 취득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조)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상한선	소득기준 524만원 (2021년)	납부액 기준 332만원	상한선 없음	상한선 없음
보험료 부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2씩 부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2씩 부담	실업급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50%씩 부담, 기타사업은 사업주가 전액부담	사업주가 전액부담
납부방법	월납	월납	월납 (정상분에 한해 분할납부 가능)	월납 (정상분에 한해 분할납부 가능)
납부마감일	다음달 10일 (신고마감일은 15일)	다음달 10일 (신고마감일은 15일)	다음달 10일 (신고마감일은 15일)	다음달 10일 (신고마감일은 15일)
납부의무자	사용자	사용자	사업주	사업주

가. 법인전환의 의의와 장점

1) 의의

- “법인전환”은 개인기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의 조직형태를 법인사업자의 조직형태(대부분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조직 형태)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2) 법인전환의 장점

-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기업의 대외 신용도를 높일 수 있어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사업규모를 확장하기 쉽다.
-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로 인해 법인사업자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개인사업자보다 세(稅) 부담이 적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이지만,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42%이므로 기업규모가 크고 이익을 많이 창출할 경우에 법인이 부담하는 세율이 훨씬 적을 수 있다.
-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창업자의 책임이 훨씬 경감될 수 있다.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할 경우에 그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져야 하지만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기업은 창업자가 투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유한책임을 부담한다.

나. 법인전환 방법

1)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 개인이 경영하던 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기업에 현물출자를 하여 법인기업을 설립

2) 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3) 법인전환 방법 선택 시 고려할 사항

- ①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의 가능성 ② 법인전환을 통한 경제적인 이익 및 효과
- ③ 법인전환 절차상의 복잡성 ④ 법인설립 자금의 크기와 준비 여부 ⑤ 보유자산과 부채의 유형 및 규모

다. 법인전환의 요건

-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 순자산가액이란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총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라.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의 감면 및 승계(포괄적 사업양수도 시)

- ①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의 적용
- ② 취득세의 면제
- ③ 법인전환으로 인한 감면의 승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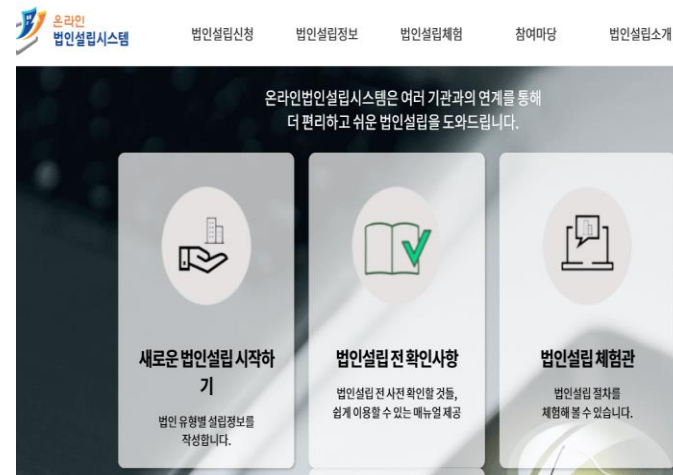
4.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한 법인설립

-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법인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발기설립),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설립 희망자

<http://g4b.go.kr> 에서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를 등록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



- (준비물) 개인공인인증서, 법인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확인, 법인등록면허세 감면 신청서류, 스캐너(인감작업 업로드), 자본금 통장

https://www.startbiz.go.kr/contents/intr/startBizAtpn.do

설립 유의사항

홈 > 법인설립정보 > 설립 유의사항

회사의 상호 짓기	잔액(고)증명서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의 임원
회사의 목적 결정	주금납입보관증명	등록면허세의 증과세 및 감면
정관, 의사록 인증 및 그 예외	주식청약서를 부실기재한 발기인의 벌칙	법인설립 등기
수인의 대표이사와 공동대표제도	주식 인수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및 확정일자
이사, 감사의 조사보고	주식 인수금을 가장(假裝)으로 납입한 경우	4대사회보험 신고
변태설립 사항	발기인의 주식배정통지	

설립사항

홈 > 법인설립정보 > 설립사항

법인유형별 설립 개요 및 절차, 설립 준비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설립 개요 및 절차, 설립 준비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창이 새창으로 확인됩니다.)

주식회사
설립사항

유한회사

유한회사의 설립 개요 및 절차, 설립 준비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창이 새창으로 확인됩니다.)

유한회사
설립사항

유한책임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개요 및 절차, 설립 준비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창이 새창으로 확인됩니다.)

유한책임회사
설립사항

합명회사

합명회사의 설립 개요 및 절차, 설립 준비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창이 새창으로 확인됩니다.)

합명회사
설립사항

합자회사

합자회사의 설립 개요 및 절차, 설립 준비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창이 새창으로 확인됩니다.)

합자회사
설립사항

5. 사업의 인허가

- 허가업종: 일반적으로는 영업을 금지하고 특정한 경우에 한해 그 금지를 해제하여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 등록업종: 영업과 관련된 일정한 사실이 기재된 등록신청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게 하여 해당 기관에 비치된 등록대장에 등재되도록 하는 것
- 신고업종: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관할 관청에 통지하는 것. 신고서 접수되면 의무 이행

※ 인허가 사업 확인방법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의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증신청(법인)>에 들어간 다음 업종 선택에서 업종입력/수정을 클릭한 후 업종코드에서 해당 업종을 찾아 검색

Ⅲ. 기술창업 운영관리

1. 재무제표의 이해
2. 재무제표의 활용
3. 회계정보를 활용한 전략적 의사결정
4. 기술창업 세무관리
5. 기술창업 노무관리

가. 왜 창업자는 회계를 알아야 하는가?

- 기술창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창업자나 창업의 조력자인 매니저는 최소한 재무제표의 이해와 기초적인 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창업자에 대한 회계교육이나 멘토링(컨설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기술창업이 실패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창업의 성공요인으로 기술, 자금, 영업의 3가지를 들고 있다. 이러한 3가지 성공요인의 기반이 되는 것이 회계라 할 수 있다.
- 회계는 기업의 언어(Business Language)이기 때문에 기술, 자금, 영업이 결합하여 성공적인 창업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의 언어인 회계를 알아야 한다.

가. 왜 창업자는 회계를 알아야 하는가?

- 회계를 모르면 언어소통을 할 수 없어서 결국 실패의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입되었고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해당 기술에 대해 제값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해당 기술로 창업을 하여도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이 클 수 밖에 없다.
- 영업에서 제품의 원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가격책정이나 협상을 제대로 할 수 없다.
- 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주주, 벤처캐피탈)나 금융기관을 설득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기업의 과거나 추정 미래 실적에 관한 회계자료이다. 회계자료를 통해 자금의 공급자와 소통할 수 없으면 투자를 받지 못하거나 비싼 자금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가. 왜 창업자는 회계를 알아야 하는가?

- 대표적인 기업의 회계정보가 재무제표이다. 재무제표는 희소한 자원을 소비하는 기업의 모든 활동을 일기장 처럼 정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개인의 일기장과는 달리 기업의 경영자(관리자)는 물론 외부의 이해 관계자와도 소통할 수 있도록 정리한 가장 효율적이고 함축적인 정보전달수단이라 할 수 있다.
- 거울 앞에 서면 자신의 모습이 비추어 지듯이 재무제표를 보면 기업의 얼굴(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기업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자나 기타의 이해관계자는 재무제표를 보고 기업의 재무상황(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왜 창업자는 회계를 알아야 하는가?

- 창업기업의 경우에 기업의 미래 모습을 즉 미래의 재무제표를 만들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이 곧 재무계획(financial projection)이다.
- 재무계획은 창업기업이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그러한 계획을 투자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전망 등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자료가 된다.
- 이러한 재무계획의 작성도 곧 회계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이는 어려운 작업이다. 그리고 기업의 전략적 경영의사결정,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경쟁기업의 분석 등에도 재무제표와 원가정보 등 회계정보 없이는 수행될 수 없다.

나. 회계란 무엇인가?

- 개인기업이나 법인기업이나 어떤 형태로든 기업을 창업하면 사업계획에 맞추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목적에 맞는 설비투자 등을 통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또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
-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거나 자금의 공급자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활동을 **재무활동**이라 한다. 기업이 확보된 자금을 통하여 필요한 토지나 설비 등을 취득하거나 불필요한 설비 등을 매각하는 활동을 **투자활동**이라 한다. 기업이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돈을 버는 활동을 **영업활동**이라 한다.
- 기업은 끊임없이 재무, 투자, 영업활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의 경영자는 매일 설 새없이 의사결정을 한다. 또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이해관계자(벤처캐피탈, 창업자를 포함한 주주, 금융기관, 기타 채권자)는 기업활동 결과를 확인하거나 기업의 미래 전망을 예측하여 자금의 공급 여부를 결정한다.
- 회계는 기업활동의 결과를 정리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 기업 이해관계자와 관심사

- 가장 일반적인 창업기업의 형태는 주식회사라 할 수 있다.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에서 핵심적인 이해관계자는 투자자, 채권자, 경영자라 할 수 있다.
- 주식회사의 투자자는 주주를 의미한다. 주주는 주식회사의 소유주이며 자금의 공급자이다. 주식회사는 주주가 투자한 자금의 범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다수의 소액주주들이 존재할 수 있다. 기술창업의 경우에 창업자가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직접 회사를 대표하여 경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영에 전문성이 없고 주식을 많이 소유하지 않은 다수의 주주들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가 영업을 잘하여 이익을 많이 내고 이익을 배당으로 받거나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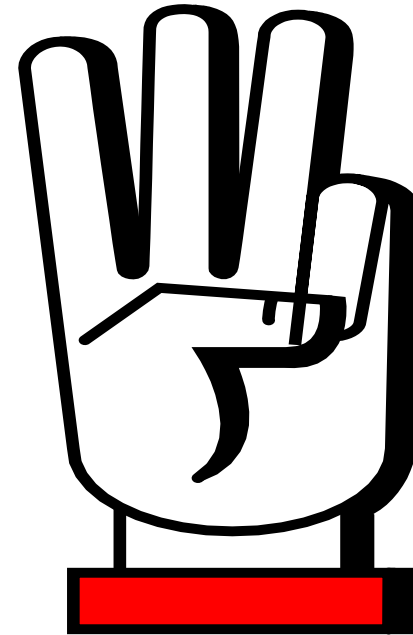
다. 기업 이해관계자와 관심사

- 주식회사의 채권자는 금융기관과 같이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와 원금을 돌려 받는 집단이다. 주식회사는 채권(회사채)을 발행하여 여러 소액자본가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이 경우에 주식회사는 다수의 채권자를 이해관계자로 두게 된다. 채권자들의 제1의 관심사는 자신이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제때에 받는 것이다.
- 주식회사의 경영자는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 들 중에 한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주주를 대신하여 회사를 책임지고 경영해줄 사람을 뽑아서 쓸 수도 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인적 물적 자원을 잘 활용하여 기업의 주주는 물론이고 채권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회사를 운영하여야 한다.

라. 기업의 세가지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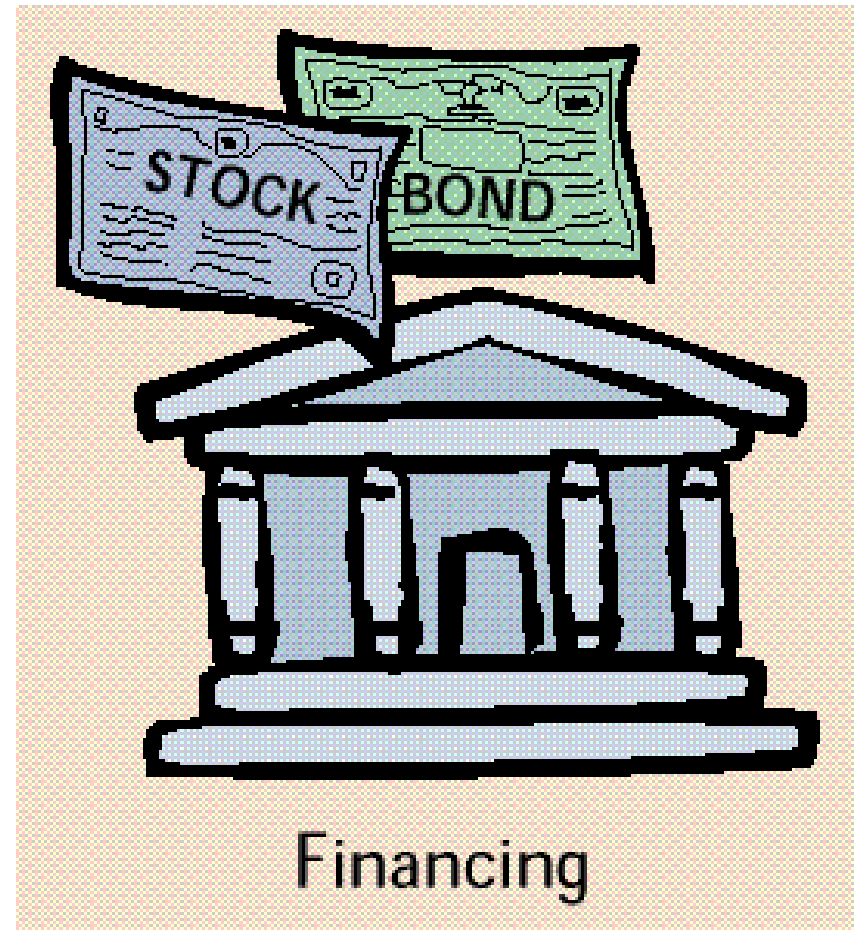
- 어떤 기업이라도 다음과 같은 3가지 기업활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재무(Financing)활동
투자 (Investing) 활동
영업(Operating)활동



○ 재무활동은 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하거나 상환하는 활동

- 기업은 사업의 기획에 의하여 필요한 자금의 수요를 판단하고 자금을 조달함. 자금을 조달하는 2가지 수단
- 금융기관 차입 또는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타인자본)
- 기업의 주인인 주주에게 주식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자기자본)
- 차입이나 회사채에 의한 자금조달은 차후에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함.
- 주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대하여는 상환의무는 없지만, 배당을 지급하게 됨.



· 투자활동은 기업이 영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불필요한 자산을 처분하는 활동

- 기업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공장, 건물, 설비 등의 취득을 통해 그 기반을 구축하여야 함
- 또한, 기업은 노후화되거나 유휴 중인 시설, 장비 등을 처분하기도 함
- 한편, 기업은 유휴자금 활용의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금융상품에 투자하기도 하고, 건물의 일부를 임대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기도 하고, 처분하기도 함. 이러한 활동도 투자활동이라 할 수 있음.



· 영업활동은 기업이 목표한 사업을 통해 돈을 버는 것과 관련된 주된 경제활동

- 상품매매기업의 영업활동은 제품의 구매, 보유, 판매, 대금회수의 반복으로 이루어짐.
- 제조기업의 영업활동은 원재료의 구매, 생산, 제품보관, 판매, 대금회수의 반복과정으로 이루어짐.
- 기업의 영업활동에는 건물임차료 지급, 전력사용료 지불, 급여지급, 광고비 지출 등 판매와 관리활동이 포함됨.



마. 기업활동과 재무제표

- 회계란 기업활동(재무, 투자, 영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업에 관한 경제적 판단과 의사결정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보유자원 및 빚, 이익, 자금조달 및 사용)를 제공하는 과정이며, 회계정보의 전달핵심수단이 재무제표이다.
-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 재무상태표(Balance Sheet) – 특정일(기간말)의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 보고서
- 포괄손익계산서(Comprehensive Income Statement) – 일정기간 기업의 포괄적 재무성과보고서
- 현금흐름표(Statement of Cash Flows) – 일정기간 동안의 현금수입과 지출 내역 보고서
- 자본변동표(Statement of changes in Equity) – 일정기간 주주지분의 변동보고서
- 주석(foot notes) : 각 재무제표의 과목과 수치와 관련된 보충설명

1) 재무상태표

- 의미: 회계연도 말 기업의 재무상태를 알려주는 보고서
- 유용성: 기업의 유동성(단기부채 지불능력), 장기지급능력, 재무위험 평가
- 영문명칭: Balance Sheet,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 구조: 보고서명칭, 회사명, 작성기준일, 화폐단위, 본문(자산, 부채, 자본 그 세부항목), 직전연도와 비교표시, 필요한 경우 주석을 달아 설명
- 자산과 그 원천(부채+자본)을 대비: 좌우대칭(계정식), 상하로 나열(보고서식)
- 구성요소: 자산(유동/비유동), 부채(유동/비유동), 자본(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유동/비유동 기준: 1년(영업주기)
- 구성요소의 배열순서: 유동성 높은 것부터 또는 낮은 것부터

재무상태표(보고식)

ABC(주)

20X1년 1월 1일 현재

(단위 : 억원)

과 목	금 액
자산	
유동자산	
현금	30
단기대여금	270
비유동자산	
토지	200
설비자산	270
매도가능금융자산	130
자산총계	1,000
부채	
차입금	300
부채총계	
자본	
자본금	700
자본총계	
부채와자본총계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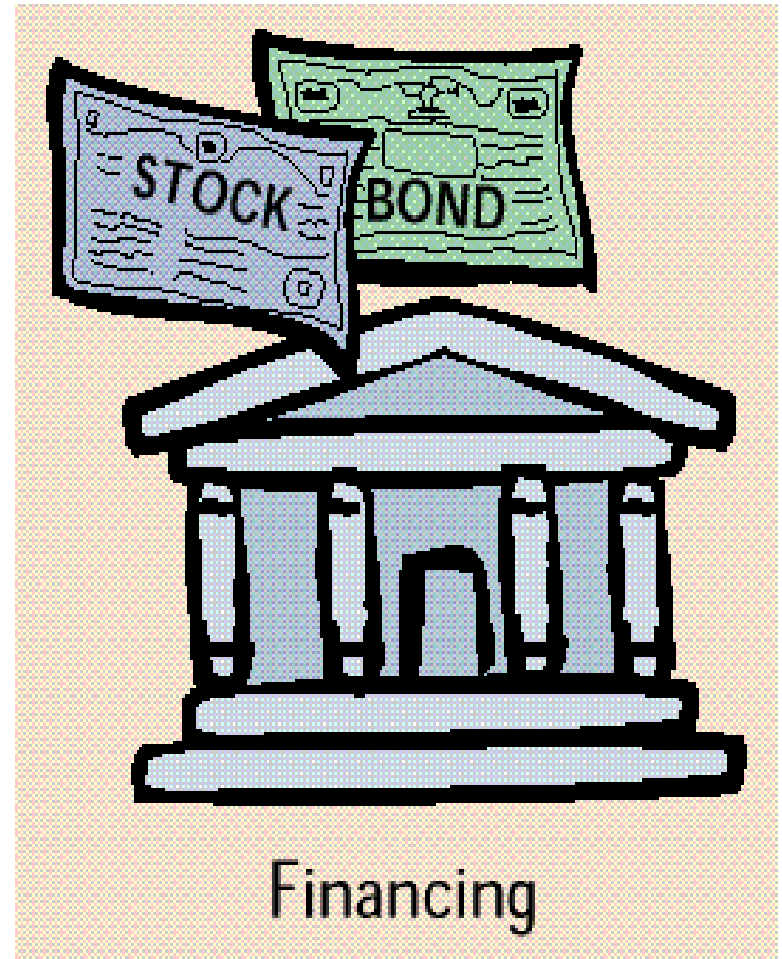
자산(Assets) 이란?

- 기업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경제적 자원
- 돈을 버는 데 도움이 되는 잠재력을 갖춘
- 건물, 토지, 기계, 비품, 차량, 특허권, 사용권, 매출채권, 제품, 원재료, 현금



부채(Liabilities) 란?

- 기업이 일을 해주거나, 제품을 전달해주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주거나, 금전으로 갚아야 할 경제적 의무(빚)
- 기업의 자산 중 채권자의 몫
- 차입금, 사채, 매입채무, 미지급비용, 선수금, 판매보증채무 등



자본(Stockholders' equity)이란?

- 기업소유주(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가 회사에 납입하거나 회사 설립이 후 돈을 벌어서 쌓인 돈(소유주의 몫)
-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잔여지분)
- 자본금(주주가 납입한 돈)+이익잉여금(벌어서 모은 돈) +기타



회계등식(방정식) (Accounting Equation)

- 기업이 보유한 자산은 기업을 소유자인 주주가 내거나 벌어서 모은 돈 아니면 남(채권자)에게 빌려서 마련한 돈으로 만들어 진다. 이러한 사실은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회계등식 : 자산 = 부채 + 자본

- 자산이 부채와 자본의 합계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의 관계와 같으며, 이를 회계등식 또는 회계의 기본 방정식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한 가계의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인 아파트를 생각해보면, 아파트 취득금액은 개인이 벌어서 모은 돈과 은행 융자를 합하여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일 5억원에 아파트를 취득하고 개인이 모은 돈 3억원과 은행 융자금 2억원을 합하여 마련한 돈으로 대금을 지불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회계등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개인의 자산(아파트) = 대출금 + 모은 돈
- 취득한 아파트 5억원 = 대출금 2억원 + 저축해서 모은 돈 3억원

- 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기업의 출발시점에서 5억원의 사업 밀천자금이 필요하다고 할 때, 기업의 소유자인 주주가 우선 자기돈을 3억원 회사에 투입하고 나머지 2억원을 금융권에서 차입하여 조성할 수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은 회계등식으로 표현해볼 수 있을 것이

- 기업: 사업 밀천(5억원) = 빚(2억원) + 자기 돈(3억원)

2)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 의미: 일정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성과를 알려주는 보고서
- 유용성: 기업의 경영성과평가, 미래현금흐름예측
- 영문명칭: Income Statement, Profit and Loss Statement
- 구조: 보고서명칭, 회사명, 작성대상기간, 화폐단위, 본문(수익,비용,이익 그 세부항목) , 직전연도와 비교표시, 필요한 경우 주석으로 보충설명
- 단일단계식(수익내역-비용내역=이익), 다단계식(활동별 수익, 비용, 이익)
- 구성요소: 수익(영업수익, 영업외수익) ,비용(영업비용-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비용, 법인세비용)
- 수익-비용 대응 : 비용은 돈 벌기 위해 쓴 돈이며 결과적으로 남는 장사를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수익(번돈)을 보고할 때 관련 비용(쓴돈)을 대응시켜 보고해야 함.
- 이익과 기업활동: 매출총이익, 영업이익(영업활동), 영업외손익(투자과 재무활동), 당기순이익

포괄손익계산서

ABC(주)

20X1년 1월 1일부터 20X1년 12월 31일까지

(단위:억원)

과 목	금 액	
매출액		1,150
매출원가		(-)650
매출총이익		500
영업비용		(-)220
급여비용	150	
임차비용	70	
영업이익		280
금융수익		50
이자수익	50	
금융비용		(-)30
이자비용	3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00
법인세비용		(-)90
당기순이익		210
기타포괄손익		20
토지재평가차익	20	
총포괄이익		230
주당이익		3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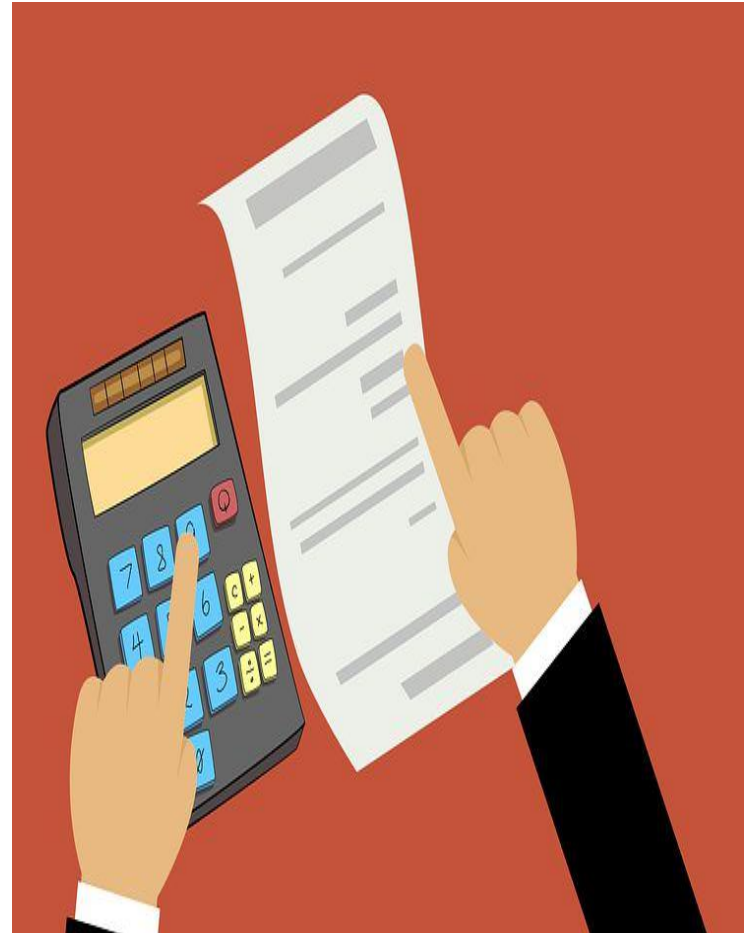
수익(Revenues) 이란?

- 수익이란 제품(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결과로 얻게 되는 자산금액을 말함.
- 제품이나 상품의 판매대가 인 매출수익(매출로 줄여서 씀), 용역을 제공하여 얻는 용역수익
- 기타 예금이나 대출이자 수익, 토지나 설비 등의 매각 이익 등



비용이란(Expenses)?

- 비용이란 수익을 얻는 데 들어간 자산이 나 사용된 서비스의 원가를 말함.
- 매출원가(Cost of sales): 판매한 제품이나 상품의 제조나 구입에 들어간 금액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Selling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인건비(급여나 상여, 퇴직급여 등), 광고비, 전력 및 통신서비스 등 공공요금, 임차비용,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 등
- 이자비용(Interest expense): 금융기관 등 채권자로부터 빌린 차입부채 사용의 대가



당기순이익(Net Income)

- 순이익은 기업이 일정기간 번 돈(revenues: 수익)에서 쓴 돈(expences)을 뺀 나머지(즉, 남은 것)를 의미한다.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 당기순이익(net income), 수익에 비해 비용이 더 크면 당기순손실(net loss)이라 한다. 예를 들어, 일정기간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이 ₩ 10,000이고, 수익을 얻기 위해 ₩ 3,000을 소비하였다면,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다.

■	수익(Revenue)	₩10,000
	비용(Expenses)	<u>3,000</u>
	순이익(Net income)	<u><u>₩ 7,000</u></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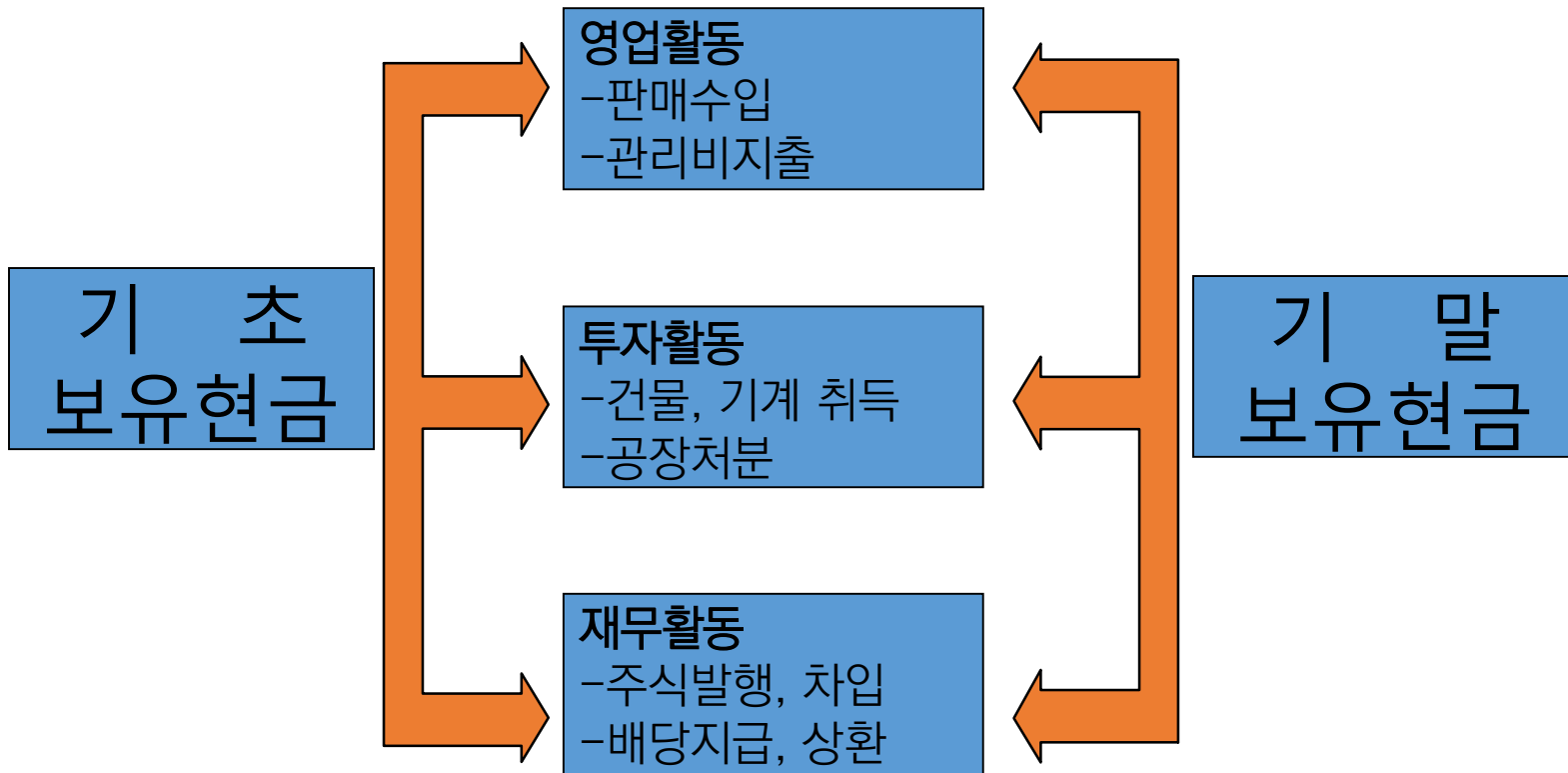
왜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하는가?

-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의 성과를 보여주는 보고서에 앞서 설명한 당기순이익 뿐만 아니라 기타의 손익(예, 처분하진 않았지만 당장 처분하면 이익 또는 손실이 확실시 되는 금액)까지를 포함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서는 포괄손익을 계산하여 보여주기 때문에 포괄손익계산서(comprehensive income statement)라 한다. 포괄손익(손익은 손실일 경우와 이익일 경우를 모두 포함)은 기업활동을 통해 벌은 모든 이익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당기순이익으로 표시하는 금액도 있고, 성격상 차이가 있어서 구분하여 기타에서 벌어들인 이익 즉,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금액이 있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이 1년간 직장생활을 통하여 벌어들인 소득이 1억이고,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시가가 상승하여 예상되는 평가차익이 1억 있다면 개인의 재산가치는 2억원이 늘어난다. 개인이 벌은 모든 이익 2억원이 포괄이익, 직장에서 번 1억원은 당기순이익, 아파트시가 상승으로 예상되는 이익 1억원은 기타포괄이익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 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실현손익) + 기타포괄손익(장기미실현손익: 예, 재평가차익)
- 포괄손익계산서 양식: 단일보고서 방식과 두개의 보고서 방식이 있다. 단일보고서 방식은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하나의 보고서에 표시하여 보여주는 일체형이며, 두개의 보고서 방식은 당기순이익을 보여주는 보고서(손익계산서)와 당기순이익에 기타포괄손익을 합하여 포괄손익을 보여주는 보고서(포괄손익계산서) 두개로 분리하여 제공하는 분리형 방식이다.

3) 현금흐름표

- 의미: 일정기간 동안의 기업의 현금흐름 증감 변동액을 활동별(영업, 투자, 재무)알려주는 보고서
- 유용성: 기업이 전개한 활동의 내용 및 규모(자금조달 및 사용)
- 영문명칭: Statement of Cash Flows
- 구조: 보고서명칭, 회사명, 작성대상기간, 화폐단위, 본문(활동별 현금 유입과 유출 그 세부항목), 주석, 비교표시
- 구성요소: 영업활동현금흐름, 투자활동현금흐름, 재무활동현금흐름
- 작성방법 : 영업활동현금흐름(직접법, 간접법), 투자 및 재무활동현금흐름(직접법)

현금흐름표의 내용이해



현금흐름표(직접법)

ABC(주)

20X1년 1월 1일부터 20X1년 12월 31일까지

(단위:억원)

과 목	금 액	
1. 영업활동 현금흐름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	1,180	
공급자와 종업원에 대한 현금유출액	(-)870	
법인세의 납부	(-)90	
영업활동 순현금흐름		210
2. 투자활동 현금흐름		
이자수취	20	
단기대여금의 대여	(-)270	
금융자산매입	(-)130	
토지의 매입	(-)200	
설비자산매입	(-)370	
3. 재무활동 현금흐름		
단기차입금 차입	700	
보통주 발행	300	
이자지급	(-)30	
배당금 지급	(-)70	
재무활동 순현금		900
4. 현금의 순증가(감소) (1+2+3)		170
5. 기초의 현금		0
기말의 현금		170

4) 자본변동표

- 의미: 회계기간 동안 자본의 구성항목(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의 변동을 알려주는 보고서
- 유용성: 소유주인 주주(창업자 포함)의 입장에서 자신의 몫이 1년 동안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알려줌.
- 영문명칭: Statement of Changes in Capital or Statement of Stockholders' Equity
- 구조: 보고서명칭, 회사명, 작성대상기간, 화폐단위, 본문(자본구성항목별 증가금액과 감소금액 내역), 직전연도와 비교표시, 필요한 경우 주석으로 보충설명
- 구성요소: 주주가 납입한 금액(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주주가 벌어서 모은 금액(이익잉여금)의 변동, 기타의 변동

자본변동표

ABC(주) 20×1년 1월 1일부터 20×1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억원)

과 목	자본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총계
20×1. 1. 1 현재 잔액	0	0	0	0
보통주 발행 유상증자	700			700
총포괄이익		210	20	230
배당금		(-)70		(-)70
20×1. 12. 31 현재 잔액	700	140	20	860

바. 재무제표 작성 사례

- 기업활동의 시작: 자기돈2억과 은행차입1억총 3억 규모의 건강식품사업 밑천을 마련, 1억원에 점포 취득하여 영업을 할 구상
- 재무활동(1월2일): 자기돈 2억과 차입금 1억 확보

개시재무상태표(2007.1.2)

<u>자산</u>		<u>부채와 자본</u>	
현금	3억원	차입금	1억원
		자본금	2억원

바. 재무제표 작성 사례

- 투자활동: 1 억원의 점포 취득
- 투자활동 결과 회계등식의 구성항목 변동

<u>자산</u>		<u>부채와 자본</u>	
현 금	2억원	차입금	1억원
점포건물	1억원	자본금	2억원

바. 재무제표 작성 사례

1년 동안의 영업활동:

- 1년 동안 1억원의 건강보조식품을 구입
- 보조식품을 2억원에 팔아 1억원을 벌고
- 1년 동안 급여 등 경비 0.5억원을 지출
- 결과적으로 총 2억원을 벌고 1.5억원을 써서 0.5억원의 이익을 보았다.

바. 재무제표 작성 사례

영업활동 별 정리1(건강식품 1억 구입)

자산

부채와 자본

현금 2억원

차입금 1억원

점포건물 1억원

자본금 2억원

현금 - 1억원

상품 1억원

- 회계등식 유지: 왼쪽(자산)=오른쪽(부채+자본)

바. 재무제표 작성 사례

영업활동 정리2(보조식품 2억원에 판매)

<u>자산</u>		<u>부채와 자본</u>	
현금	2억원	차입금	1억원
점포건물	1억원	자본금	2억원
현금	- 1억원	매출수익	2억원
상품	1억원	매출원가 -	1억원
현금	2억원		
상품	-1억원		

- 회계등식 유지: 왼쪽(자산) = 오른쪽(부채+자본금+수익-비용)

바. 재무제표 작성 사례

영업활동 정리3(급여 등 관리비 0.5억 지출)

<u>자산</u>		<u>부채와 자본</u>	
현금	2억원	차입금	1억원
점포건물	1억원	자본금	2억원
현금	- 1억원	매출수익	+ 2억원
상품	1억원	매출원가	- 1억원
현금	2억원	급여 등	-0.5억원
상품	- 1억원		
현금	-0.5억원		

- 회계등식 유지: 왼쪽(자산)=오른쪽(부채+자본금+수익-비용)

바. 재무제표 작성 사례

기말재무상태표(2007.12.31)

자산		부채와 자본	
현금	2.5억원	차입금	1억원
건물	1억원	자본금	2억원
		이익잉여금	0.5억원

- 상품구입에 1억원, 제반 비용으로 0.5억원을 써서 총 1.5억원의 현금을 들여 2억원을 벌었기에 자산은 3.5억원이 됨.

바. 재무제표 작성 사례

현금흐름표(활동별 정리: 2007.1.1-12.31)

- 영업현금 + 0.5억원 (번돈2억원-쓴돈1.5억원)
- 투자현금 - 1억원 (건물구입)
- 재무현금 + 3억원 (주식발행2억+ 차입금 1억원)
- 현금증가액+2.5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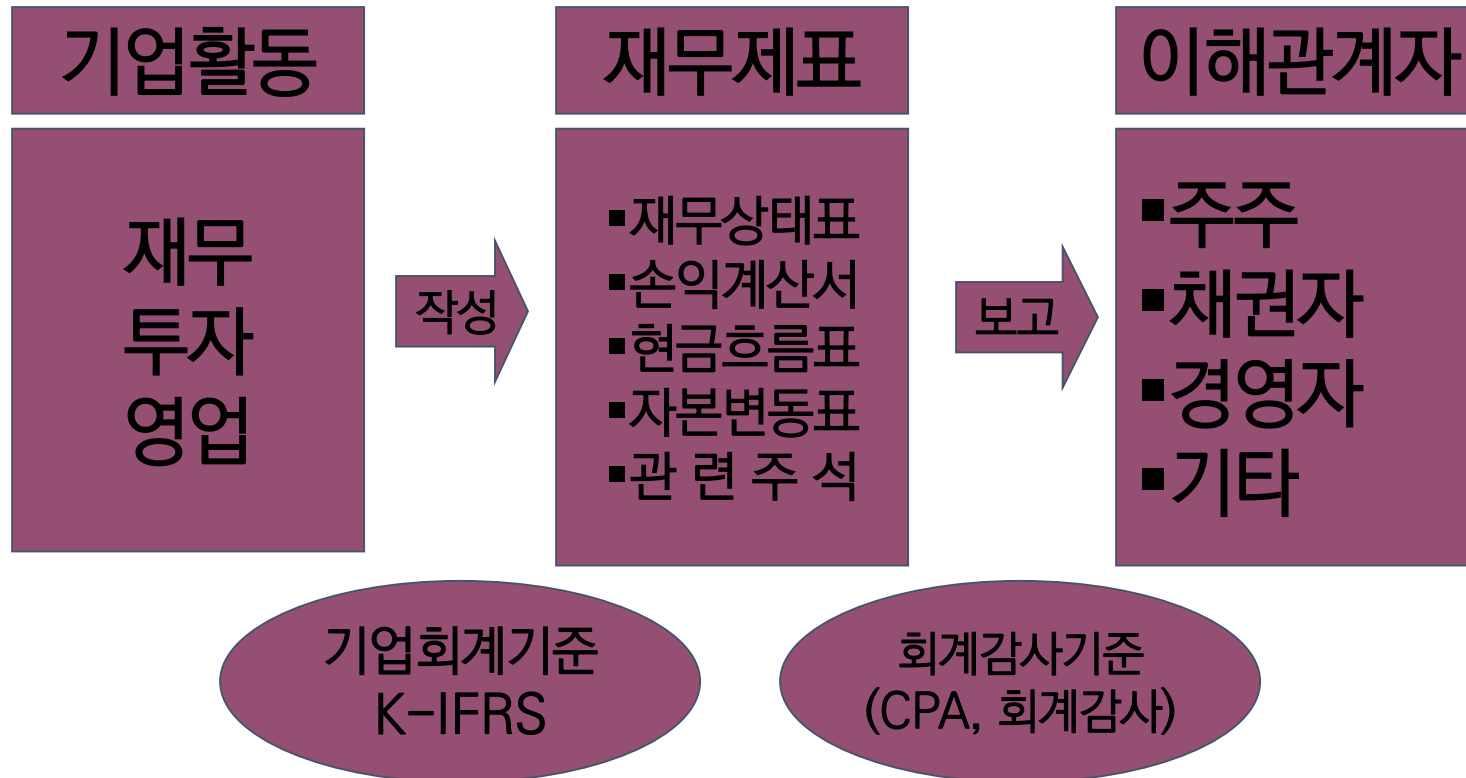
간단한 사례

자본변동표(2007.1.1-12.31)

· 일자	자본금	이익잉여금
· 1월1일	0	0
· 연 중	<u>2억</u>	<u>0.5억</u>
· 12월31일	2억	0.5억

사. 재무제표의 산출과 전달과정

- ※ 기업의 회계담당자는 기업활동이 일어나면 기업회계기준(K-IFRS)에 맞게 정리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 재무제표는 이해관계자에게 제공되는 데, 재무제표가 작성원칙인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작성되었는지를 독립성을 갖춘 외부전문가(공인회계사)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검증절차를 회계감사라고 한다. 재무제표의 회계감사는 자격을 갖춘 공인회계사(certified public accountant: CPA)에 의해 실시된다.



아. 회계감사의 필요성과 감사의견

○ 회계감사의 필요성

- 기업의 경영자는 자금을 공급해주는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자신의 활동결과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담아 보고해주어야 그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 그런데 외부이해관계자는 기업활동의 내용을 직접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작성을 하여도 알 수 없다.
- 기업과 외부이해관계자 사이에 자격을 갖춘 제3자가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여 재무제표 정보의 신뢰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 어떤 기업이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나?

외부감사대상 기준	
주식회사	유한회사 (신설)
1.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2. 매출액 500억원 이상	
3. ① 자산 120억원 이상, ② 부채 70억원 이상, ③ 매출액 100억원 이상, ④ 종업원 100명 이상, ⑤ 사원 50명 이상(유한회사에 限)	
①~④ 중 2가지 이상	①~⑤ 중 3가지 이상

○ 회계감사의견의 종류

적정 의견 : 감사인이 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고 감사를 한 결과,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중요하게 위배되지 않고 적정(혹은 공정)하게 작성된 경우

한정 의견: 감사인이 특정 부분에서 감사증거를 수집하지 못하거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된 항목이 중요하지만 해당 사항을 제외하고는 적정하게 작성된 경우

부적정 의견: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전체적으로 왜곡되었을 경우

의견 거절: 감사인이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한 경우나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 **주의사항** : 적정의견이 곧 경영성과가 좋은 기업을 의미하지 않음. 단지 성과가 나쁘더라도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라면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음.

I. 재무제표의 이해

(참고) 회계의 분류

재무회계

- ※ 재무회계(Financial Accounting)는 기업 외부이용자(투자자, 채권자, 정부 등 다양한 집단)에게 정보를 작성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외부보고 목적의 회계 - 다양한 정보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정보 제공
- ※ 외부 이용자들은 기업의 내부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그 작성과정에서 기업의 편의대로 작성되도록 한다면, 기업은 자신들의 경제적 실질과는 다르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보를 작성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오도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각국에서는 재무회계 정보를 작성하는 데에 반드시 지켜야할 회계처리 원칙을 두고 있음
- ※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정한 것을 「기업회계기준」 또는 「기업회계기준서」이라고 함
- ※ 기업회계기준은 상장회사 등이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그 이외의 기업들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이 있음
- ※ 재무회계 정보는 그 작성과정에서 지켜야할 일반적인 원칙이 존재하고, 재무회계는 그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도 정해진 수단과 방법(이를 보통 ‘재무제표’라 한다)을 통해서 이루어짐.

관리회계

- ※ **관리회계(Management Accounting)**는 기업 내부이용자(경영자 등 임직원)에게 정보를 작성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내부보고 목적의 회계
- ※ 관리회계의 경우에는 재무회계와 같은 일반적인 **작성원칙이 존재하지 않으며** 정보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형식도 정해진 형태가 존재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과 형태를 사용

1. 재무제표의 이해

세무회계

- ※ 세무회계란 세무당국에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는 과정을 다루는 회계
- ※ 세무회계는 기업회계, 즉 재무회계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세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정을 거쳐 기업의 과세소득을 결정하는 과정이 그 주요 내용
- ※ 기업회계의 목적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한 정확한 기간손익 파악과 그를 통한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의 결정에 있으나, 세무회계는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정확한 과세소득을 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정부회계

- ※ 정부회계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재정활동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다루는 회계
- ※ 중앙정부는 2011년부터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 ※ 지방정부는 2009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있음.

가. 재무제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공인회계사의 외부회계감사를 받아 일반에게 공시(주주총회 후 2주 내에, 늦어도 결산일 이후 90일 내)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기술창업자는 자신의 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경쟁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하여 기업의 수익성이나 위험성, 성장성 등을 다양하게 비교분석할 수 있다.
- 한편, 산업전체의 평균수준에 비해 자신의 기업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전년도에 비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 재무제표를 활용하기 위한 핵심적인 분석수단은 재무제표에 있는 두개의 항목을 분자와 분모로 하여 비율을 계산하고 이러한 비율을 통하여 기업의 수익성, 위험성, 성장성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재무비율분석이라 한다.

나. 재무제표를 활용한 재무비율 분석

재무상태표

(단위:백만원)

구분	2015.12	2014.12	2013.12
유동자산	735,069	473,039	554,998
비유동자산	3,493,758	3,430,465	3,709,783
자산총계	4,228,827	3,903,504	4,264,781
유동부채	601,048	461,704	385,439
비유동부채	830,455	766,085	936,543
부채총계	1,431,503	1,227,789	1,321,982
자본금	7,107	7,107	7,107
자본잉여금	32,760	12,998	12,998
기타자본항목		(6,248)	(6,24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013,692	950,814	1,223,940
이익잉여금	1,743,765	1,711,043	1,697,716
자본총계	2,797,324	2,675,714	2,935,513

손익계산서

(단위:백만원)

구분	2015.12	2014.12	2013.12
매출액	1,775,103	1,704,596	1,610,076
매출원가	1,081,190	1,053,495	988,316
매출총이익	693,913	651,101	621,760
판관비	574,783	544,878	512,158
영업이익	119,130	106,223	109,602
기타영업수익	10,716	16,324	19,837
기타영업비용	73,941	73,299	35,549
영업외수익	30,573	22,622	28,422
영업외비용	26,728	23,748	20,056
법인세차감전순이익	59,750	48,122	102,256
법인세비용	22,919	20,582	29,110
당기순이익	36,831	27,540	73,146

나. 재무제표를 활용한 재무비율 분석

1) 수익성을 나타내는 비율(수익성비율)

- 수익성비율(profitability ratio)이란 영업성과를 나타내는 재무비율로서, 이 비율의 분자는 기간이익(순이익 또는 영업이익)이고 분모는 투자액(총자산 혹은 자기자본), 매출액 등으로 구성된다. 이 비율은 주식투자자나 채권자들에게 투자자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 또 다른 수익성 분석지표로 주당이익을 들 수 있다. 주당이익(earnings per share : EPS)은 보통주 1주에 귀속되는 순이익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실무에서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데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표이다.

단위: %

구분	H제과(주)			L제과(주)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연도별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매출총이익률	41%	40%	40%	39%	38%	39%
매출액영업이익률	6.8%	6.3%	6.8%	10.6%	7.7%	8.5%
매출액순이익률	1.4%	0.7%	1.7%	4.5%	1.6%	2.1%
자기자본이익률(ROE)	30.43	13.60	34.31	3.62	1.50	1.99
총자산이익률(ROA)	6.6	3.0	7.9	2.5	1.0	1.3
주당이익(EPS): 원	668	311	887	48,764	18,360	24,554

나. 재무제표를 활용한 재무비율 분석

2) 효율성을 나타내는 비율(효율성비율 또는 활동성비율)

- 자산의 효율적인 운용 여부를 평가하고자 하는 재무비율로 총자산회전율과 같이 전체 자산에 관한 것도 있고, 매출채권회전율이나 재고자산회전률과 같이 특정 자산에 관한 것도 있다.
- 총자산회전율은 매출액을 평균총자산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이 수익을 창출하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재무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으면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산으로 많은 수익을 창출하여 기업의 수익성을 개선시켜주게 된다.
- 매출채권회전율은 매출채권이 현금화되는 속도 또는 매출채권에 대한 투자효율성을 나타내는 재무비율 지표이고, 재고자산회전율은 재고자산을 얼마나 빠르게 판매로 연결시키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재무비율이다. 매출채권회전율이 높으면 매출채권 현금회수기간이 단축되고, 재고자산회전율이 높으면 재고자산 보유기간이 단축되어 결국 기업의 운전자금 사정을 개선시키게 된다.

단위: 회

구분	H제과(주)			L제과(주)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연도별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총자산회전율	4.7	4.4	4.7	0.5	0.6	0.6
매출채권회전율	5.54	5.87	6.06	7.47	6.91	6.88
재고자산회전율	9.77	9.47	10.28	6.80	6.39	7.12

나. 재무제표를 활용한 재무비율 분석

3) 성장성을 나타내는 비율(성장성 비율)

- 기업의 성장성을 측정하기 위한 재무비율로 흔히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을 많이 사용한다.

단위: %

구분	H제과(주)		L제과(주)	
	2014	2015	2014	2015
연도별	2014	2015	2014	2015
매출액증가율	-5.53	15.94	5.87	4.14
총자산증가율	0.34	0.34	-8.47	8.33

나. 재무제표를 활용한 재무비율 분석

4) 안정성을 나타내는 비율

- 유동성비율(liquidity ratio)은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단기부채에 대하여 상환재원이 될 수 있는 유동자산의 상대적인 규모로 측정. 단기채무 변제능력을 나타내며 은행의 관심항목
-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유동비율이 높을수록 좋다고 해석하나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유동비율이 높으면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 등이 적정수준보다 많을 수 있다는 신호를 나타내므로 자산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음. 따라서 유동비율과 함께 자산효율성을 나타내는 활동성비율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
- 유동비율의 분자에 포함되어 있는 재고자산 등은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으로, 이러한 항목을 제외하고 당좌자산만을 고려하여 유동성을 평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를 당좌비율(quick ratio)이라 함. 당좌비율은 유동성을 평가하는 보다 엄격한 비율임
- 레버리지비율(leverage ratio)은 기업이 장기채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원만하게 지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비율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레버리지비율을 안정성비율(safety ratio)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안정성비율로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등이 있다.
- 부채비율은 대표적인 안정성비율로 부채비율이 클수록 지불능력이 낮고 채권자에 대한 위험이 큰 것을 의미
- 기업의 안정성을 분석하는 또 다른 비율지표로 이자보상비율이 있음. 이자보상비율은 이자와 법인세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이익인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누어 측정함. 이 비율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고정비용인 이자비용에 대한 안전도를 나타내는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안전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
- 이 비율은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율의 분자에 영업이익 대신 영업현금흐름을 사용하기도 함

나. 재무제표를 활용한 재무비율 분석

4) 안정성을 나타내는 비율

단위: %

구분	H제과(주)			L제과(주)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연도별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유동비율	50%	65%	72%	122%	102%	144%
부채비율	363.23%	354.12%	334.73%	45.28%	45.89%	51.17%
이자보상배율(배수)	1.67	1.35	3.25	8.61	6.27	7.04
영업현금이자보상배율(배수)	4.04	4.00	5.85	14.13	6.56	12.19

가. 원가정보를 이용한 경영의사결정

1) 원가의 개념 및 분류

- 원가란 재화(제품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의미한다. 만일 제조업이라면 판매할 물건(제품: manufactured goods)을 만드는 데에 소비된 것(제조원가라 함) 또는 판매할 물건(상품: merchandised goods)을 제조업자한테 사오는 데 들어간 돈(구입원가), 그리고 이러한 물건을 판매하고 회사를 관리하는 데에 들어간 돈을 의미한다. 제조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되며 이를 제품원가의 3요소**라고 한다. 제조원가는 각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직접비와 여러 제품의 생산에 대하여 공통으로 쓰이는 간접비로 구분하기도 한다. 한편 원가는 생산량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기준으로 고정원가, 변동원가, 혼합원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원가의 행태를 잘 구분하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

원가형태	고정원가	조업도(생산량)의 증감에 관계없이 그 총액이 항상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임차료, 보험료, 세금, 감가상각비 등)
	변동원가	조업도(생산량)의 증감에 따라 총액이 비례적으로 증감하는 원가(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혼합원가	조업도의 증감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 즉 조업도가 0일때에도 발생하는 고정원가와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일정비율로 증가하는 변동비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 원가(전력비, 전화요금, 수선유지비)

원가의 구성

			판매이익	판매가격
		판매관리비	판매원가	
	제조간접비	제조원가		
직접재료비	직접원가			
직접노무비				
직접제조경비				

가. 원가정보를 이용한 경영의사결정

2) 원가-조업도-이익(Cost-Volume-Profit : CVP)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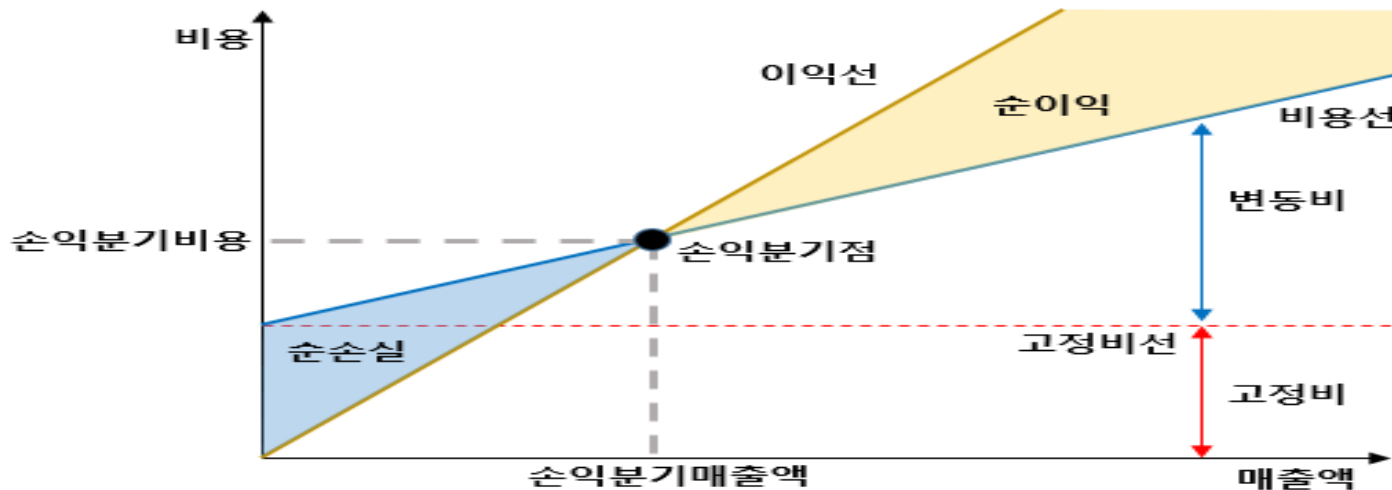
- 원가-조업도-이익분석(Cost-Volume-Profit analysis)은 원가-조업도-이익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서 조업도는 판매수량이나 생산수량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가-조업도-이익분석은 기업이 어느 정도 팔아야 손익분기점(Break-Even-Point : BEP) 을 넘어 손해를 보지 않는지를 알아보는 데에 많이 사용되어 손익분기점(Break-Even-Point)분석이라고도 한다. 손익분기점은 총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하여 이익도 손해도 아닌 수준의 판매수량 또는 판매금액을 의미한다.
- 손익분기를 넘어서면, 이익을 실현하게 되고 넘지 못하면 손실을 보게 된다. 따라서 기업이 손익분기점을 아는 것은 미래를 계획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 손익분기점분석에서 얻어지는 정보는 경제여건, 경쟁자 행동, 그리고 고객의 수요에 관한 정보와 같은 다른 정보와 결합될 때, 가격결정, 판매촉진(광고 및 마케팅), 그리고 신제품을 추가할 것인가 또는 기존제품이나 서비스를 중단할 것인가 등에 관한 결정을 하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 손익분기점분석의 기본 전제는 변동비와 고정비의 구분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변동비는 조업도(매출수량 또는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고정비는 조업도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변동하지 않는 비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동비와 고정비의 구분가능성은 손익분기점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가정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의 모든 비용이 변동비와 고정비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손익분기점 분석에서는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3) 손익분기점의 계산

- 손익분기점이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은 판매량(또는 매출액)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식에 의거하여 바로 **손익분기점의 판매량(Q)**을 구할 수 있다.

$$\begin{aligned} \text{단위당 판매가} \times Q &= \text{단위당 변동비} \times Q + \text{총고정비} \\ (\text{단위당 판매가} - \text{단위당 변동비}) \times Q &= \text{총고정비} \\ Q &= \text{총고정비} / (\text{단위당 판매가} - \text{단위당 변동비}) \end{aligned}$$

- 위 식에서 손익분기점 판매량인 Q가 계산되면, 손익분기수준의 매출액은 자연스럽게 단위당 판매가격에 손익분기점 판매량 Q를 곱하면 된다. 도표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3) 손익분기점의 계산

- 참고로 위의 식에서 (단위당 판매가 - 단위당 변동비)를 공헌이익(Contribution Margin)이라고 한다. 공헌이익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마도 판매가에서 변동비를 빼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고정비를 보충하는 데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판매수량에 관계없이 부담해야 할 고정비를 커버하는 데에 공헌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일 것이다.
- 예, ABC(주)는 밀키트를 판매하고 있다. 밀키트 단위당 판매가는 10,000원, 단위당 식재료와 포장재료 등 변동비는 5,000원이고 매월 임차료, 직원인건비, 공과금 등 고정비가 5,000,000원이라면 월 손익분기매출수량과 매출액은 얼마인가?
- $(10,000 - 5,000) \times Q = 5,000,000$
- $Q = 1,000$ 개, 매출액 = $1,000 \times 10,000 = 10,000,000$ 원

5) 현금분기점 분석

- 기업들은 판매량의 변동으로 인한 손익계산서상에서의 총이익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회사의 현금순환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불황에 직면한 기업들은 부도의 위험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현금흐름의 분석에 매우 민감하다. 따라서 현금의 유입액과 유출액이 일치되는 점의 판매량이나 매출액을 계산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판매량이 현금분기점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자금부족으로 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금분기점 수준을 공장폐쇄점(shot down point)이라 부르기도 한다.
- 판매수입과 판매수량에 따라 비례하여 발생하는 변동비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모두 현금으로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고정비 중에는 감가상각비와 같이 해당 자산의 취득시점에서 이미 지출된 비용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자산을 교체할 때에는 많은 돈이 필요하겠지만 당장에는 현금이 직접 유출되지 않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분기점의 판매량을 구하고자 하면 총고정비에서 감가상각비와 같이 현금지출이 없는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면 된다.

$$\begin{aligned} \text{단위당 판매가} \times Q' &= \text{단위당 변동비} \times Q' + \text{총고정비} - \text{감가상각비} \\ (\text{단위당 판매가} - \text{단위당 변동비}) \times Q' &= \text{총고정비} - \text{감가상각비} \\ Q' &= (\text{총고정비} - \text{감가상각비}) / (\text{단위당 판매가} - \text{단위당 변동비}) \end{aligned}$$

4) 영업레버리지 분석(영업위험분석)

- 영업 레버리지(operating leverage)란 기업의 고정영업비용에 의하여 기업의 매출액의 변동폭보다 영업이익의 변동폭이 확대되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영업이익의 변동성을 기업의 영업위험(operating risk)이라고 한다. 이 경우 고정영업비용은 기업의 영업위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영업이익의 변동성이 확대되는데, 이를 영업레버리지효과(leverage effort)라 한다. 고정영업비용이 많을수록 영업레버리지효과는 더욱 확대되어 나타난다.
- 예, ABC(주)의 20x1년도 매출액은 10,000,000원이다.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는 총 6,000,000원이며, 이중 고정비는 2,000,000원이다. 고정비는 현재 매출액의 2배가 되기까지는 변화가 없다. 이 경우에 매출액이 20% 상승하면 영업이익은 몇% 상승하는가?
- $\text{영업비용변동} = (6,000,000 - 2,000,000) \times 20\% = 800,000$
- $\text{영업이익변동} = 1,200,000 - 6,000,000 - 800,000 = 5,200,000$
- $\text{영업이익변동율} = (5,200,000 - 4,000,000) / 4,000,000 = 30\%$

나. 제품 및 서비스의 수익성평가

-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여럿 있을 때,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의 계속 제공여부나 비중의 조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아래와 같이 슈퍼마켓에서 제과스낵, 생활용품, 청과를 팔 경우에 각각의 매출총이익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생활용품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제과스낵이며 청과가 가장 낮다. 그러나 매장의 공간에 제약이 있다고 하면 각각의 제품이 차지하는 공간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 공간의 제약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면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수익성을 다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 이에 평당이익을 계산해보면 매출총이익 기준으로 가장 수익성이 낮았던 청과류가 가장 높은 50만원의 이익을 나타냈고, 매출총이익이 가장 높았던 생활용품은 평당이익이 가장 낮은 20만원으로 나타나 정반대의 평가결과를 보이고 있다

구분	제과스낵	생활용품	청과
매출액	5,000만원	8,000만원	4,000만원
매출원가	3,000만원	5,000만원	2,500만원
매출총이익	2,000만원	3,000만원	1,500만원
사용공간	50평	150평	30평
평당이익	40만원	20만원	50만원

다. 자체제작 또는 외부조달 여부의 결정

- 기업의 종종 핵심 부품이나 제품을 자체 제작 (insourcing)할 것인가 또는 외부 구입 (outsourcing)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다.
- 아래와 같이 제품을 자체 제작하면 재료비, 노무비, 간접경비 등 합하여 총 4억 4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자. 만일 외부에서 구입하면 4억원이면 된다. 그러나 외부구입을 하더라도 기존의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고정경비가 1억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외부에서 구입하면 5억원이 들게 된다.
- 따라서 자체제작비용 보다 외부구입비용이 더 싸다고 하여도 기업의 회피할 수 없는 고정비가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례에서는 오히려 자체제작을 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 된다.

구분	자체제작	외부구입	차이
외부구입비		4억원	-4억원
직접재료비	2억원		2억원
직접노무비	6,000만원		6,000만원
변동제조간접경비	8,000만원		8,000만원
고정제조간접경비	1억원	1억원	-
총비용	4억4,000만원	5억원	-6,000만원

라. 사업계획 및 투자유치를 위한 추정재무제표 작성

1) 왜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는가?

- 신규기업이나 기존 기업이나 사업계획의 수립이나 투자유치를 위하여 기업의 미래 모습(전망)을 구체적인 수치(화폐금액)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의 미래 전망은 주로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등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미래 전망에 대한 수치화된 정보가 추정재무제표이다. 추정재무제표에는 기업의 미래 자산, 부채의 규모, 수익이나 비용의 구조, 이익규모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수익성이나 위험정도를 파악하는 데에 유용한 도움을 준다.
- 기업의 이해관계자(현재의 투자자와 채권자, 미래의 잠재적 투자자와 채권자)는 당연히 기업의 미래 모습인 추정재무제표에 담겨질 정보를 간절하게 보고 싶어 할 것이다.
- 추정재무제표를 통해서 기업의 경영자는 미래에 필요한 투자규모, 이에 따른 자금조달규모, 미래의 이익전망(수익성), 예상되는 위험정도에 대한 예측정보를 얻게 되고 이러한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고 설명하면서 설득하게 된다.
- 추정재무제표는 구체적으로, 경영자가 사업계획과 성과목표를 수립하도록 도움을 주고, 외부이해관계자에게는 기술창업기업의 가치평가, 신용평가, 재무적 위기의 예측, 기업재무정책 분석에 도움을 준다.

2) 추정재무제표의 작성과정

- ※ 기술창업기업의 재무계획은 기본적으로 미래의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과 같다.
- ※ 추정재무제표는 기업의 미래 모습을 수치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 ※ 추정재무제표의 작성과정은 매출액 예측으로부터 출발한다. 재무제표 세부항목에 대한 추정치는 과거의 평균이나 업계의 평균 자료를 이용하여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 기존의 기업은 미래의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과거의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반면, 신규창업기업의 추정재무제표는 과거 재무제표가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

가) 신규 기술창업기업

- 신규 기술창업기업은 과거 재무제표나 정보를 활용할 수 없고, 불충분한 정보와 가정들에 의존
- 일반적인 방법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산업별로 전문리서치 기관이 발표하는 자료를 이용하면 시장전체 규모나 추세를 알 수 있다.
- 일단, 신규창업기업이 진출하는 사업분야의 전체시장규모가 예측되고, 신규창업기업의 제반 여건(기술력등 경쟁우위 요인)을 고려한 목표시장점유율이 정해지면 매출액의 규모가 추정됨
- **매출액의 규모가 추정되면 세부 재무제표 항목의 추정은 유사산업에 속하는 기존기업들의 재무제표를 활용**
- 예를 들면, 산업별로 제시되어 있는 매출액 대비 세부비용항목의 평균비율이나 총자산 대비 세부 자산이나 부채 등의 항목 평균비율을 참고할 수 있음

나) 기존 기술창업기업

- 기존 기술창업기업은 과거 재무제표를 기초로 미래의 재무제표를 예측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 과거 재무제표 수치의 평균이나 추세를 이용하여 미래를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상승률이 20%라면 미래의 매출은 현재 매출에 20%를 더하여 추정하면 된다. 물론 기업의 경쟁력이나 산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0%를 수정하여 추정할 수 있다.
- **매출에 대한 예상치가 정해지면, 매출액에 대한 과거 손익항목의 상대적 구성비율에 기초하여 추정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음(손익항목의 추정)**
- 또한 추정매출액에 자산회전율을 적용하면 총자산의 추정치 산정 가능(총자산의 추정)
- 자산의 추정치에 과거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세부 자산항목의 구성비율, 자산과 부채의 상대적 구성비율 등을 적용하면 추정재무상태표 작성 가능

3) 기술창업기업의 추정손익계산서

가) 매출 예측시 고려사항

- 추정재무제표는 보통 3~5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 작성되기 때문에 미래 매출의 변동추세(매출액 증가율)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함.
- 신규창업기업은 산업의 과거 평균적인 매출상승률을 이용할 수 있고, 기존 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과거 평균 매출상승률을 이용할 수 있다.
- 이때, 과거의 매출이 상승추세, 하락추세 또는 안정 상태인지 추세를 우선 확인하고, 향후에 매출추이가 유지될 것인지 반전될 것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 또한 매출의 향후 추세를 판단할 때 거시경제, 산업, 기업전략 등에 대한 정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전반적인 거시경제 상황이 호황시에는 소비자의 구매력이 증가하여 기술창업기업이 판매할 제품에 대한 시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반대로 경기불황시에는 시장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의 추세를 적용할 때에 조정이 필요하다.
- 산업정보는 기업의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즉, 산업전체가 도입기인지 쇠퇴기인지의 여부와 산업 내 경쟁자들의 많고 적음이 모두 기업의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 예를 들어, 산업이 성장기에 있거나 경쟁자가 적으면 기업은 치열한 경쟁이 없이도 매출액이 증가하지만, 산업이 쇠퇴기에 있거나 산업 내 경쟁자가 많아질수록 매출액의 증가하고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많이 어려워진다.
- 기업관련 개별적인 중요한 뉴스도 미래의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
- 예를 들어, 기업이 최근에 중요한 납품계약을 체결했거나 곧 체결할 예정이라면 미래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전형적인 사례로 조선산업에서 선박 공급계약은 일반적으로 수년 전에 체결되고 하나하나의 계약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만약 수년 내 중요한 선박의 공급계약이 예상되면 반드시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 다른 예로, 기업이 한 해 동안 대대적인 광고활동을 진행했다면 그 효과가 다음 해의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런 영향을 반영하여야 한다.

◆ 위에서 언급한 여러가지 정보들의 분석을 통해 향후 매출증가율을 추정하여 매출을 예측할 수 있다.

나) 신규 기술창업기업의 매출 예측

- 신규창업기업의 제품에 대한 시장규모와 목표시장점유율이 정해지면 초기 매출액을 추정 가능
- 이후의 매출액 추정은 목표 시장점유율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시장전체의 평균적인 매출상승추세를 가정하여 산정
- 예를 들어, 어느 창업기업의 2012년도 전체 시장규모가 6,793,680천원이고 목표시장점유율이 5%라면 2012년도 매출액은 339,684천원으로 추정
- 창업기업이 진출한 산업의 평균 매출액 성장률을 10%로 가정하면 2013년과 2014년도의 매출액은 아래와 같이 추정할 수 있다.

〈 표 〉 매출액 추정치

(단위: 천원)

연도별	2012	2013	2014	비고
매출액 추정치	339,684	373,652	411,018	연 10% 성장

다) 기존 기술창업기업의 매출 예측

- 과거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성장 추세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추정
- 〈표 Ⅲ-14〉와 같이 최근 3개년 자료가 주어진다면 이를 이용하여 평균 매출액 성장률 7.02%로 산정
- 2013년도의 매출액에 이러한 매출액 성장률을 적용하면 2014년 이후의 매출액을 추정 가능

〈 표 〉 매출액 예측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매출액	155,778	179,754	235,947	337,850	427,255	505,000

라) 비용(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추정

- 신규창업기업, 기존기업 모두 매출액이 추정되면, 비용의 추정은 과거 매출액에 대한 각 비용의 상대적인 비율에 의해 추정가능

① 매출원가 예측

- 기업의 매출원가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되는 성격이 아님
-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연간 2,000억원의 매출액에 매출원가가 약 75% 수준인 1,500억원 정도라고 했을 때, 매출원가의 비율을 해마다 1% 씩 낮춘다면 매출액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이익이 연간 20억원씩 증가
- 실제로 비용을 이와 같이 낮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음
- 물가상승이나 임금인상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원가는 상승하고 경쟁의 심화로 판매가격은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 따라서 매출원가의 예측은 과거의 자료에 의해 매출원가율을 계산해보고 그 평균치를 추정매출액에 곱하여 예측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합리적이다.

〈표〉 매출원가 예측

(단위: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매출원가	79,169	99,768	133,390	181,500	225,850	267,800

② 판매비와 관리비 예측

- 판매비와 관리비도 과거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매출액에 대한 판매비와 관리비의 비율을 이용하여 추정(먼저 추정한 매출액에 매출액 대비 판매비와 관리비 비율을 곱하여 추정)
- 기업의 미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판매비와 관리비 중 일부 항목의 추정치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 예를 들어, 판매관리비 중 인건비는 1인당 연간 인건비 증가율과 직원 수 증가율을 고려하여 추정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는 회사방침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예, 5%)을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기타 판매관리비 중 변동비는 매출증가율과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다음은 이러한 개별적인 조정을 거쳐 추정된 판매비와 관리비 추정금액을 제시한 것이다.

〈표〉 판매비와 관리비 예측

(단위: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판매비와 관리비	16,328	18,980	20,250	27,665	33,116	38,081

마) 이익 추정

- 추정 매출액에서 비용추정 금액을 차감하면 이익이 추정치가 산출된다.
- 즉, 추정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매출총이익이 산정되고, 이에 판매비와 관리비 추정치를 차감하면 영업이익 추정치가 산출된다.
- 영업이익에서 이자비용 추정치를 차감하고 추정법인세비용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 추정치가 산출된다.
- 일반적으로 이자비용을 제외한 비반복적인 손익항목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0)으로 처리
- 추정법인세비용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산출하고, 이에 추정법인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이익예측의 또 다른 방법으로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비율의 업종평균이나 기존 기업의 과거 평균값을 이용하여 직접 예측하는 접근방식을 사용할 수 있음

4) 기술창업기업의 추정 재무상태표

가) 자산, 부채, 자본 항목의 추정

- 추정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주로 자산, 부채, 자본 등 큰 줄기에 집중하여 추정
- 미래의 자산 규모는 추정 매출액에 자산회전율을 적용하여 추정
- 미래 자산회전율의 추정은 비용에 대한 예측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경영활동 또는 자본구조, 자산구조의 변화가 없다면 과거 자산회전율을 그대로 사용
- 예상 매출을 추정한 자산회전율로 나누면 미래 기말 총자산을 추정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추정 매출액이 120억이고 과거의 자산에 대한 매출액 회전율(=매출액/자산)이 1.2라면 총자산의 추정금액은 100 억으로 추정
- 이렇게 추정된 총자산 금액에 과거 재무상태표에서 각 개별 자산항목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주면 세부 항목별 자산금액이 추정
-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과거비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정보에 근거하여 자산의 구성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조정을 해 주는 일임
- 매출에 대한 예측은 기업경영과 시장 환경에 대한 전망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자산구조가 매출증가에 따른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 고려해 보아야 함
- 미래 매출증가에 따른 수요를 만족시키려면 재고를 늘려야 하는지 비유동자산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야 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자산을 구성하는 개별항목에 대한 예측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
- 총자산 및 개별 자산 항목에 대한 예측을 마친 후 부채와 자본항목을 추정
- 부채와 자본(세부항목)은 각 부채 및 자본항목이 과거에 총자산에서 차지한 비율에 근거하여 미래 금액을 추정

마. 기술창업기업의 현금예산편성

- 창업기업은 일반적으로 자금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예산을 잘 세워서 미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원자재나 설비를 확보하는 데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조업의 경우에 현금예산 편성절차는 다음과 같다.
 - 판매량(매출액)을 추정하고 매출액이 현금으로 회수되는 과거의 패턴(또는 판매 계약 조건)을 이용하여 기간별(예, 분기별 또는 월별) 현금수입 예정금액을 추정한다.
 - 제품생산수량(기간별 재고수량과 적정재고수량을 비교하여)을 추정한다.
 - 기간별 제품의 추정 생산수량의 제조원가(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를 계산하고, 제조원가 중에 재료구매에 들어간 돈은 신용구매에 따라 해당기간에 현금이 지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매대금 지급패턴을 고려하여 기간별 제조원가 현금지출액을 추정한다.
 - 판매관리비(광고비, 인건비, 임차료, 전기 통신 등 유틸리티 비용, 기타 관리비)는 최근의 추세를 적용하여 기간별 현금지출금액을 추정한다.
 - 기간별 판매로 인한 현금수입 추정금액에서 제품생산에 투입될 제조원가 현금지출, 판매관리비 현금지출 추정금액을 차감하면 기간별 현금예산수치가 산출된다.

가. 세무기초

1) 기술창업과 세무의 중요성

- 기업의 창업은 사실상 국세청 사업자등록으로부터 시작
- 이는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등에 대한 조세를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
-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법인세, 부가세, 종업원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다양하며 그 금액 면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큰 비용 중의 하나
- 기업의 입장에서는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납부할 세액을 절약하는 방법을 알아야 함
- 특히 기술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세제지원제도를 숙지하여 절세에 활용
- 세금은 국가에서 부과한 의무이기 때문에 부주의로 세금의 신고나 납부를 누락하게 되면 가산세 등의 범위반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기업의 신용도 나쁘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 필요

2) 조세의 의의

-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세금

3) 조세의 분류

가)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 조세는 과세주체에 따라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
- 국세는 세금이 국가로 귀속되는 것으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총 14개로 구성
- 지방세는 세금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것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총 11개로 구성

나) 조세의 용도 지정에 의한 분류

- 사용용도의 지정 여부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분류, 보통세는 조세수입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일반경비를 충당하는 조세로 오늘날에는 보통세가 원칙.
- 목적세는 조세수입의 용도를 지정하여 그 특정경비에만 충당하는 조세로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지역 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음

다) 직접세와 간접세

- 직접세는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직접 납부하는 것으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여기에 속함.
-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다른 조세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가 있음.

4) 기초세무용어

가) 과세요건

-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이 확정되어야 한다.

나) 원천징수

-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함
- 원천징수는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로 구분
- 완납적 원천징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 종결
- 예납적 원천징수는 법정기일에 소득자가 별도로 신고 납부하여야 납세의무가 종결됨.

다) 가산세와 가산금

- 가산세란 세법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세법의 각종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행정질서 벌에 해당
-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그 국세의 세목으로 함. 예컨대, 법인세법에 규정되어있는 각종 가산세는 법인세로 징수
- 가산금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고지세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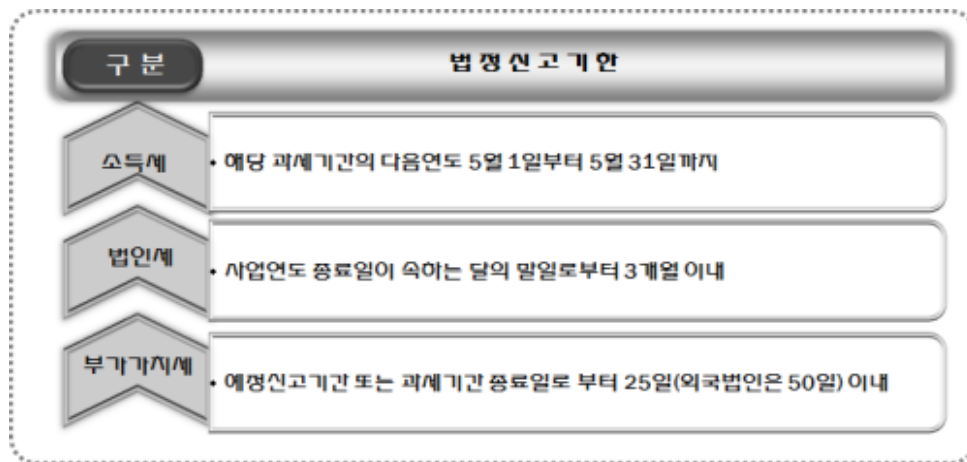
라) 납세의무자와 납세자 등

-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
- 이러한 납세의무자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승계에 의한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
- 납세자란 납세의무자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위의 납세의무자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함
-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란 원전징수의무자,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의무자 등을 말함

마) 법정신고기한

-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 제출기한**. 주요조세 법정신고기한은 <그림 Ⅲ-2> 참조

<그림 Ⅲ-2> 주요조세 법정신고기한



사) 과세기간과 과세표준

- 과세기간은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
-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

5) 사업과 관련한 세금의 종류

- 대부분의 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세금의 종류는 **소득세(법인의 경우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원천징수하는 세금** 등이 있음
- 모든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해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1일~5월 31일 사이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법인사업자는 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3월 31일 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종업원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한편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과세사업자는 매년 1월 25일과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에서 고지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특별소비세 과세 사업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매월 신고·납부해야 함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므로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면세수입금액(매출액)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함**
- 이하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중심으로 설명

나. 소득세

1) 소득세의 개념

-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를 소득세라고 하는데, 소득세는 소득이 귀속되는 주체에 따라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소득세를 소득세라 하고, 법인 소득세를 법인세라고 한다. 따라서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이다. 소득은 일정기간 동안에 개인 또는 법인이 획득한 경제적 이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제학이나 회계학 등에서 말하는 학문적 개념과는 다른 것이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열거주의를 채택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에게 경제적 이득이 발생되었더라도 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경제적 이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소득세의 과세방법

-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과세체계를 갖는 분류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은 대부분 개인별로 종합하여 과세하고 일부는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분리과세를 한다. 종합과세란 여러 종류의 소득을 묶어서 과세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을 원천별로 8개로 구분하고, 그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 및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이라고 한다.
- 종합소득세는 1년을 단위로 과세된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합하여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는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고 있어 소득세와 관련한 각종 신고·신청 등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한다. 또한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만, 자산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은 부부 중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 한편, 퇴직소득이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 받는 소득을 말한다. 그러나 퇴직으로 인해 지급하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퇴직급여 지급규정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이나 퇴직공로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본다.
-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및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할 때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여기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은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에 가산하지 않고 양도소득으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나. 소득세

3)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의하여 세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이 있는 개인이다. 여기서 **개인**은 **국적과 관계없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는 과세 소득의 범위와 과세방법차이가 있다. 또한 타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로 납세의무자에 포함된다.

4) 소득금액의 계산

- 소득금액은 **각 소득별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입금액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총수입금액에 분리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말한다.

소득금액 = 연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상품 또는 원재료의 매입대금 · 종업원의 급여 · 사업용 자산 유지관리비 ·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사업 소득의 총수입금액이 1억 원이고, 사업소득의 필요경비가 8천만 원이라면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은 2천만 원이 된다.

5) 과세표준과 세율

가) 과세표준

- **과세표준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별로 계산**한다. 앞에서 설명한 금액에서 각 소득의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소득별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퇴직소득 과세표준·양도소득 과세표준으로 구분하고,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② 퇴직소득 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③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계산한다.

나. 소득세

나) 세율

- 종합소득세의 기본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42%까지 7단계의 초과 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다. 각 소득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각 소득의 산출세액이 된다. 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표 Ⅲ-33〉 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천2백만원 이하	6%	-
1천2백만원 초과 4천6백만원 이하	15%	1,080,000원
4천6백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	24%	5,220,000원
8천8백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0,000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0,000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0,000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0,000원
10억원 초과	45%	65,400,000원

예) 과세표준 50,000,000원일 경우 : $50,000,000 \times 24\% - 5,220,000 = 6,780,000$

6) 신고 및 납부

- 당해 연도에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단,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시에 2개월 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 중간예납은 과세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세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세금을 한꺼번에 거둘 때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막고 정부의 세금징수를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됐다.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하는 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며, 중간예납 세액은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취지

-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

성실신고확인제의 도입

-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었음

성실신고확인자

-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음(소득세법 시행령 §133③)
 - 신고납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임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시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 신고·납부기한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납부기한은 다음연도 5.31.에서 6.30.까지로 1개월 연장
-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2의3)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6의6)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업종별, '14-'17귀속, '18귀속부터 포함		
업종별	'14-'17귀속	'18귀속부터
1.1.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1.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해당년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1.3.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별표3의3] 사업 서비스업 ¹⁾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1)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2012.02.0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단서 신설)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9항 관련)

구분	업종
사업 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다. 법인세

1) 법인세의 개념

- 법인세는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국가가 과세하는 조세이다. 따라서 법인세는 국가가 과세주체가 되며, 법인을 과세객체로 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이다. 법인세의 소득에는 각 사업 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의 두 가지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토지 등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는 물론 특별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 이유는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와 과세형평 및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중과세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이다. 개인기업이 사업소득과 사업 이외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하듯이 법인기업도 각 사업연도의 영업소득과 부동산 양도차익 및 청산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법인세라 한다.

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매 회계기간(1년) 동안 영업활동을 한 결과로 얻은 사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법인세를 말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사업연도별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토지 등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 토지 등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개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법인에게는 법인세가 부과된다. 법인에게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차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와 더불어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므로 이중과세가 일어난다.

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법인의 소멸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를 해산이라 하고, 해산에 이어 모든 관계를 마무리하는 절차를 청산이라고 한다. 따라서 법인은 해산에 의해서 즉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청산절차가 종료함으로써 소멸하게 된다. 청산과정에서는 법인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은 주주들에게 분배하여 준다. 이 때 주주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의 금액이 해산등기일 현재, 법인의 자기자본 총액을 초과하면 소득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을 청산소득이라 하고,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한다.

다. 법인세

2) 법인세 납세의무자

-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이다. 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그리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된다.
- 내국 영리법인은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하며, 내국 비영리법인은 국내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내야하고,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한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영리법인은 국내에서 취득한 원천소득과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하며,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그리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의 비영리법인은 국내의 원천소득 중에서 수익사업으로 생긴 소득과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하며,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3) 법인세 납세지

- 납세지란 납세의무자가 관할 세무서를 결정하는 장소적 개념으로서, 세법에서 규정하는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장소를 말한다. 법인세법에서는 납세지를 납세의무자별로 구분하고 있다.

가) 내국법인의 납세지

-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나) 외국법인의 납세지

-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그러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소득, 양도소득 등이 발생하는 그 자산의 소재지로 한다.

4)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율

가) 과세표준의 계산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 내에서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그리고 소득공제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 법인세

① 이월결손금

결손금이란 당해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이월결손금은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을 말한다. 이러한 **이월결손금은 10년 이내(2008.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 발생 분은 5년)에 발생한 것에 한하여 공제**한다.

②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은 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정한 소득을 말한다. 따라서 비과세소득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과세권을 포기한 소득이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정한 절차 없이도 과세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다. 비과세 소득금액은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 한도 내에서만 공제하며, 잔여금액이 있더라도 소멸된다.

③ 소득공제액

소득공제란 정책적으로 법인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특정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각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나) 법인세율

- 법인세율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다.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이라고 한다.

〈표 Ⅲ-34〉 2020년 기준 법인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0원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20%	20,000,000원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22%	420,000,000원
3,000억원 초과	과세표준의 25%	9,420,000,000원

다. 법인세

5)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가) 신고기한

-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각 사업 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사업 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나) 납부

- 법인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 납부는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만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표 Ⅲ-35 〉 법인세 납부기준

구분	분납가능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라.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의 개념

- 부가가치세(VAT : value added tax)란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된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매입시 부담한 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소비자)이 부담하는 세금이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지불하는 물건 값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하였다가 국가에 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사실상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 한다.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얻은 수입 중에서 내는 세금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 놓은 세금이므로 결손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세금 영수증인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물건을 구매하였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참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Tax Invoice)라 함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그 거래내용과 거래징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증서를 말한다. 이러한 세금 계산서에서는 재화의 수입 시에 세관장이 수입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자에게 작성 교부하는 수금계산서가 포함되며, 이외에도 주로 소비자와의 거래 시에 작성·교부하는 영수증·금전등록기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도 세금계산서에 포함된다.
- 또한 영수증이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계산서를 말한다. 주로 사업자가 아닌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비교적 소액거래에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다.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자연인인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그리고 기타 단체도 모두 포함된다.
- 여기서 사업상이란 사업설비 또는 조직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1회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자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업자의 영리성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단, 미가공식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은 <그림 Ⅲ-?>과 같다.

<그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그 유형에 따라 세금의 납부절차와 세 부담에 차이를 두고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면 일반과세자로 되는 것이 원칙이나, 영세한 소규모사업자의 신고편의 및 세 부담 경감을 위하여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 표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사업자 구분기준	연간 매출액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이상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만
매출세액	공급가액 × 10%	공급가액 ×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적으로 발행	발행불가
매입세액 공제	전체 공제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의제매입세액공제	모든 업종에 적용	음식업 사업자만 적용
기장의무	매입·매출장 등 기장의무	주요받은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만 보관하면 기장한 것으로 봄

4)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가)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다.
-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과세**하므로 사업장이 2곳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사업장이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한다.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포함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 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단, 징수 금액이 30만원 미만,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사업부진 또는 조기환급 발생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나)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

간이과세자(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1.~12.31.	다음해 1.1.~1.25.

다)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 계속사업자와 동일

라) 폐업자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예시) 일반과세자가 2021.4.13. 폐업한 경우
 - 과세기간 : 2021.1.1.~ 2021.4.13.
 - 신고·납부기한 : 2021.5.25.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참고) 폐업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절차

- 사업을 그만두면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도 함께하는 것이 절차상 편리함
- 이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폐업 년·월·일 및 사유를 적고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따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

5)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유형별 가산세액 계산	
가산세명	가산세액 계산
무신고	· 부당 무신고납부세액×40% or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40% or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10%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5/100,000)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0.5%
미등록	·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
명의위장 등록	·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
세금계산서발급 및 전송불성실	·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 공급가액×1% ·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2% ·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 공급가액×1%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0.3%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0.5% ·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1%
세금계산서 등 부정수수	· 세금계산서등 가공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3% · 세금계산서등 위장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2% · 세금계산서등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가산세 : 과다기재 공급가액×2%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산세 : 공급가액×3% · 세금계산서등 위장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2% · 세금계산서등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가산세 : 과다기재 공급가액×2%
경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불성실	· 경정등에 따라 공제되는 신용카드수취 매입세액공제 : 공급가액×0.5%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 미제출·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 공급가액×0.5% · 지연제출(예정분 → 확정분) : 공급가액×0.3%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 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 : 공급가액×0.5% · 미제출(경정 공제분)·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과다기재 : 공급가액×0.5%
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 미제출 또는 과소기재 수입금액×1%

마. 창업기업의 세제지원

구분	지원내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조특법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12.31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 등* 에 대하여 창업 후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매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상시근로자 증가시 최대 50% 추가감면 · 최대 100% 감면) - '18.5.29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한 기업 중 청년창업 중소기업과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과세연도는 감면 기간 중 100% 감면 - '18.5.28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 또는 신성장서비스업종 중소기업: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99의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12.31 까지 고용 또는 산업 위기지역 내에서 감면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등록면허세 면제 (지특법 §58의3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과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창업일 부터 4년 이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등기
취득세 면제 (지특법 §58의3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과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 후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감면 (지특법 §58의3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과 창업벤처중소기업 -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하는 부동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 §30의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자금(30억원 한도)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초과액은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한 후 상속 시 정산

자료) 국세청, 중소기업 세제 · 세정지원 제도(2020.2), p.27.

마. 창업기업의 세제지원

구분	지원 내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조특법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12.31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 등* 에 대하여 창업 후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매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 의 50% 감면(상시근로자 증가시 최대 50% 추가감면 - 최대 100% 감면) - '18.5.29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한 기업 중 청년창업 중소기업과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과세연도는 감면 기간 중 100% 감면 - '18.5.28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 또는 신성장서비사업종 중소기업: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 받은 자,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99의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12.31 까지 고용 또는 산업 위기지역 내에서 감면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등록면허세 면제 (지특법 §58의3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과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창업일 부터 4년 이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이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등기
취득세 면제 (지특법 §58의3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과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 후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감면 (지특법 §58의3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과 창업벤처중소기업 -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하는 부동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 §30의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자금(30억원 한도)을 증여 받는 경우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초과액은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한 후 상속 시 정산

자료) 국세청, 중소기업 세제·세정지원 제도(2020.2), p.27.

가. 채용

1) 주요 노동관계법 개념

가) 노동법 해석관련

- 사용자와 직원간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노동관계법에서는 상위법이 우선한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회사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에 따르게 된다. 하지만 **회사에서 정한 규정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노동법에 위반 되는 경우에는 상위법이 우선 적용된다.** 노동관계법과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경우 노동관계 법규가 취업규칙보다 우선, 취업규칙은 근로계약보다 우선
- 관련법 조항을 예를 들면,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제3항에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로 표시
- 또한,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로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로 되어 있는 것과 같다.
- 또 하나는, 유리한 조건 우선이다. **노동법에 정한 기준보다 직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당사자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

나)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및 개념 정의(「근로기준법」 제2조)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상시 4명 이하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한다.
-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각각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 ①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 ② 사용자 :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 ③ 근로 :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 ④ 근로계약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 ⑤ 임금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⑥ 평균임금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함
 - ⑦ 소정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가. 채용

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 판단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의 규정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2) 채용시 고려사항

가) 채용관련 주요 금지 사항

-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밖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주는 모집, 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보기후생, 교육, 훈련, 배치, 전보, 승진, 퇴직, 해고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채용

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유의사항

- 이 법률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①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 ②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한다.
-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한다.
-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예외)
- 또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며, 구인자는 채용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 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나. 근로계약

1) 근로계약서 작성

- 「**노동법**」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사용자와의 약속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원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계약 관련 사항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위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위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 ①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②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 ③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 ④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2) 근로계약의 유형

가)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회사와 직원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는데, 이런 계약을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나) 기간제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말한다. 이 법률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나. 근로계약

- 계약기간
 -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②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④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⑤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⑥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다) 단시간근로자

- 통상적으로 ‘아르바이트’, ‘시급직’ 등 다양한 용어로 부르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단시간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제2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말한다.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라) 연소자

- 「근로기준법」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에 따라 15세 미만인 자(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연소자를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제66조(연소자 증명서)에 따라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또한, 「근로기준법」제69조(근로시간)에 따라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다. 취업규칙

- 취업규칙은 직원이 준수해야 할 규칙과 직장질서, 근무조건에 대한 사항을 정한 규정을 말하는데, 「근로기준법」제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모든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①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 ②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 ③ 가족수당의 계산·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 ④ 퇴직에 관한 사항
 - 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⑥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 ⑦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⑧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 ⑨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⑩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 ⑪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 ⑫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 ⑬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 ⑭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표준취업규칙은 일반근로자용과 단시간 근로자용으로 구분**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상 필수적인 규정과 선택적인 규정에 대한 구분과 조문별 표준안 및 작성시 착안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1)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취업규칙 신고시 근로자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취업규칙 게시

- 사용자는 이법과 이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要旨)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라. 4대 보험

-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4대 보험은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국민연금,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으로 구성된다.

〈 표 〉 4대 사회보험 처리기관 및 관계법령

구분	처리기관	관련법령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라. 4대 보험

〈 표 〉 4대보험 적용제외 대상자

구분	적용제외 대상자
국민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60세 이상인 자 - <u>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u>,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함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 ② 위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 법인의 이사 중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이 없는 사람 - <u>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u>.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②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③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시행령」제18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중 60세 미만의 특수 직종 근로자,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국민건강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기간이 <u>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u> - 의료급여 수급자 - <u>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u>
고용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u> - <u>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u>.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제외

마. 퇴직관리

1) 퇴직의 유형

-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장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퇴직(사직)이라 한다.

〈 표 〉 퇴직의 종류

권고사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표를 제출한 후 퇴직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면직		근로자가 자의에 따라 사표를 낸 다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해서 퇴직하는 것을 말한다.
명예퇴직		근로자가 명예퇴직 신청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함으로써 합의에 의해서 퇴직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 소멸	계약기간 종료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된다.
	정년퇴직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법규정에 따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 사망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2) 해고

-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해고라고 한다.

〈 표 〉 해고의 종류

일반해고	통상 해고라고도 하며 징계해고, 경영상 해고 이외의 해고를 말한다.
징계해고	징계의 정류로 직원의 행위가 중대하여 더 이상 근무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하는 해고처분 조치를 말한다.
정리해고	회사가 산업 및 기술변화 등에 적응하지 못해 경영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직원을 해고하는 조치를 말한다.

마. 퇴직관리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일시 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②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의 예외로 적용받을 수 있다.
 - ①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②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③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 ④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⑤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 ⑥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⑦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 ⑧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⑨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노동시간단축 유의사항

1.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 최근 정부는 노동시간을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했다.
- 개정안은 2018년 7월 1일 시행(단계적 시행)됐다.



2.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① 노동시간 단축 : 연장·휴일근로를 포함 1주 최대 52시간 (1주=휴일포함 7일)

* 시행시기 : 300인 이상('18.7.1.) /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19.7.1.) / 50인 이상~300인 미만 ('20.1.1.)** / 5인 이상~50인 미만 ('21.7.1.)

** 50~299인 기업에 1년 계도기간 부여

②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21.7.1.~'22.12.31.)

* 노사 서면 합의 시 1주 8시간 범위

③ 특례업종을 26개→5개로 축소('18.7.1.~), 특례도입 사업장은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보장('18.9.1.~)

④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명시('18.3.20.~)

⑤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

⑥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노동시간 1주 최대 40시간으로 단축 ('18.7.1.~)

* 1주 노동시간 40시간→35시간 / 1주 연장 노동시간 6시간→5시간

IV. 지식재산권 관리

1. 지식재산의 중요성
2. 지식재산권 개요
3. 지식재산권의 종류
4. 지식재산권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
5. 지식재산권을 보호받는 방법
6. 특허법의 기본 원칙
7.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방법
8. 해외 출원의 방법
9. 특허검색 방법 및 유의 사항

I. 지식재산의 중요성

I. 지식재산의 중요성

-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1호).
- 기업의 창업은 자신의 지식재산이나 타인의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지식재산이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으면 경쟁기업이 모방을 하게 되어 창업기업은 우월적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결국 사업의 성장동력을 잃게 된다.
- 따라서 창업기업은 창업의 원동력이자 사업성공의 핵심이 되는 지식재산이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이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3호).

2. 지식재산권 개요

2. 지식재산권 개요

1) 지식재산

- 보호하면 돈이 되는 지식, 정보, 기술, 표현, 표시 등은 타인이 쉽게 모방할 수 있는 무형재산이어서 보호하지 않으면 재산적 가치가 없어진다.
- 이러한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지식재산**이라 한다.

2)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은 법에 의하여 보호 받는 지식재산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여야 보호받을 수 있다.
- 지식재산권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고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무형적 권리이다.

3) 산업재산권

- 지식재산권 중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 등 산업분야 권리에 대한 호칭으로 나누어진다.

〈표 IV-1〉 산업재산권의 구분

구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발명 수준이 고도한 것 (대발명)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실용성 있는 고안 (소발명)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결합한 것.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이나 이들을 결합한 것
사례 (자동차)	하이브리드엔진, ABS 등 자동차 관련 원천·핵심기술	백미러 구조, 컵홀더 체결장치 등 유용한 고안	후미등을 2가지 색의 2중원 구조로 하여 심미감을 높인 것	자동차 제조회사가 생산한 자동차 등에 표시하는 상호·마크
보호 기간	20년	10년	20년 (개정)	10년 (10년마다 갱신가능, 반영구적 권리)

*특허 : 원천/핵심기술

- ABS 브레이크 시스템
- 저연비 엔진관련 기술
- 변속기에 관한 기술

*실용신안 : 주변개량기술

- 백미러와 관련된 기술
- 내부의 컵 홀더 관련 기술
- 의자 높낮이 조절구조 등



*디자인 : 물품의 외관

- 차체 형상
- 전방 램프 형상
- 백미러, 룸미러 등의 형상

*상표 : 상품의 명칭

- 자동차 명칭(소나타, 체어맨, 로체, SM 등)
- 제작사 명칭(현대, 기아 등)

3. 지식재산권의 종류

3. 지식재산권의 종류

1) 산업재산권

가) 특허권

- 특허권은 발명이란 객체를 보호하는 권리이며,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특허권은 특허출원이 실체심사를 거쳐 설정등록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여 특허출원일 후 20년까지 존속한다.

나) 실용신안권

- 실용신안권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이란 객체를 보호하는 권리이며,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실체심사를 거쳐 설정등록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 실용신안권은 특허권과 동일하게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하는 권리이지만, 물품의 형상, 구조 및 조합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음식물, 의약품 등과 같은 물질이나 제조방법, 통신방법 등과 같은 방법은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다) 디자인권

- 디자인권은 물품의 디자인을 보호하는 권리이며,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권은 디자인등록출원이 설정등록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라) 상표권

- 상표권은 상품의 표장, 즉 상표를 보호하는 권리이며,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상표권은 상표등록출원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10년까지 존속되지만 다른 산업재산권과 달리 10년마다 갱신하여 존속기간을 계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2) 저작권

-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을 보호하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달리 별도의 출원, 등록 등의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지 않으며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 저작권은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3. 지식재산권의 종류

3) 신지식재산권

가)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

-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나)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저작권

- 데이터베이스는 넓은 범위에서 편집물의 하나로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저작권에서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된다.
- 저작권법은 편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소재(부호, 문자, 음, 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의 집합물을 말하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가지는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에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등을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갱신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다) 컴퓨터프로그램을 보호하는 저작권 및 특허권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라) 반도체 배치설계권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어지는 배치설계권은 등록된 배치설계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배치설계를 이용한다는 것은 배치설계를 복제하는 행위, 배치설계에 따라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는 행위, 배치설계, 배치설계에 따라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또는 그 반도체집적회로를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을 양도, 대여하거나 전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배치설계권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10년 또는 그 배치설계의창작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마) 식물신품종을 보호하는 품종보호권 - 독점적으로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는 25년) 동안 행할 수 있다.

4. 지식재산권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

4. 지식재산권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

1) 기술과 아이디어를 뺏기지 않기 위하여

- 특허권 등으로 보호하지 않는 경우 후발기업이 자신의 기술, 디자인, 상표를 모방해서 시장을 잠식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2) 시장 지배력 확보를 위하여

- 선발기업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면 후발 경쟁기업은 해당 특허권의 침해가능성을 검토하거나 회피기술을 개발하여야 하므로 시장진입 시기가 늦어지게 된다.

3) 수익창출을 위하여

- 특허는 본인이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지만, 타인에게 로열티를 받고 실시하게 해 줄 수도 있다. 즉, 제품생산을 하지 않아도 특허권을 이용하여 직접적인 수익창출을 할 수 있다.

4) 특허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 침해소송 등을 당한 경우 상대방 기업과 겨룰 수 있는 대응무기가 필요하다. 관련 분야에서 상대기업을 공격할 수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분쟁을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다.

5)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및 세제지원 혜택을 받기 위하여

-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지원, 우수발명품시작품 제작지원을 비롯하여 각종 정부자금 활용과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지식재산권을 보호받는 방법

5. 지식재산권을 보호받는 방법

1) 등록해야 보호받는 지식재산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신청(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되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보호기간이 10~20년이며, 등록료를 계속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되므로 지속적 관리 필요

2) 감춰야 보호받는 지식재산

- 영업비밀은 남들에게 알려지는 순간 더 이상 영업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감춰야 할 뿐만 아니라, 감추려는 노력이 없으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한다.
- 또한, 원래부터 자신의 영업비밀이라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며 이를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영업비밀 원본 증명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기술자료 임치센터에 맡기는 방법이 있다.

3) 나타내야 보호받는 지식재산

-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내어야 한다. 머릿속에 있는 구상, 아이디어 등은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저작권으로 보호받으려면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나타내어야 한다.

6. 특허법의 기본 원칙

6. 특허법의 기본 원칙

1) 출원절차

가) 권리주의

- 특허법상 보호의 가치가 있는 발명의 실체는 이미 출원 전에 존재하였으며 국가는 제도상 이를 확인하여 보호하는데 지나지 아니한다는 입장으로서 은혜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나) 도달주의

-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 서류나 국제출원 서류는 예외 없이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다) 수수료 납부주의

-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정명령의 대상이 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그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2) 심사절차

가) 심사주의

- 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요건의 전부를 심사하여 특허를 부여하는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심사청구제도와 출원공개제도를 가미하여 전통적 심사주의의 폐해를 보완하였다.

나) 선출원주의

- 동일발명이나 고안에 대하여 둘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에게만 특허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선발명주의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다) 보정 및 보정제한주의

- 보정을 통해 명세서 등의 미비점을 적정하게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출원인을 보호함과 동시에 심사지연과 제3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내용 및 시기적 측면에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라) 공개주의

- **출원일 후 1년 6개월이 지나거나 그 이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 출원발명의 내용을 일반에 공표함으로써 제3자가 기술정보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자의 중복투자 및 연구를 방지한다.**

6. 특허법의 기본 원칙

3) 등록절차

가) 등록주의

- 특허권의 보호 및 효력발생의 요건으로서 행정청의 설정등록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등록주의와 무등록주의로 구분된다. 특허권의 존부 및 그 범위의 명확화를 위하여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한다고 규정

나) 특허료 납부주의

-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특허료를 내야 한다. 특허료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특허출원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낸 특허료에 해당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간주한다.

4) 기타사항

가) 서면주의

- 특허출원서나 그 밖의 제반 서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양식주의

- 특허에 관한 절차는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양식에 의거하여야 하며, 이를 요식주의라고도 한다.

다) 직권주의

- 절차의 개시와 심판의 대상 특정에 있어서는 당사자주의에 의하지만, 심리나 그 밖의 제반 절차에서는 특허권의 대세효 및 특허제도의 공익성 등을 이유로 직권주의에 의한다.

라) 속지주의

- 특허 출원과 등록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1국 1특허 원칙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특정국가에 특허권이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타국에서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7.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방법

1) 출원

- 특허청에 신청(출원)하여 심사관의 심사를 받은 후 등록을 하여야 권리가 발생한다. 먼저 출원한 사람만 등록되며, 나중에 신청한 사람은 등록이 거절되므로 사전에 선행기술 검색이 필요하다.
- 출원 시에는 특허청에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개인 및 중소기업은 대폭 할인이 된다.
- 특허에 있어 청구범위는 핵심 권리범위로서, 부동산에 있어서 지번, 면적 등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여야 하며, 잘 모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 등록받은 국가에서만 보호받기 때문에, 해외진출에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해외출원이 필요하다. 해외출원은 해당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여 한꺼번에 출원하는 방법이 있다.

2) 심사·등록·심판

- 출원 후에 권리부여를 위한 심사과정이 오래 소요된다.(권리 종류나 상황에 따라 수개월~1년 이상)
- 무형의 지식에 대하여 권리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형식과 표현내용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 특허청의 심사에는 제출된 서류가 요건에 맞는지 심사하는 방식심사와 실제적 내용이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기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실체심사가 있다. 심사관은 실체심사 과정에서 선행지식(특허, 논문, 상표, 디자인 등에 관한 각종 자료) 등을 검색한 후 출원내용에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심사관은 실체심사결과 신청된 출원내용에 하자가 없으면 등록결정을 하자가 있으면 거절결정을 해야 한다. 심사관은 통상 실체심사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며 이에 대하여는 반박의견(의견서) 제출이나 출원내용을 수정(보정)하는 방법 등으로 대응한다.
- 심사관 실체심사 후 등록결정이 된 경우에는 소정의 등록료를 납부하고 등록절차를 진행한다. 거절결정이 된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특허심판원에서 패했을 경우 특허법원에 소송제기 가능)
- 다른 사람의 출원에 심사관이 등록결정을 했을 때,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무효심판 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심사·등록·심판

- 신속하게 등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심사청구제도를 이용한다.(소정의 추가수수료 납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또는 「발명진흥법」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3) 권리행사

- 등록된 산업재산권의 권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특허청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등록된 산업재산권은 자기 혼자만 쓸 수도 있고, 타인에게 라이선스(실시권)를 허락할 수 있다.

8. 해외 출원의 방법

8. 해외출원의 방법

해외출원은 크게 외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 유럽특허청(지역 특허청)에 출원, PCT출원으로 구분한다.

1) 외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

- 외국 특허청에서 원하는 서류를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후 제출하여 출원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국가가 1~2개국이거나 신속한 심사결과를 원하는 경우 출원인이 선택 가능한 방법이다.

2) 유럽특허청에 출원

- 유럽특허청(EPO : Europe Patent Office)과 같은 지역 특허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말하며, 출원인이 유럽특허청에서 등록결정을 받은 후, 개별국에 등록료만 납부하면 개별국에서 유효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다. 유럽에서 특허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가 3~4개국 이상일 경우 유럽특허청에 출원하는 것이 외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지만 상대적으로 심사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3) PCT 출원

- PCT 출원은 특허협력조약(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해 하나의 방식 및 언어로 PCT 동맹국에 동시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말한다.
- 해외출원을 하고자 하는 출원인 입장에서 보면 국제출원절차의 통일성으로 한번 PCT 출원을 한 것만으로 각 지정국에서 직접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시간적, 비용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 단, PCT 출원비용이 별도로 소요되고 지정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경우 개별국가의 특허청에 직접 출원한 것과 동일한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국내단계의 절차가 지연되어 조기에 특허권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9. 특허검색 방법 및 유의 사항

9. 특허검색 방법 및 유의 사항

특허검색을 직접 하고자 할 때는 특허청이 한국특허정보원을 통하여 무료로 운영하는 **특허검색 인터넷사이트인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를 이용하며, 외국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도 있다.

소송 관련 무효 증거를 찾기 위한 것이나, 해외 특허출원을 준비하거나, 해외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한 특허조사 등을 할 때에는 특허검색 전문 업체 또는 전문가에 의뢰하는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검색키워드의 선정

- 검색키워드란 검색하고자 하는 주제에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어구이며 검색하고자 하는 주제를 잘 대표하는 몇 개의 키워드만으로 그 주제 전체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키워드를 제대로 선정하지 못할 경우 중요한 건이 누락되거나 추출된 건수가 많아져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검색이 이루어지기 전에 검색키워드를 철저하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기술의 이해

- 검색키워드 작성에 있어 해당 기술이나 발명의 요지를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키워드 설정이 능숙하다 하더라도 원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을 잘못 이해할 경우, 결과물이 실제 원하는 것과 전혀 상이한 것이 될 수 있다.

3) 동의어, 유의어를 감안하여 키워드 선정

- 특허문헌에 사용되는 기술용어는 기술의 변화 또는 작성자의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한 표기로 이루어지므로, 동의어, 유의어, 유사어 등을 감안하여 키워드를 선정하여야 한다. 특히, 함축적 표현, 작성자에 따른 표현상의 차이, 의미상 차이, 외국어 표기, 오타자 등까지도 감안하여 검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4)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 이용방법

- 키프리스에는 국내·외 특허, 상표 등의 정보가 DB로 구축되어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검색할 수 있다. 1948년부터 현재까지의 국내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비롯한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전 세계 특허, 상표, 디자인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9. 특허검색 방법 및 유의 사항

9. 특허검색 방법 및 유의 사항

가) 통합검색

- **모든 권리정보(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해외특허 등)에 대하여 한 번에 검색** 하는 것으로서, 초보이용자를 위한 기능. 간략한 초록정보는 물론 상세정보 및 전문 열람도 가능하다. 통합검색은 특허 검색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이용자를 위한 자유 검색기능으로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해외특허 등에 대하여 권리구분 없이 전 권리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다. 정보가 어떤 권리인지, 어떤 국가의 정보인지 모를 때 및 검색할 대상의 항목을 알지 못하는 일반적인 경우에 사용하며 간단한 단어, 인명, 번호 등으로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다.

나) 권리별 검색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각 권리별로 일반 키워드검색을 하거나 항목별(출원일, 성명, 발명의 명칭, 요약 등) 검색을 할 수 있으며, 검색결과는 통합검색과 동일하다.

다) 부가기능 : **외국어 자동번역, 엑셀다운로드, 검색마법사** 등 - 검색결과 화면에서는 간략한 초록정보와 함께 해당 결과에 대한 상세정보 및 전문 열람이 가능하다. 화면 상단의 특허실용, 디자인, 상표 등 각각의 권리명을 클릭하면 해당 권리에 대한 내용 조회 가능하다.

<그림> 검색결과 조회화면



<그림> 통합검색 입력화면



V. 제품인증

1. 제품인증제도의 개념
2. 인증제도의 개념
3. 국가통합인증제도(KC)
4.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
5. 해외 주요인증제도
6. 우리나라 인증제도 현황

가. 제품인증제도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부 제품에 대해 제품 출시전에 사업자가 최소한의 안전요구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인증 등을 통해 확인 후 시장에 출시토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나. 제품안전단계별 관리

구분	주요내용
안전인증	소비자의 위해도가 높은 품목으로서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생산단계부터 안전관리를 하는 제도
안전확인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한 제품으로서 제조 또는 수입자가 공인기관의 시험·검사에 대한 성적서를 첨부하여 신고기관에 신고토록 하고 업체가 스스로 안전관리를 하는 제도
공급자적 합성확인	구조·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중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한 안전성을 확인하는 제도
어린이 보호포장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으로 음용, 흡입할 경우 중독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포장사용을 의무화한 제도

〈자료: 제품안전정보센터〉

제품안전 단계별 관리

<p>01 제조·설계</p>	<p>안전인증 자율안전 확인 안전품질표시 (공산품) / 공급자적합성확인 (전기용품)</p> <p>높음 ← 소비자의 위해도 → 낮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개별법
<p>02 구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 (전기적 안전성 부분) 소관법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생활용품 (전기적 안전성 제외) 소관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p>03 안전인증</p>	<p>안전인증신청 [제조업자] > 공장검사 제품시험 [인증기관] > 인증서 발급 [인증기관] > 정기검사 연 1회 [인증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인증 후에는 정기검사 (공장실사 + 정기검사 면제) 	
<p>04 자율안전 확인</p>	<p>제품시험 [인증기관] > 자율안전확인 신고 (신고 증명서 발급) [인증기관] > 인증서 발급 [인증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시험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 후, 판매가능 (공장심사 + 정기검사 면제) 	
<p>05 안전·품질 표시</p>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에게 안전품질 정보제공
<p>06 공급자 적합성확인</p>	<p>제품시험 [제조자, 수입자] > 인증서 발급 [제조자, 수입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자체시험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책임지는 방식 	<p>—</p>

〈자료: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구분	내용
인증(Certification)	제품 등과 같은 평가대상이 정해진 표준이나 기술규정 등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그 사용 및 출하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증제도의 정의	인증제도란 평가대상이 그에 적용되는 평가기준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자가 평가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입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ISO/IEC 17000, KS A ISO/IEC Guide 2)
인증제도의 구분	인증제도는 법적 근거의 유무에 따라 법정인증제도와 민간인증제도로 구분되며 법정인증제도는 또다시 강제성의 유무에 따라 강제인증과 임의인증으로 나뉘어진다. 또한, 각 부 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는 인증, 형식승인, 검정, 형식검정, 형식등록 등 인증대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증제도의 운영	<p>대부분의 인증 절차는 국가기관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험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증과 표준, 검사, 시험, 시험소 인정 등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Testing):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에 따라 특성을 확인하는 것 ※ “시험”은 일반적으로 자재, 제품 또는 프로세스에 적용 - 검사(Inspection): 제제품설계, 제품, 공정(프로세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 ※ 공정(프로세스) 검사에는 사람, 시설, 기술 및 방법에 대한 검사가 포함될 수 있음 - 인증(Certification): 제품, 시스템, 자격, 서비스 등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인증대상에 따라 제품인증, 서비스인증, 시스템인증, 자격(인력)인증 등으로 구분되며 인증, 형식승인, 검정, 지정, 허가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

〈자료: e나라표준인증〉

국가통합인증마크(KC)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70여개의 법정 의무인증제도가 있습니다. ‘제품 안전’이라는 똑같은 목적이더라도, 부처마다 인증마크가 달라 중복해서 인증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간 거래에 있어 상호 인증이 되지 않아 재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국제 신뢰도 저하와 국부 유출의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13개 법정 의무인증마크를 국가통합인증마크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11.1)

KC마크를 사용중인 법정 의무인증제도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는 ‘09.7월에 지경부와 노동부의 10개 인증마크를 통합하여 출범하였으며, ’11.1월 기준으로 5개 부처 13개 인증마크가 KC마크로 통합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각 부처들이 법정 의무인증제도 신설 및 변경 시 KC마크를 도입하여 ‘17. 9월 현재 8개 부처 23개 법정 의무인증제도가 KC 마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번	소관부처	인증제도명	근거법률
1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계량기 형식승인 및 검정	계량에 관한 법률
2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생활용품 안전관리(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어린이보호포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안전관리(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4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5	산업통상자원부	고압가스용 제품 안전검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6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용품검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7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8	국토교통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자동차관리법
9	국토교통부	내압용기 장착검사	자동차관리법
10	국토교통부	내화구조 인정	건축법

〈자료: e나라표준인증〉

순번	소관부처	인증제도명	근거법률
11	국토교통부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건축법
12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측정기기 및 자재·약제 검정	해양환경관리법
13	환경부	정수기 품질검사	먹는물관리법
14	환경부	위생안전기준인증	수도법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제도	전파법
16	행정안전부(소방청)	소방용품형식승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7	행정안전부(소방청)	방염성능검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8	행정안전부	승강기 안전인증	승강기안전관리법
19	고용노동부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20	고용노동부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21	국방부(방위사업청)	섬유피복류 군수품 KC마크 적용	방위사업법
22	환경부(기상청)	기상측기형식승인	기상관측 표준화법
23	환경부(기상청)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 검정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신기술인증제도>

<자료: 신기술인증(<https://www.netmark.or.kr>)>

구분	 신기술인증(NET)
제도명칭	인증기술의 표시는 「New Excellent Technology」를 형상화한 신기술인증표시(NET 마크)를 사용
제도목적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함
인증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제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 시험")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향후 2년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심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신기술로서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에 있어서 개발목표로 제시한 제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관리체계 - 신기술 인증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
인증기간	1~3년이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결정
인증취소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기술의 내용 및 제품의 품질·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기술인증제도>

<자료: 신기술인증(<https://www.netmark.or.kr>)>

구분	 신기술인증(NET)
지원제도	1.국가 및 공공기관 등 구매지원 -신기술 적용제품의 수의계약 지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우수조달제품 지정 지원 2.정부인력지원사업(전문연구요원제도)신청시 우대 3.혁신형중소기업기술금융지원사업 4.정부 R&D사업신청시 우대 5.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관련 사업 우대(수출역량 강화사업,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해외지사화사업) 6. 기타 지원제도 가점부여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중소벤처기업부)/ 레저장비맞춤형사업화 사업(산업통상자원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중소벤처기업부)/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농림축산부)/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방위사업청)/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방위사업청)/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특허청)/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산업통상자원부)/ 2차 소재·부품·부리 발전 유공 포상(산업통상자원부)
관련기관	- 국가기술표준원 : 운영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지정,/신기술인증서 발급/인증기술의 상용화 지원시책 강구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신청서류의 검토,접수 및 신청기업과의 연락/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행정, 관리 등


<신제품인증제도>

〈자료: 신제품인증(www.nepmark.or.kr)〉

구분	 주요 내용
제도명칭	신제품인증제도 : 인증제품의 표시는 「New Excellent Product」를 형상화한 신제품인증표시(NEP 마크)를 사용
인증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인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신기술일 것 -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 -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을 것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 -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
인증대상 제외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3등급 및 4등급 의료기기 -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자료: 신제품인증(www.nepmark.or.kr)〉

<신제품인증제도>

구분	 주요내용
유효기간	3년(1회에 한하여 심사 후 3년 연장가능)
연장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이 신제품 인증 당시의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을 것 -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의 성능 및 품질과 같거나 우수한 다른 제품이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지 아닐 것 ※ 연장기준은 신규 인증기준과 동일
인증제품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 (기술심사 면제)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 (중소벤처기업부) -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약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주관기관	·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043-870-5501~9)
평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02-3460-9185~9187)

세계공통규격

자료: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인증명	주요내용
CE (유럽공동체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연합의 통합규격 강제인증제도 - 유럽 내에서 유통되는 상품중 소비자의 건강, 안전, 위생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적용 - 대상품목의 경우 CE마크 부착은 법적요구 사항이며, 이를 어길 경우 유럽 내에서 유통이 금지됨 - CE 마킹은 해당제품이 European Union (EU)와 European Free Trade Area (EFTA)에 합법적으로 판매될 수 있음을 증명함
Bluetooth (블루투스제품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규격 - 블루투스 제품 간 상호 운용성을 위하여 표준화된 블루투스 규격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해야 한다. 적합성을 입증한 제품만이 블루투스 로고를 부착할 수 있다.
COSPAS-SARSAT (국제조난구조 시스템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SPAS-SARSAT 위성 (406MHz 무선 표시 설비)을 사용하는 비상위치 표시용 설비
e-Mark (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자동차분야 형식승인제도, 강제규격 - 자동차 시장 유통전에 EU 회원국 중 한 회원국으로부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제검사제도임.
IECEE (IEC전기기기적합시험인증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기기의 국제적인 유통을 용이하게 하여 소비자, 산업계, 공공기관 등에게 혜택을 주고, 제조자 및 다양한 국가인증기관의 서비스 사용자의 편이를 도모하기 위하여 IECEE는 국제적인 인증제도인 CB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CB제도는 국가차원의 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각 회원기관의 시험결과를 상호인정하자는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각 국가의 인증기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제무역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다양한 인증기관을 동 제도에 참여시킴으로써 IEC규격에 따른 인증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IECEX (국제방폭상호인증)	<p>IECEX System은 폭발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기의 적합한 안전수준 유지 및 국가 간 중복 인증 방지를 위한 자율 인증제도로서, IEC 적합성 평가 시스템(Conformity Assessment Systems) 중 하나이다. Ex 지역은 “위험 장소(Hazardous Locations)”, “위험 지역(Hazardous Areas)”, “폭발성 환경(Explosive Atmospheres)” 등과 같은 용어로도 사용되며, 가연성 액체, 증기, 가스 또는 가연성 먼지 등의 양이 화재나 폭발을 야기하기에 충분한 장소와 관련이 있다.</p> <p>IECEX System은 다음으로 구성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IECEX 장비 인증 제도 2. IECEX 서비스 시설 인증 제도 3. IECEX 적합성 마크 면허 시스템 4. IECEX 개인 인증 제도

자료: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세계공통규격

인증명	주요내용
OIML (국제법정계량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량기의 사용상 야기되는 행정상, 기술적 문제점을 국제적으로 해결하고, 법정계량에 관한 일반원칙 결정으로 국제적 계량체계의 통일을 목적으로 설립 - 이 시스템은 제시된 측정기구 형식이 OIML 국제권고안에 관련된 요구사항에 일치한다는 사실을 제조자가 시험결과 보고서로 확인하게 하고, OIML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OE (유기농 목화섬유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인증 - OE(Organic Exchange)는 세계적인 유기농 목화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만들어진 비영리단체이며, OE에서 발행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인증서를 발행하고 있다. 이는 자율인증으로서 유기농 제품의 세계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한다. Organic Exchange는 Organic Textile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기타

인증명	주요내용
SEMI (반도체장비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MI는 인증이라기보다는 반도체제조장비의 품질안전 평가 리포트임. - 반도체 제조설비에 대한 환경, 보건, 안전요구사항 규격으로 특정한 지역의 강제규격이 아닌 반도체 제조회사에서 요구하는 비강제 규격이므로 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거나 수입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SEMI를 진행하는 시험/인증기관에 신청하여 획득함.
KOSHER (유대교식품적법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스라엘에서는 강제인증이고 그 외 국가에서는 자율인증임. - 코셔(Kosher)에 해당되는 제품은 크게 육류, 유제품, 파르브 제품의 3가지로 구분된다. - 가장 기본적인 규정은 코셔 육류와 유제품은 철저히 따로 요리하고 섭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 코셔(Kosher)란 유대인들이 준수하는 음식법으로 돼지고기, 비늘없는 어류, 육류와 유제품의 동시 섭취 금지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을 의미한다.
KUCAS (쿠웨이트제품적합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인증이며 국가규격임. - 쿠웨이트로 수출되는 규제대상에 대한 국가 기준에의 적합성을 판단 하는 인증임.

자료: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북남미지역

국가	인증명
미국	AAR (Association of American Railroads) ABS (American Bureau of Shipping) ACMI-AP (ACMI, The Art & Creative Materials Institute, Inc) ADR (Australian Design Rule) AEM (The Association of Equipment Manufactures) AGA (American Gas Association) AMECA (Automotive Manufacturers Equipment Compliance Agency, Inc)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BHMA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 Builders Hardware Manufacturers Association) ANSI/BIFMA (The Business and Institutional Furniture Manufacturer's Association) API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ASM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ASTM (American Society of Testing and Materials) CTI (Cooling Technology Institute) DO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EPA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MVSS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 IAPMO-UPC NCHRP (National Cooperative Highway Research Program) NIJ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NIOSH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OP (National Organic Program) NRTL (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ies) UL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MET (Electric Testing Company) ETL (Electric Testing Laboratory) NSF (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 USCG (United States Coast Guard)
캐나다	CSA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HC (Health Canada) IC (Industry Canada) TC (Transport Canada)
브라질	ANVISA (Agencia Nacional de Vigilancia Sanitaria)
아르헨티나	IRAM (Instituto Argentino de Racionalizacion de Materiales)
멕시코	NOM (Normas Oficiales Mexicanas) COFETEL (Comision Federal de Telecomunicaciones) 의료기기 등록허가 제도(Secretaria de Salud)

아시아지역

자료: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국가	인증명
대만	BSMI (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 의료기기 등록허가 제도 (Department of Health) CNS (Chinese National Standards) VSCC (Vehicle Safety Certification Center)
말레이시아	SIRIM (Standards and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Malaysia)
사우디아라비아	SASO (Saudi Standards Organization)
홍콩	HKSM (Hong Kong Safety Mark) OFTA (Office of the Telecommunications Authority)
싱가포르	PSB (Singapore Productivity and Standards Board)
인도	SNI(Standard Nasional Indonesia) BIS(Bureau of India Standards) CPRI(Central Power Research Institute) 의료기기 등록허가 제도(The 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
일본	JAS (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 JATE (Japan Approval Institute for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JIS (Japan Industrial Standards) PSC (Product Safety of Consumer Products) S-Mark (Safety Mark) TELEC (Telecom Engineering Center) F☆☆☆☆ (포름알데히드 규제등급) NK (NIPPON KAIJI KYOKAI) PSE (Product Safety Mark for Electrical Appliances) VCCI (Voluntary Control Council for Interference) Eco mark (일본친환경제품인증)
중국	CCC (Chinese Compulsory Certification) CQC (China Quality Certification) NAL (Network Access License) NEPSI (National Supervision and Inspection Center for Explosion Protection and Safety of Instrumentation) 의료기기 등록허가 제도 (SFDA) CCS (China Classification Society) CSEL (China Special Equipment License) SRRC (State Radio Regulatory Commission)
터키	TSE (Turk Standardlari Enstitusu)

자료: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국가	인증명
오스트리아	OVE (Österreichischer Verband für Elektrotechnik)
이탈리아	IMQ (Istituto Italiano del Marchio di Qualita) RINA (Registro Italiano Navale) SINCERT
카자흐스탄	GOST-K (gosudarstvennyy standart (state standard) - Kazakhstan)
프랑스	BV (Bureau Veritas) GTT (Gaztransport & Technigaz) LCIE (Laboratoire Central des Industries Electriques) NF (Association Francaise de Normalisation) UTE (Union Technique de l' Electricite)
핀란드	FIMKO (Finenska Electriska Materielkontrollansta AB)
유럽공통	ATP (유럽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Eco-Labeling (EU Ecolabel) EU-MED (EU Marine Equipment Directive) Oeko-tex (유럽섬유환경인증)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oHS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theelectronic equipment) Solar Keymark Toxproof(환경유해물질 안전마크) WPS(용접절차인증)

러시아, 동유럽지역

국가	인증명
러시아	GOST-R (Gosstandart of Russia) RS (Russian Maritime Register of Shipping) RTN (ROSTEKHNADZOR) Russian Hygenic Conclusion 의료기기 등록허가 제도 (Russian Ministry of Health)
루마니아	SR/STAS (stars Standards)
체코	EZU (Elektrotechnicky zkusebmi ustav)
폴란드	PCBC (Polskie Centrum Badan I Certyfikacji)
헝가리	MEEI (Hungarian Institute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 of Electrical Equipment)

〈자료: e나라표준인증〉

1. 고용노동부(등록인증수 : 5)

제도명	관련법률	유형	분야	최초시행일
임의안전인증(S마크인증)	산업안전보건법	법정임의	안전	1996-12-01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법정의무	안전	2009-01-01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법정의무	안전	2009-01-01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법정임의	기타	2007-10-29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직업안정법 시행령	법정임의	서비스/디자인	2008-01-01

2. 공정거래위원회(등록인증수 : 2)

제도명	관련법률	유형	분야	최초시행일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CCM)	소비자기본법	법정임의	기타	2005-09-0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및유인부여등에 관한규정	법정임의	시스템	2008-10-01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등록인증수 : 11)

제도명	관련법률	유형	분야	최초시행일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콘텐츠산업 진흥법	법정임의	소프트웨어/인터넷	2011-11-23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법정임의	품질	2017-08-03
정보보호시스템평가·인증(CC 인증)	국가정보화 기본법	법정임의	소프트웨어/인터넷	1995-08-01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정의무	소프트웨어/인터넷	2002-05-01
웹접근성품질인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정임의	소프트웨어/인터넷	2013-05-22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정임의	안전	2013-07-16
소프트웨어프로세스품질인증(SP)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법정임의	소프트웨어/인터넷	2009-01-01
소프트웨어품질(GS)인증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법정임의	소프트웨어/인터넷	2001-01-01

6. 우리나라 인증제도 현황

〈자료:e나라표준인증〉

제도명	관련법률	유형	분야	최초시행일
삼차원프린팅 소프트웨어품질인증		법정임의	품질	2016-12-23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제도(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전파법	법정의무	품질	1962-01-01
ICT융합품질인증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정임의	품질	2014-02-14

4. 관세청(등록인증수 : 1)

제도명	관련법률	유형	분야	최초시행일
AEO인증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관세법	법정임의	기타	2009-04-01

5. 교육부(등록인증수 : 3)

제도명	관련법률	유형	분야	최초시행일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법정임의	기타	2006-06-01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법정임의	시스템	2015-07-21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고등교육법 시행령	법정임의	시스템	2009-01-01

6. 국토교통부(등록인증수 : 34)

제도명	관련법률	유형	분야	최초시행일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항공보안법 시행령	법정의무	안전	2018-10-25
항공기 형식증명	항공법	법정의무	안전	1961-06-01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항공법	법정의무	안전	1991-12-14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제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법정임의	품질	2010-03-10
택시미터의 검정	자동차관리법	법정의무	시스템	1996-10-30
측량기기 성능검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정의무	품질	1999-02-01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철도안전법	법정의무	품질	2014-03-19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철도안전법	법정의무	품질	2014-03-19

〈자료:e나라표준인증〉

제도명	관련법률	유형	분야	최초시행일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	건설기술 진흥법	법정임의	품질	1999-02-01
지능형건축물 인증	건축법	법정임의	품질	2006-03-01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법정임의	에너지	2017-01-20
정비조직인증	항공법	법정의무	품질	2003-12-30
전국호환교통 카드인증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정임의	품질	2010-04-0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제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법정임의	기타	2008-07-01
장수명주택 인증	주택법	법정의무	품질	2014-12-25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	자동차관리법	법정임의	안전	2014-01-17
자동차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자동차관리법	법정의무	안전	2003-01-01
우수물류기업 인증	물류정책기본법	법정임의	안전	2015-06-22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물류정책기본법	법정임의	환경	2014-02-07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법정임의	서비스/디자인	2018-08-01
신기술인증(NET마크)	건설기술 진흥법	법정임의	신기술	1989-05-01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정임의	환경	2006-04-01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건축법	법정의무	품질	1992-01-01
바닥충격음 성능 등급 인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법정의무	품질	2004-04-23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법정임의	품질	2015-01-01
녹색건축 인증제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정임의	환경	2002-01-01
내화구조 인정	건축법	법정의무	안전	1985-01-01
내압용기 장착검사	자동차관리법	법정의무	안전	2011-11-25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	주차장법	법정의무	안전	1992-09-05
교통신기술 지정제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법정임의	신기술	2010-04-01
공간정보 품질인증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법정임의	품질	2009-08-01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정임의	에너지	2001-01-01
건설기계 형식승인, 형식신고	건설기계관리법	법정의무	안전	1975-10-27
감항증명	항공법	법정의무	품질	1991-12-14

7. 기상청(등록인증수 : 4)

〈자료: e나라표준인증〉

제도명	관련법률	유형	분야	최초시행일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 검정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법정의무	환경	2019-05-24
기상측기기의 검정	기상관측표준화법	법정의무	품질	1961-08-25
기상측기 형식승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법정의무	품질	2021-04-18
국가기후변화표준사리오인증	기상법	법정임의	기타	2014-01-17

8. 농림축산식품부(등록인증수 : 20)

제도명	관련법률	유형	분야	최초시행일
토종가축의 인정	축산법	법정임의	품질	2013-12-31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법정임의	품질	2001-07-01
전통식품품질인증	식품산업진흥법	법정임의	품질	2008-06-01
인삼류 검사	인삼산업법	법정의무	안전	1996-07-01
유기가공식품인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법정임의	품질	2008-07-01
우수 종축업체 인증	축산법	법정임의	품질	2008-03-01
우수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인증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정임의	기타	2017-02-28
신기술농업기계지정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정임의	신기술	1996-08-01
술 품질인증제도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정임의	품질	2011-01-01
동물복지축산 농장인증	동물보호법	법정임의	품질	2012-02-01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법정임의	서비스/ 디자인	2009-05-27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인증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정임의	신기술	2015-06-04
농산물의 지리적표시제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법정임의	기타	1999-07-01
농산물우수관리인증 (GAP)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법정임의	품질	2006-01-01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법정임의	품질	2006-01-01
농산물/농산가공품의 품위·성분 및 유해물질 등 검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법정임의	기타	2001-07-01

〈자료: e나라표준인증〉

제도명	관련법률	유형	분야	최초시행일
농림식품 신기술	농림수산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법정임의	신기술	2013-12-13
농기계 검정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정의무	안전	2012-11-01
가축의 검정	축산법	법정임의	품질	1977-08-01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식품산업진흥법	법정임의	품질	2018-06-01

9. 문화재청(등록인증수 : 1)

제도명	관련법률	유형	분야	최초시행일
전승공예품 인증		법정임의	기타	2016-05-03

10. 문화체육관광부(등록인증수 : 10)

제도명	관련법률	유형	분야	최초시행일
한국관광 품질인증	관광진흥법	법정임의	품질	2018-06-14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	관광진흥법	법정의무	기타	1996-01-01
유원시설 및 기구의 안전성 검사	관광진흥법	법정의무	안전	1998-08-01
우수문화상품 지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정임의	기타	2002-01-01
생활체육활동및체력에대한인증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법정임의	보건	2015-05-29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의 인증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정임의	서비스/디자인	2014-07-29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정임의	서비스/디자인	2014-07-09
무대시설안전진단	공연법	법정의무	안전	2000-01-01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법정임의	기타	2005-07-28
국공립박물관및미술관평가인증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법정의무	품질	2017-01-31

11. 방송통신위원회(등록인증수 : 1)

제도명	관련법률	유형	분야	최초시행일
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SMS-P)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법정임의	소프트웨어/인터넷	2018-11-07

〈자료: e나라표준인증〉

12. 방위사업청(등록인증수 : 4)

제도명	관련법률	유형	분야	최초시행일
군용항공기 형식인증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법정의무	안전	2009-09-23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법정의무	안전	2009-09-03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방위사업법	법정임의	시스템	1999-01-01
국방마크(DQ마크)인증제도	방위사업법	법정임의	품질	2012-01-01

13. 보건복지부(등록인증수 : 11)

제도명	관련법률	유형	분야	최초시행일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정임의	기타	2012-06-0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법정임의	안전	2008-09-0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법정임의	시스템	2008-09-01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의료법 시행령	법정임의	소프트웨어/인터넷	2020-01-0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법정의무	안전	2015-01-01
의료기관 인증	의료법	법정임의	기타	2011-01-23
어린이집평가인증	영유아보육법	법정의무	기타	2005-03-01
신기술인증(NET마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정임의	신기술	2002-01-01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평가 및 인증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정의무	보건	2013-02-02
고령친화 우수제품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법정임의	품질	2008-03-25
고령친화 우수사업자 지정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법정임의	기타	2008-03-25

〈자료: e나라표준인증〉

14. 산림청(등록인증수 : 10)

제도명	관련법률	유형	분야	최초시행일
특별관리 임산물 품질검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정의무	품질	2011-07-25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법정임의	기타	2013-05-24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정임의	안전	2017-09-22
산림탄소흡수량인증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법정임의	환경	2013-02-23
산림인증제도(KFCC)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정임의	환경	2017-10-31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정임의	기타	2006-08-01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법정임의	안전	2019-01-31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표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법정의무	품질	2005-08-01
목재제품신기술지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법정임의	신기술	2013-05-24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법정임의	기타	2013-05-24

15. 산업통상산업부(등록인증수 : 26)

제도명	관련법률	유형	분야	최초시행일
항공우주산업분야 성능 및 품질검사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법정의무	품질	1990-01-01
지능형전력망에 대한 인증제도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정임의	에너지	2019-05-24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	계량에 관한 법률	법정임의	품질	2008-01-0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법정의무	안전	1974-01-01
재제조제품품질인증(REMAN마크)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법정임의	품질	2007-05-29
우수재활용제품(GR) 품질인증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법정임의	품질	1997-04-10
열사용기자재검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정의무	에너지	1980-06-29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정의무	에너지	1992-08-17
어린이제품안전인증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법정의무	안전	2014-06-03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정의무	품질	2002-04-01
신제품인증(NEP마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정임의	신기술	1993-05-01
신기술인증(NET마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정임의	신기술	1993-05-01

〈자료: e나라표준인증〉

제도명	관련법률	유형	분야	최초시행일
석탄등 품질검사	석탄산업법	법정의무	품질	1987-01-01
석유제품 품질검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법정의무	품질	1983-05-01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인증	산업융합 촉진법	법정임의	신기술	2011-10-06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도시가스사업법	법정의무	품질	2012-01-26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정의무	에너지	1999-01-01
단체표준인증	산업표준화법	법정임의	품질	1992-12-08
녹색인증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법정임의	환경	2010-01-13
광업시설 성능(완성)검사	광산보안법 시행령	법정의무	안전	1964-03-06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정임의	에너지	1996-12-01
고압가스의 품질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정의무	품질	2016-01-29
고압가스용 제품 안전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정의무	안전	1973-02-07
계량기 형식승인 및 검정	계량에 관한 법률	법정의무	품질	1961-05-10
가스용품검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정의무	안전	1973-01-01
KS표시인증제도	산업표준화법	법정임의	서비스/디자인	1961-09-30

16. 소방청(등록인증수 : 7)

제도명	관련법률	유형	분야	최초시행일
탱크안전성능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법정의무	안전	1996-07-01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담배사업법시행령	법정의무	안전	2015-07-22
소방장비 인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정임의	품질	2019-12-11
소방용품형식승인		법정의무	안전	1974-09-01
소방용품우수품질인증		법정임의	품질	2003-05-23
소방용기계, 기구 성능인증		법정임의	품질	1981-04-01
방염성능검사		법정의무	안전	1993-01-01

6. 우리나라 인증제도 현황

〈자료:e나라표준인증〉

17. 식품의약품안전처(등록인증수 : 5)

제도명	관련법률	유형	분야	최초시행일
축산물HACCP	축산물위생관리법	법정의무	안전	1997-12-31
의료기기 허가	의료기기법	법정의무	안전	2004-07-28
어린이보호식품 품질인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법정임의	품질	2009-03-20
식품 HACCP	식품위생법	법정의무	안전	1995-12-01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및 기준 규격 인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정의무	신기술	2004-01-31

18. 여성가족부(등록인증수 : 2)

제도명	관련법률	유형	분야	최초시행일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청소년활동진흥법	법정임의	기타	2006-01-01
가족친화인증제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법정임의	기타	2008-06-15

19. 중소벤처기업부(등록인증수 : 1)

제도명	관련법률	유형	분야	최초시행일
성능인증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정임의	품질	2005-07-01

20. 특허청(등록인증수 : 1)

제도명	관련법률	유형	분야	최초시행일
지식재산 경영인증	발명진흥법	법정임의	안전	2016-04-28

21. 해양경찰청(등록인증수 : 2)

제도명	관련법률	유형	분야	최초시행일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법정임의	환경	1987-07-01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수상레저안전법	법정의무	안전	2006-04-03

〈자료: e나라표준인증〉

22. 해양수산부(등록인증수 : 22)

제도명	관련법률	유형	분야	최초시행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법정임의	품질	2013-06-01
유기수산물		법정임의	품질	2013-06-01
유기가공식품		법정임의	품질	2013-06-01
무항생제수산물		법정임의	품질	2013-06-01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검정	해양환경관리법	법정의무	품질	2009-01-20
해양환경측정·분석능력인증	해양환경관리법	법정임의	기타	2010-07-28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	선원법	법정의무	기타	2011-08-01
항만시설장비의 검사	항만법	법정의무	안전	1981-04-20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검사	항로표지법	법정의무	품질	2002-09-06
컨테이너 형식승인, 검정	선박안전법	법정의무	안전	1982-07-02
우수천일염인증	소금산업 진흥법	법정임의	품질	2011-11-22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제도	어선법	법정임의	안전	2012-03-01
식품명인	식품산업진흥법	법정임의	품질	1993-04-01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식품산업진흥법	법정임의	품질	1993-04-01
수산물품질인증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법정임의	품질	1993-04-01
수산물 지리적표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법정임의	품질	1999-01-01
소금품질검사	소금산업 진흥법	법정의무	품질	2010-08-01
선박평형수 형식승인 및 검정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법정의무	안전	2014-09-25
선박의 검사	선박안전법	법정의무	안전	1961-12-30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선박안전법	법정의무	안전	1982-01-01
선박안전관리체제 인증	해사안전법	법정의무	안전	2001-07-01
방류종자의 인증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법정의무	환경	2015-11-04

〈자료: e나라표준인증〉

6. 우리나라 인증제도 현황

23. 행정안전부(등록인증수 : 10)

제도명	관련법률	유형	분야	최초시행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진재해대책법	법정임의	안전	2019-03-01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정임의	시스템	2017-02-21
재난안전제품 인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법정임의	안전	2018-02-22
유·도선 안전검사	유선 및 도선사업법	법정의무	안전	2005-03-01
승강기검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정의무	안전	1992-07-01
방재전문인력 인증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법정임의	안전	2007-01-01
방재신기술	자연재해대책법	법정임의	신기술	2005-07-01
기업재난관리자 인증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정임의	안전	2014-01-01
급경사지 재해 예방용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정의무	품질	2013-09-01
개인정보보호 인증	개인정보 보호법	법정임의	소프트웨어/인터넷	2013-11-29

24. 환경부(등록인증수 : 19)

제도명	관련법률	유형	분야	최초시행일
환경표지 인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정임의	환경	1992-04-01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정의무	품질	1976-07-01
환경측정기기 교정용품의 검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정의무	환경	1976-07-01
환경성적표지인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정임의	환경	2001-01-01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환경교육진흥법	법정임의	환경	2010-01-01
지질공원의 인증	자연공원법 시행령	법정임의	환경	2012-12-27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	하수도법	법정의무	환경	2012-10-22
제작차의 소음인증	소음·진동관리법	법정의무	환경	2003-01-06

〈자료: e나라표준인증〉

제도명	관련법률	유형	분야	최초시행일
제작자동차 인증, 검사 및 정밀검사(배출가스)	대기환경보전법	법정의무	환경	1991-02-02
정수기 품질검사	먹는물관리법	법정의무	환경	1998-01-26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정임의	환경	2014-07-30
자동차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인증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정의무	환경	2005-01-01
자동차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기환경보전법	법정의무	환경	2002-05-01
자동차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대기환경보전법	법정의무	품질	2009-08-24
위생안전기준인증	수도법	법정의무	안전	2011-05-26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환경보건법 시행령	법정임의	환경	2015-10-25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	실내공기질관리법	법정임의	환경	2012-01-01
신기술인증·기술검증(NET마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정임의	신기술	1997-01-01
소음도 검사	소음·진동관리법	법정의무	환경	2008-01-01